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278-10



www.mohw.go.kr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 www.ssc.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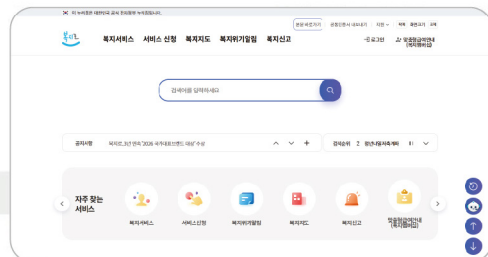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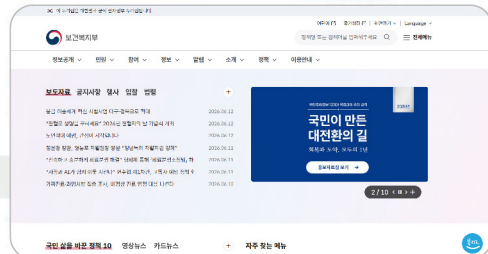
www.ssc.go.kr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ww.mohw.go.kr



www.bokjiro.go.kr



본 책의 내용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목차

알림

복지서비스 가이드

복지가 궁금하신가요?

나에게 힘이 되는 안내책자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8
복지는 쉽다	10
알려드립니다	12

01

2026년 신규 복지서비스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서비스

청년미래적금	16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16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17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17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박사우수 장학금(이공계)	17

02

생계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20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23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29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	39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안정자금지원)	46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채무조정)	50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52

03 취업 지원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	62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취업지원서비스)	64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7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68
여성이 일하고자 할 때	72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73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	76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78

04 임신·보육지원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요?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90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103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110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119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126

05 청소년·청년 지원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보호 및 자립지원)	130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청소년 보호 및 상담)	135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청소년 역량 강화)	144
교육비가 부담될 때(교육비 지원)	147
교육비가 부담될 때(보건 및 복지 지원)	150
교육비가 부담될 때(장학금 등 지원)	154
교육비가 부담될 때(학자금대출 지원)	166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170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받고 싶을 때	173

CONTENTS 목차

06 보건의료 지원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176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78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181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185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188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190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194

07 노령층 지원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198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202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203
치매가 걱정될 때	204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206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209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212

08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216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220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225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228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239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243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253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262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264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266

09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270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276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286

10

법률·금융
복지 지원

법률·금융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290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296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업운영자금 지원)	307
금융 관련 지식이 필요할 때(컨설팅, 교육)	308

11

기타 위기별·
상황별 지원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이신가요?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위기가족 지원)	316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한부모가족 지원)	318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다문화가족 지원)	322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328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334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회보험료 지원)	339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340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348
북향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349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356
1인 가구 지원이 필요할 때	363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364

12

복지서비스
찾아보기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고 싶은가요?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	368
주요기관 연락처	380



나에게 힘이 되는 안내책자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왜 필요할까요?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힘들고 어려운 삶은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아픈 몸, 육아와 내집마련, 학자금과 취업, 불안한 노후와 갑작스러운 재난...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봅니다. 복지서비스가 그 시작입니다.

○ 알아두면 든든한 복지서비스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더 많은 이들이 쉽고 편리하게 누릴 때 복지서비스 수준도 발전합니다.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복지서비스를 누리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나에게 맞는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싶어요.

○ 복지서비스 전반을 살펴보고 싶나요?

‘차례’(4p)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유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대상별 복지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관심있는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나요?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366p)을 활용하세요. 사업명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고 싶은가요?

책의 내용만으로 부족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해당사업의 문의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주요기관 연락처는 380p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에는 480여 개의 복지서비스가 상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복지서비스, 미처 몰랐던 복지서비스, 훗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생계 지원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자립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20p), 긴급복지 지원제도(23p), 주택임대 사업(29p), 통합문화이용권(55p) 등

○ 취업 지원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돕습니다.

실업급여(62p), 국민취업지원제도(64p), 국민내일배움카드제(65p), 근로장려금(70p) 등

○ 임신·보육 지원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98p), 보육 지원(110~118p), 방과후 돌봄(126~127p) 등

○ 청소년·청년 지원

교육, 자립을 지원합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132p),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147p), 장학금 지원(154~165p) 등

○ 보건의료 지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건강보험제도(176p), 건강보험 차상위(178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94p) 등

○ 노령층 지원

재정, 의료, 일자리 등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198p),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02p), 치아관리비용 지원(206~207p) 등

○ 장애인 지원

차별과 불편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힘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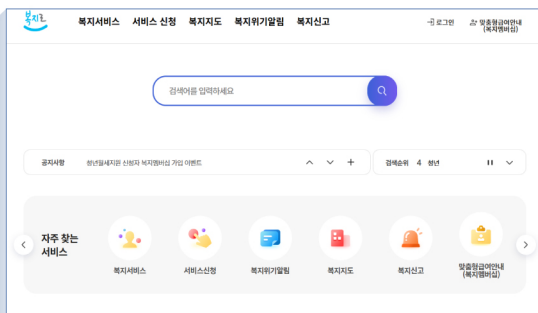
장애인연금(219p),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234p), 장애인 활동지원(253p) 등

이밖에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생활 속 법률, 재정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특수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 및 그 가족들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해드립니다.

복지는 쉽다

나를 위한 복지혜택, 복지포털에서 한번에! www.bokjir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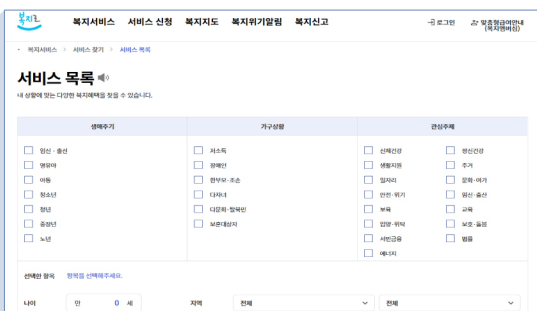
❖ 복지포털 '복지로'에는 유익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내가 몰랐던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어려움에 처한 본인·이웃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복지서비스 찾기



❖ 흩어져있는 복지서비스, 쉽게 찾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다양한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생애주기별, 가구상황별, 관심주제별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로’를 통해서라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복지서비스, 민원서비스,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제공 주요서비스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첫만남이용권
-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 (아동·청소년) 교육비지원, 아동급식, 청소년특별지원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산형성지원
- (노년·한부모 등)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알아보세요.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대상서비스

-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인연금, 아이돌봄서비스, 청년월세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복지도움요청

📍 삶이 어렵고 힘들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도움요청’에 본인 또는 이웃의 사연을 등록하시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649만 4,738	755만 6,719	855만 5,952	951만 5,150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6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2%)	82만 0,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304만 4,84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380만 6,060
주거급여 (중위소득48%)	123만 0,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456만 7,27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475만 7,575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 3,351,791원)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324만 7,369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324만 7,369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정부 지원사업 연계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 본 책자에 표기된 ‘누리집’은 홈페이지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1

2026년 신규 복지 서비스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서비스

.....

- ◆ 청년미래적금
- ◆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박사우수 장학금(이공계)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서비스

○ 청년미래적금

| 대상 일정소득 이하 만 19~34세 청년

- (일반형)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우대형)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중기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 일반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는 우대형 분류
 -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이하는 이자소득 비과세만 부여

| 내용 납입액(월 50만 원 한도)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원(일반형 6%, 우대형 12%) 및 이자소득 비과세

| 방법 비대면 가입 신청

| 문의 금융위원회(www.fsc.go.kr) 및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 대상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경제적 학대 또는 학대 위험이 있는 자 우선 지원)

| 내용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 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

| 방법 본인(후견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상담 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자주 하는 질문

1. 모든 재산을 맡기나요?

→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을 위탁. 위탁가능 재산은 현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중심

2.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어르신 재산이 공단 소유가 되어 공단이 임의로 처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로서 배분계획에 근거한 재산을 월별 배정, 지출내역에 대한 점검 등 재산관리에 국한되며, 실질적인 재산 집행은 계약에 의해 지정된 자원인이 하고, 사망 시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3.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시범사업에 이용하시면 이용료는 무료

* 다만,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닐 경우 이용료 부과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 대상**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 육아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 [단축 후]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1일 1시간 이상 단축)
- | 내용**
- 지원액: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연간 최대 360만원 지급 한도)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30명 한도(10인 미만일 경우, 3명)
 - ※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임금 감소액 보전금(월 20만원)도 지원 가능
-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 대상**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 내용** 지원 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지원
- |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 박사우수 장학금(이공계)

- | 대상** 국내 일반 및 전문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전공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
- | 내용** 석사과정 장학생: 연 750만 원
-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2

생계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 ◆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 ◆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
- ◆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안정자금지원)
-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채무조정)
- ◆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6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1인가구): 생계급여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207만 8,316원에서 60만원을 뺀 147만 8,316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590만 원(3년)	1,095만 원(5년)	1,60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단열,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인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침수피해우려가구: 침수방지시설을 3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급여종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502,000원	-	-
중학생		699,000원	-	-
고등학생		860,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연 1회 (학교로 실비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 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table><tr><th>구분</th><th>지원내용</th></tr><tr><td>생계급여·의료급여</td><td>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td></tr><tr><td>주거급여·교육급여</td><td>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td></tr></table>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한전ON』 (스마트폰앱 또는 인터넷) 〈신청바로가기〉  또는 한국전력(☎123)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한국전력공사(☎123)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자주 하는 질문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 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된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된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만 3,179원, 4인 기준 487만 1,054원)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56만 4,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249만 4,000원 이하

|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생계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99만 4,600원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부가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계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온가족보듬사업

| 대상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등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 내용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구분	주요내용
가족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이혼전·후상담 등 가족관계 개선 위한 상담 제공
사례관리	초기상담 및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계획 수립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손)자녀 및 청소년(한)부모 대상 학습정서지원 - (손)자녀 양육 가족 및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생활도움지원 - 청소년(한)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대상 양육 및 자기돌봄 교육 - 원가정 회복지원, 면접교섭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긴급위기지원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 심리·정서지원 - 긴급돌봄지원(생활도움서비스 지원 및 1인가구 병원동행)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연계 등

| 방법 시·군·구 가족센터에 신청

|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족상담전화(☎1577-4206)

○ 통합사례관리사업

| 대상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내용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및 진단비, 교육훈련비 등 일부 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긴급돌봄 지원사업

| 대상 사고, 질병, 부상, 재난,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구분		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 기본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등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②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③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기본서비스)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재난피해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 자살시도, 학대사례, 거주지 불명 등으로 재가돌봄이 전면불가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돌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가능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내용 •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시간) 최대 72시간, 1일당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 소진 권고

| 방법 •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친족에 한함)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 제공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또는 관할 지자체

※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연번	2026년 수행 지역	
	시·도명	시·군·구명
1	부산광역시	전체(16개) 시·군·구
2	대구광역시	전체(9개) 시·군·구
3	인천광역시	전체(10개) 시·군·구
4	광주광역시	전체(5개) 시·군·구
5	대전광역시	전체(5개) 시·군·구
6	울산광역시	전체(5개) 시·군·구
7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지역
8	강원특별자치도	전체(18개) 시·군·구
9	충청북도	전체(11개) 시·군·구
10	충청남도	전체(15개) 시·군·구
11	전북특별자치도	전체(14개) 시·군·구
12	전라남도	전체(22개) 시·군·구
13	경상북도	13개 시·군·구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14	경상남도	전체(18개) 시·군·구
15	제주특별자치도	전체(2개) 시·군·구

○ 상병수당 시범사업

| 대상 만 15~64세 취업자(단,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 내용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 시 취업자격 및 소득기준(2단계)* 충족자 대상 상병수당 지급

* 소득기준은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안양, 대구달서, 용인, 익산만 적용

| 방법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 시 건보공단에 신청하여 자격심사 등 진행 후 지급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 상병수당운영팀

- 충주 043-849-7791 ■ 대구달서 053-620-7241
- 홍성 041-630-4751 ■ 안양 031-479-9811
- 전주 063-279-1221 ■ 용인 031-329-4161
- 원주 033-749-9217 ■ 익산 063-840-8621

🔊 알려드립니다

● 신청시점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시점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므로 상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참여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질병 및 부상 치료가 종료된 후 신청하는 경우 소급하여 지원 불가

● 모형 및 지급조건

구분	1단계 (‘22.7월~’24.12월 종료)			2단계 (‘23.7월~)	3단계 (‘24.7월~)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소득하위 50%	소득기준 없음
모형구분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 필수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7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150일	120일	150일	150일
지급 방식	정액지급			정액지급 (日49,540원)	정률지급* (日49,540원(하한) ~ 68,100원(상한))
대상지역	부천·포항	서울종로·천안	순천·창원	대구달서·안양 용인·익산	충주·홍성·전주·원주

● 신청 및 지급절차



🗨 자주 하는 질문

상병수당 신청은 저소득층만 가능한가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있나요?

- ➔ (2단계) 신청인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3단계)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택임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공급

- |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571만 7,900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수급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자산요건 미적용
- |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 |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 국민임대주택 공급

- |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 |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 행복주택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계층	입주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 (자산) 본인 총자산 10,8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창업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계층	입주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중소기업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문의

- LH 집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6년임대/뉴홈 선택형)

Ⅰ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분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청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미혼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무주택자(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본다)일 것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특별공급 가능	(소득) 청년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순자산) 청년본인 276백만 원 이하, 부모소득 1,035백만 원 이하 2개 모두 충족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 (맞벌이) 200% 이하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생애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40%) * (맞벌이) 200% 이하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구분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신생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가구원수 2명은 150%) * (맞벌이) 200% 이하 (순자산) 362백만 원 이하
노부모부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1호에 해당하고,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기관추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국가 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무기간(6년)동안 시중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약 80~90% 수준으로 임대거주 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 *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한 임차인
- |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신생아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 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임대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든든전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관

※ 2026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50% 408만 4,215원, 70% 571만 7,900원, 90% 735만 1,586원, 100% 816만 8,429원, 120% 980만 2,115원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3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4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든든전세	시세 90% 이하 수준으로 최장 8년간 임대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신생아, 든든전세: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 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성평등가족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성평등가족부 고시한부모 가족, 신생아 가구 (3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보호종료아동은 적용하지 않음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무관

※ 2026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50% 408만 4,215원, 70% 571만 7,900원, 90% 735만 1,586원, 100% 816만 8,429원, 120% 980만 2,115원

|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2.2% 이자 상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2.2% 이자 상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 예시 수도권에서 1억 4,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 원, 월임대료 23만 원 수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2.2% 이자 상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 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20세 이하 무상지원(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은 22세 이하 무상지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수도권 최대 2억,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9,0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LH, 지방도시공사 80% 지원)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 지방도시공사

○ 청년월세 지원

- | 대상**
 -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내용**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6. 3월 ~ '26. 5월 (3개월)
 - (지급기간) 선정자 발표 후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 선정자 발표 후 첫 달에 5월부터 해당 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 |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청년월세 담당부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 대상**

썩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 대상자
- |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임대기간: 건설, 매입, 전세임대주택 등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전세,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영구임대는 50년 거주 가능)
- |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LH 이주지원 119센터,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 문의**

LH 마이홈센터(☎1600-1004)

◦ 긴급 주거지원

- |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 |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 | 문의 LH마이홈(☎1600-1004)

◦ 납북피해자 지원

- | 대상 무주택 전후납북자
- | 내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 방법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이산가족납북자과로 송부
- | 문의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02-2100-5916)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내용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590만 원(3년)	1,095만 원(5년)	1,601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 거주 수급자: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청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 문의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 | 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
- | 내용 노후주택 에너지성능강화 공사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 방법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청·접수
-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 | 대상 LPG용기 사용 주택에서 LPG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
- |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 | 방법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문의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 | 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 |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https://www.knrec.or.kr/>)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¹⁾ (행정복지센터 또는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²⁾)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³⁾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주1) 복지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 등 기준을 준용하여 추천

주2) 복지사각지대 예시 및 구분: 독거가정,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미혼모가정, 저소득가정, 재난재해가정, 기타

주3)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시 사전 협의 필요 (단지 내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 가구만 지원)

-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비 지원 제외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 → LED 교체 불가)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기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내용 노후화된 저효율 조명기기(형광등, 백열전구,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

|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1877-6568, 02-6913-2173)

자주 하는 질문

오래된 LED조명도 교체가 가능한가요?

→ 저효율 일반조명 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 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LED 조명은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다자녀가 포함된 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1961.12.31. 이전 출생자	2019.1.1.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을 포함하는 세대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지원제외

-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②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내용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367,000원)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6월~12월)
※ 바우처 사용 : (하절기) 7월~9월, (동절기) 10월~차년도 5월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건이용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3세 미만(2014.1.1. 이후 출생자) 어린이 1.1만명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내용 ① 상품·서비스·진료비 ② 실내환경 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지원

항목	지원규모	상세 내용
상품·서비스· 진료비	10,000명	- 1인당 이용권(포인트) 100,000원 지원 - 상품(아토피 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 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 캠프 등), 진료비(약제비 포함)를 전용 온라인몰 또는 환경보건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한도 내 이용
실내환경 컨설팅	1,000명	- 전문 인력이 가정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곰팡이 등) 측정 및 저감·관리 방안 안내 - 개선이 시급한 250명을 선정하여 경보수·청소 등 실내환경 개선 지원 예정

| 방법 환경보건이용권 누리집(www.ehtis.or.kr/ecovouche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증명서 별도 제출

| 문의 환경보건이용권 상담센터 1544-0331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와 ①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주·세대원인 성인 또는 ②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인 성인(2007.1.1. 이전 출생자)이 대리 신청

자주 하는 질문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품·서비스·진료비와 실내환경 컨설팅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합니다.

발급된 포인트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환경보건이용권 전용 온라인몰에서 환경성질환 예방 물품, 서비스 등을 구매하거나, 환경보건이용권 누리집에서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료받은 의료비나 약제비를 실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환경 개선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실내환경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곰팡이 등) 측정 결과와 가구 현황 등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개선이 시급한 가구 순으로 선정합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제외

- ①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냉방지원: 고효율 에어컨 보급·설치 지원
- 난방지원: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설치 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 알려드립니다

동 사업은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사업 신청 시 관련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며, 주택 소유주 동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희망하는 내용과 실제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현장 방문 및 조사 결과, 주택 내 배관(가스, 수도)·벽체·전기 등 제반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보다 따뜻한 겨울과 보다 시원한 여름을 나실 수 있습니다.
- 사업 전·후 대상 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2.4% 절감 효과 ($207.7\text{kWh}/\text{m}^2 \rightarrow 161.2\text{kWh}/\text{m}^2$)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 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낱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 보일러 교체 지원: 노후·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가스 및 기름보일러)
- 에어컨 교체 지원: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가구 대상), 벽걸이 및 스탠드 에어컨(사회복지시설 대상)지원

◉ 참고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 대상 주택용(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 참여 제외

- 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
- ②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③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고객
(단, 한전이 시행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와 중복 가능)

| 내용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전력량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kWh당 30~100원으로 산정된 캐시백을 익월분 전기요금에서 차감

절감률	3% 이상 ~ 5% 미만	5% 이상 ~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이하
단 가	30원/kWh	60원/kWh	80원/kWh	100원/kWh

• 유의사항

- 이사 등으로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전 주소지에서 산정된 캐시백은 지급이 제외됨

| 방법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한전 지사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 방문신청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신청 바로가기〉



| 문의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차상위계층 등

| 내용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5~30% 지원(가구당 30만 원 한도)

*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

※ 전기요금 복지할인 선신청 필요

| 방법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https://en-ter.co.kr>)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 고객센터(☎1551-1212)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순자산가액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
- |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로 5억 원(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6억 원)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4억 원, 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3.2억 원)까지 소득별로 연 2.85%~4.15%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IM)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IM)

○ 보금자리론

-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신혼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다자녀(2자녀 이상) 1억 원, 전세사기피해자 소득제한 없음),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 내용**
 - LTV 최대 70%(생애최초 80%, 전세사기피해자 100%), 대출한도 3.6억 원(다자녀(2자녀 이상)·전세사기피해자 4억 원, 생애최초 4.2억 원) 이내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지원
 -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0.7%p,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0.7%p, 다자녀(2자녀)가구 0.5%p, 신혼가구 0.3%p, 신생아출산가구 0.2%p, 저소득청년 0.1%p, 전세사기피해자 1.0%p 금리우대
 - 상환기간은 최장 50년
- |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모바일 신청
-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2자녀 이상 가구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순자산가액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
- | 내용**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2.5~3.5%)로 대출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6억 원(수도권 2.5억 원)
- | 방법** • 주택도시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IM)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 문의** • 주택도시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IM)

○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 |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순자산가액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

우대형	일반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내용** 월세 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3%, 일반형 1.8%)로 매월 6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1,440만 원 대출
- | 방법** • 주택도시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IM)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 문의** • 주택도시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IM)

○ 일반월세자금보증

- |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 | 내용**
 - (보증비율)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대출 시 대출금액의 80% 신용보증(보증료 연 0.02%)
 - (보증한도)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 ① 1억 원 - 기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 ② 1,152만 원 - 기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 ③ (월세 2년 환산액) × 80% - 기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 | 방법** 은행에 월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 대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 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청년·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097~0.211%로 보증
- |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 취급은행: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www.khug.or.kr)
 - 위탁은행(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 일반전세자금보증

- | 대상**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부부합산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인 세대주
- | 내용**
 - (보증비율)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액의 90% 신용보증
 - (보증한도) 아래 ①~③ 중 적은 금액
 - ① 4억 원 - 기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② 임차보증금 × 80% - 기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③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KB국민, 광주, 기업, NH농협, 아이엠뱅크, SH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카카오펙, 케이뱅크, 토스뱅크
-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① (청년) 5천만 원, ② (청년 외) 6천만 원, ③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 원)
 -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 일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시청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
- |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대상자
※ 국민행복기금 :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서민의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13.3월 출범
- |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취약계층 등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및 상환유예 제공
- | 방법 • 오프라인 :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 | 문의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 | 대상 공사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및 개인회생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 | 내용 최대 2,000만 원, 최장 5년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연 1.9~4%로 지원
- | 방법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badbank.or.kr)
- | 문의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 대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인 채무자

|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분할 상환 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구분		지원내용
신속 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 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50%까지 인하(최고 15%(카드채무 10%), 최저 3.25%)
사전채무 조정 (프리워크 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까지 인하 (최고 8%, 최저 3.25%)
개인워크 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 0~30%, 상각채권 원금 20~70% 범위 내에서 감면(금융취약계층 최대 90%)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교육, 문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 |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1년 지원(연장불가)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내용**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할 경우 기준가격의 약 60~90% 할인 지원
 - ※ 공급가격

구 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kg/1포당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1포당 10,000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자
- |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3만 7,950원) 지원
- |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보험료 지원 신청
- |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 **대상**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3~64세)과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 **내용**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월)
◆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돌봄·가사 월 36시간(A형)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①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 지원	68.4만원	1일 최대 8시간
돌봄·가사 월 72시간(C형)		②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136.8만원	
가사만 월 24시간(B형)		③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44.4만원	1일 최대 3시간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식사관리 서비스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22.8만원	8회
	영양관리 서비스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6만원	8회 + 수시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7.2만원 (시간당 1.7만원)	최대 16시간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원	4회
휴식 지원 서비스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대상 가족 대상으로 단기 시설보호 지원	일 7만원	최대 3일 (회당 24시간)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월)
소셜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20만원	4회 (회당 120분)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 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20만원	4회 (회당 100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20만원	8회 (회당 60분)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 향상, 체력 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24만원	주 2~3회 (회당 60~90분)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6개월간 15만원	6개월간 총 5회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12만원	3회 (회당 60분)

- 방법**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를 통해 신청·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 소득조사 →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별 사업이 상이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자주 하는 질문

한 가정 내에 돌봄 필요 중장년과 이 중장년분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있는데요, 이 경우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각각 동시에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동시에 이용은 어렵고,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한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에 더해,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친척 등까지 인정하며, 여타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해당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가정 내에 돌봄 필요 중장년이 두 명입니다(부부인 경우). 이 경우 두 명 모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두 명 모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두 명 모두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일상생활 수행능력)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 등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진 않는데, 기본서비스는 신청하고 싶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신청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살고 있는(주소지) 지역 내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 및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가능)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돌봄필요청중장년의 연령 하한이 낮아지고(19~64세 → 13~64세),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하한이 폐지됩니다(9~39세 → 39세 이하)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대상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국내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5만 원*) 발급

* 청소년기(2008년생~2013년생), 준고령기(1962년생~1966년생) 1만 원 추가 지원(총 16만 원)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잡지, 신문), 음반, 공예, 문화체험 등

• 관광 :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교통수단 등

• 체육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 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앱,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전화(ARS)에서 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

누리집(모바일버전) QR코드



|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채팅/챗봇상담(평일 9시~18시) : 고객센터 → 채팅/챗봇상담
 - 문의 게시판 : 고객센터 → 묻고 답하기(Q&A)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카드 발급, 이용, 부정행위 등 전반)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잔액조회, 분실신고, 수령등록)

🔊 알려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재충전)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 본인충전금은 환불 및 이월 가능

문화누리카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main/main.do>)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munhwanuricard>)
-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 채널(https://pf.kakao.com/_uxgxixlxd)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지원금이 인상되며('25년 14만원 → '26년 15만원),
청소년기(2008년생~2013년생)와 준고령기(1962년생~1966년생)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만 5~18세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만 5~69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 | 내용** • (저소득층 유청소년)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수강 가능 시설 및 강좌 확인 가능
 • (장애인) 1인당 매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수강 가능 시설 및 강좌 확인 가능
- |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 |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1551-0078)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내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참고

🔊 알려드립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매년 11월 전국 동시 접수기간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접수기간인 11월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동시 접수기간' 이후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결과는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누리집(MY페이지 → 강좌이용권신청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신청 가능 여부는 시군구청의 예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해주세요.

어느 시설에서든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등록된 시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의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거주지역으로 조회하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카드사에서 카드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본인 확인(개인정보)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카드로 직접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 자주 하는 질문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 전용카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및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를 완료하면 시설로 수강료가 직접 입금됩니다. 시설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는 언제 결제해야 하나요?

➔ 강좌를 수강하는 해당 월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해당 월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미결제분은 소멸됩니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 및 유청소년 우선 선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 |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약 75,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및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사용 가능
- | 방법**
 - 이용권 발급 : 본인 소유 KB국민카드에 포인트 충전(KB국민카드 회원)
 - 비회원의 경우 KB카드(신용, 체크) 또는 KB페이 설치·사용
 - 신청기간 : '26.1.2. ~ '26.1.30.
 - 선정발표 : '26.2.20.
 - 포인트충전 : '26.2.20.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 '26.11.30.까지
 - ※ 사용기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

🔊 알려드립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카드 발급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오니(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반드시 11월 30일 이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용기간 내에도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용 불가
- 2026.2.1.기준 2026년 이용권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음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 | 대상**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 | 내용**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 가입되어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질병 등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 | 방법**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으로 신청
- | 문의**
-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평생교육이용권

- | 대상**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내 성인(19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록장애인(19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AI·디지털교육 수요자(30세 이상)
- | 내용** 총 115,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이용권 포인트 지원
- | | |
|---------|---|
| 사용가능 교육 |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시설 및 학원 등에서 운영되는 인문교양교육, 자격증 취득 및 학점은행제 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 수강 가능 |
| 사용가능 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온·오프라인 가능), 지역제한 없음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www.lllcard.kr 를 통해 사용기관 확인 가능) |
- | 방법** 광역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 * 장애인이용권 정부24(<https://plus.gov.kr>) 신청·접수 → 이용자 선정 → 농협NH(채움) 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원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 문의**
- 1) 일반, 노인,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 콜센터(☎1600-3005)
 -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정부24(<https://plus.gov.kr>)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중앙 콜센터(☎1668-0420)

 알려드립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소개**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NH농협(채움)카드에 이용권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처 안내**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강좌 수강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습자는 이용권 카드를 활용하여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광역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illcard.kr)에 접속해 주민등록등본상 소속 지자체의 신청접수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가능 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사용기관은 광역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illcard.kr) → 사용안내 → 사용기관 안내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3

취업 지원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
- ◆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취업지원서비스)
- ◆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 ◆ 여성이 일하고자 할 때
- ◆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 ◆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
- ◆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생활안정 지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 |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6,048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 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업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5% 금액으로 산정

지원예시

-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 원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만 6,500원 (70만 원 × 9.5%)
 - ※ 본인부담금 : 1만 6,640원, 국가 지원금 : 4만 9,860원

- | 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디지털 ARS 신청
 - 고용센터 :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 대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 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 | 방법**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지사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고객센터 접수 후 지사 이관)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취업지원서비스)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I 유형	15~69세	중위소득 60% ↓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 중위소득 120% ↓)	4억원 이하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 5억 원 이하)
II 유형		중위소득 100% ↓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 소득 무관)	무관

※ I 유형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 가능

|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 지원	공통	•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기본 60만 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소득 지원	II 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 시 1회 2만 원(5회) 지원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 추가 훈련수당(월 20만 원 X 최대 6개월) 및 취업성공수당(40만 원) * II 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근무 시 지급
	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12개월 근무 시 100만 원 지원* * I·II 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24.go.kr)으로 참여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 내용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II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훈련비의 0~2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비 90% 이상 지원(1회에 한함)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훈련비의 10% 지원(취약계층은 90% 지원) ※ 요건 충족 시 자부담액 전액 환급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비의 90% 지원(50만 원 별도 한도)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국기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등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

| 방법

- 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문의

- 고용24(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대상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 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취업설계	■ 심층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8시간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시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개별상담 15만 원, 집단상담 10만 원 ※ 단, 출소 예정자는 미지급
(2단계) 직업능력개발	■ 개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창업 교육 - 공단 자원훈련 - 직영훈련(기술교육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연계) - 취업매칭반 훈련	• 교육비 최대 30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 4,000원) •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000원)
(3단계) 취업성공	■ 취업정보 제공 ■ 동행면접 ■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면접참여수당 1회 2만 원~5만 원 (최대 6회 30만 원)
(4단계) 사후관리	■ 취·창업자 직장 적응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 취업성공수당 -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근속 시 200만 원 • 근속 1개월 20만 원 • 근속 3개월 50만 원 • 근속 6개월 60만 원 • 근속 12개월 70만 원 - 고용보험 미가입, 12개월 근속 시 150만 원 • 근속 1개월 20만 원 • 근속 3개월 30만 원 • 근속 6개월 40만 원 • 근속 12개월 60만 원

* 훈련장려금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만 6,000원 한도) 지원

| 방법 • 선정과정 :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 신청방법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저소득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드립니다.

◦ 자활근로

- | **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 |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 |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희망저축계좌(I, II)

| 대상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II 유형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내용

구분	지원내용
I 유형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I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30만 원* 매칭 지원(3년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 * 연차별 차등지원(1년차 10만 원 → 2년차 20만 원 → 3년차 30만 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청년내일저축계좌

- |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 '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100% 차상위초과자 신규 모집 중단
 - (근로·사업소득) 모집 시 별도 공고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50만 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로장려금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5.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2025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4,4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월평균 근로소득이 5백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 방법 ① (원칙)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5% 감액 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정산(지급/환수)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안내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자녀장려금

- | 대상**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 |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100만 원 지급
- | 방법**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5% 감액 지급
- |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자주 하는 질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일하고자 할 때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 및 재직여성

|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창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 고부가가치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 지원 •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지원금(1인당 460만 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경력단절 예방 지원	•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등 지원 • <기업>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상담

|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새일여성인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여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과 여성근로자(인턴취업자)에게 장려금(기업 8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장려금(8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 대상**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
 -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 | 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본부 및 17개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 입주비용: (보증금) 150만원/실, (관리비) 지역 및 보육실 크기에 따라 상이
 -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 방법** 입주 신청 및 접수(해당지역센터) → 서류, 발표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 |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biz.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 대상**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 내용**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 및 정부지원사업의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 방법**
 - 신청방법: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여성 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 여부 확인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 | 문의**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문의 콜센터(☎02-2038-8953), www.wbiz.or.kr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 대상 소비재를 생산·판매하는 여성기업

| 내용

- (판로역량 강화 교육 및 MD 상담회) 판로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교육 및 주요 유통사 진출을 위한 MD매칭을 통해 1:1 컨설팅 실시
- (홈쇼핑 입점) 공영홈쇼핑 입점을 위한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 대상 라이브 방송 수수료 지원
- (SNS광고영상제작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제품 홍보영상 제작비 지원

| 방법 공고(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 모집 및 선정 → 판로역량 강화 지원(교육, MD 상담회, SNS 홍보,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 후속지원(간담회, 컨설팅 등)

|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23)

◉ 여성창업엑셀러레이팅

- | 대상**
- (여성창업경진대회) 예비여성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투자유치 30억 원 미만)
 -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
- | 내용**
- (여성창업경진대회) 교육, 멘토링, 시상식, 사업화지원, 투자유치 등
 - 교육·멘토링: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지원
 - 시상: 수상자 40팀(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및 상금 2,000만 원)
 - 후속지원: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 자격 부여(상위 26팀 이내), 초기 사업화자금(60팀, 기업당 400만 원 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교육, 컨설팅,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 교육: 수출 우수사례, 수출 통관 절차, 해외 마케팅 등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하우 전수
 - 컨설팅 및 글로벌 홍보지원: 해외진출 역량진단 전문가 컨설팅, 참여기업 영문 리플릿 제작 등 홍보 지원
 - 해외시장 개척: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 전시회 참가기업 참가비
- | 방법**
- 신청방법: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서 신청
 - 지원절차
 - 여성창업경진대회: 사업공고(1월) → 사전교육 및 멘토링(2~3월) → 신청·접수(3~4월) → 심사 및 선정(5~6월) → 시상식(7월) → 사업화지원(7~11월) → 후속지원(9~12월)
 -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공고(1월) → 신청·접수(2~3월) → 교육(3~4월) → 컨설팅 및 멘토링(4~5월) → 글로벌 홍보지원(5~9월) → 해외시장 개척(5~11월)
- |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43, www.wbiz.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알려드립니다

여성기업인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saeil.mogef.go.kr
- 한국여성벤처협회 www.kovwa.or.kr
-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kwbiz.or.kr
- 서울시 여성창업플라자 www.seoulwomenventure.or.kr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wbiz.or.kr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중년에게 일자리 재참여 기회 제공 및 중장년층의 창업, 계속 고용을 지원합니다.

○ 중장년 경력지원제

- | **대상** • 만 50세~65세 대한민국 국적 미취업자
 • 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운영기관,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내용**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함
(1주 30시간 이상 참여자 기준, 월 최대 150만원 지원)
- | **방법** 1. 민간위탁기관(중장년내일센터 등)에 신청서 제출
 2. 고용24 신청(고용24 →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 중장년경력지원제)
-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알려드립니다

- 최소 4주~최대 12주 과정 참여 가능
- 참여시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1주 30시간 이상 참여자 기준, 월 최대 150만원(4주 정산시) 지원

💬 자주 하는 질문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 (단, '26.1.1. 이후 참여자만 가능, 근로계약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개월 미만 참여자는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능)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 | **대상**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3년 이내 (예비)창업자
- | **내용**
 - (교육)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실전 창업 커리큘럼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중장년의 창업역량 강화
 - (보육) 네트워크 행사, 멘토링, 경영·기술·마케팅,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 중장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 | **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사업 → 해당 지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사무공간(지정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
-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번호 3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대상**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 |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수도권 90만 원, 비수도권 120만 원 지원
- | **방법**
 - 신청방법 :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25년) 분기별 90만 원 지원 → (26년) 분기별 수도권 90만 원, 비수도권 120만 원 지원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미취업 청년에게 직업훈련, 해외취업 및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현장실습 지원금

| 대상 2026학년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직업계고 3학년 학생

| 내용 학생 1인당 최대 360만 원(국고 180만 원, 교육청 180만 원)
※ 학생 1인당 1일 6만 원, 최대 60일까지 지원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 기업현장교육

|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지도 기업 현장교사*

*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 자격요건: 아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재직자

- 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훈련 유경험자
-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내용 현장실습 일 30,000원(210만 원 한도)

※ 현장실습생 1명 담당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지원금 지급(담당 학생 1명 일당 3만 원/2명 3만 5천 원)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 취업연계 장려금

- | 대상** 2026학년도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이상) 졸업(예정)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
- | 내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12개월 간 근무한 자에게 500만 원 지원(2회 분할지급)*
 * (1차) 3개월 재직 시 200만 원 (2차) 12개월 재직 시 300만 원, 신청자에 한함
 ※ 재직인정기한* 내 재직기간(3개월, 12개월)을 확인 후 심사를 거쳐 지급
 * 재직인정기한: (1차) '27.09.30.까지 (2차) '29.03.31까지 인정
 ※ 중소·중견 기업에서 사업기준일('26.10.01.)로부터 30개월 이내 12개월 재직필요
-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 | 대상**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합고)
- | 내용** 24개 거점학교 및 인근 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와 취업 지원 등
 • 직업계고 졸업자 현황 관리, 취·창업·후학습, 정책지원 정보 제공, 상담·선후배 멘토링, 화상면접 지원, 취업준비공간 제공 및 취업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 방법** 24개 거점학교 및 중앙취업지원센터 문의

구분	권역별 거점학교			
	중부권(9개교)	충청권(6개교)	경상권(4개교)	전라권(5개교)
직업계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합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서울동구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영락의료과학고 일신여자상업고 정석항공과학고 홍천농업고 근명고 인천금융고	공주마이스터고 동아마이스터고 대전여자상업고 아산스마트팩토리 마이스터고 충주상업고 청주공업고	경북기계공업고 경주정보고 구미전자공업고 창원기계공업고	동일미래과학고 여수석유화학고 전남여자상업고 전북기계공업고 전주공업고

- | 문의** 중앙취업지원센터(☎1599-8297)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7개 거점학교로 확대(2026년 4월경 학교 선정 예정)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 대상 기업,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사·학생, 학부모 등 대국민

| 내용 고졸 취업 지원·정보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 전국의 일자리 발굴(업무협약, 취업처 발굴 등), 17개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등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선도기업 추천 및 선정 등
- 고졸 취업 지원 전용 플랫폼 “고졸만잡(JOB)” 운영, 취업우수 기업의 지원정책 발굴 등

| 방법 • 업무협약 문의: 중앙취업지원센터

• 고졸채용

- 중앙취업지원센터 유선 문의 후 채용계획공고요청서 제출
- 고졸만잡(job.kosaf.go.kr) → 채용 → 채용공고등록요청

| 문의 중앙취업지원센터(☎1599-8297)

○ 일학습병행

| 대상

구분		① 단독기업형	② 공동훈련센터형
참여대상	학습기업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기업 * 우수기업(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기업 등)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가능 * 5인 이상 ~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 우량기업 또는 현장심사단이 이와 동등한 기업이라고 판단한 기업 등 참여가능(세부요건 공고문 참조)
	학습근로자	재직 3년 이내 근로자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포함) 2~3학년,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재학생(최종학년), 재직 3년 이내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D-2, D-10 소지자), 고용보험미가입자(구직자취업연계 시범사업)

| 내용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이 가능하도록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운영비용(훈련비, 기업현장 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 지원

| 방법

구분		① 단독기업형	② 공동훈련센터형
신청방법	학습기업	학습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HRD-Net 온라인 신청	공동훈련센터·기업 협약체결 후 학습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고용24 온라인 신청
	학습근로자	학습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신청	공동훈련센터의 모집안내에 따라 신청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

| 대상 5세 ~ 24세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 맞춤형 직업훈련
직업분야별 기술훈련장 및 해당 전문직업훈련을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전문성 함양
*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 직업훈련비 지원
- 인턴십, 직장체험
직업훈련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일 경험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역 기업 연계로 인턴십 및 직장체험 제공
* 인턴십, 직장체험 제공 기업에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운영비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모의면접, 이력서 코칭 등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하여 취업 알선,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방법 주 지역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청소년 1388(www.1388.go.kr)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디지털 Training)

- |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 **내용** 훈련비(자부담 10% 이하) 및 훈련장려금 등 추가 지원
- | **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 | **문의**
 - 고용24(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알려드립니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이란?

➔ 민간 혁신훈련기관, KT·삼성 등 선도기업, 서울대·성균관대와 같은 우수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 '24년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등 첨단 및 융복합 분야를 포괄하는 신기술 분야 전반으로 훈련 분야 확대·시행 중

훈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를 훈련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며,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합니다.(평균 6개월·주 5일·일 8시간의 집중적인 훈련과정으로, 경험·문제 해결 능력에 중점을 둔 훈련과정 운영을 추구)

○ 창업기숙사 사업

-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소재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 또는 기 창업한 자
※ 저소득층 대학생 우대

- | 내용** 주거 및 창업 공간 제공, 창업지원 프로그램 무상지원
• (기숙사현황) 전국 5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95명 수용

구분	서울센터	부산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대전센터
위치	중구 장충동1가 (동대입구역)	연제구 연산동 (연산역)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	서구 농성동 (농성역)	중구 용두동 (오룡역)
정원	53명	46명	36명	32명	28명

- (지원내용) 주거 및 창업공간 제공, 창업지원 프로그램 무상지원

구분		지원내용
공간지원	주거공간	사생실, 세탁실, 공용주방 등
	창업공간	임대형사무실, 세미나실, 멘토링실 등
창업지원	창업교육	(창업자문)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소그룹 맞춤형 자문 (창업특강)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분야별 전문가 특강
	네트워킹	(관계형성) 선배창업가, 입주생, 투자자와의 창업 네트워크 형성 (경진대회) 창업가의 핵심 고민인 투자유치 실전경험 제공
	판로지원	온라인 홍보관 운영, 언론보도 등 판로개척 지원

- | 방법** • 모집시기
- 상반기 모집: 매년 12월 중 차년도 입주생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차년도 2월 중 입주
- 하반기 모집: 상반기 선발인원이 정원에 미달하거나 중도 퇴실 등으로 다수의 공실 발생 시 진행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www.kosaf.go.kr

○ 해외취업 지원

| 대상

사업명	지원대상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K-Move 스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 가능) * 단, 군에 복무한 자에 대하여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한다. ②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연령 등)에 부합하는 자 ③ 최종 학교(대학교 이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① 34세 이하인 자(단, 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까지 가능)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가구소득 3분위 이하인 자 ③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취업비자, 연봉 1,700만 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등)
해외일경험지원 사업(WELL)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 해외일경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미취업자(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 해외 일경험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로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 등의 선발기준에 부합한 자 - 해외 일경험에 필요한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공단지원사업 '참여청년 중복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내재취업지원	①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참여자(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해외취업알선 등) ② 해외취업연수인턴십·창업 등 해외경험자(교육부, KOICA, KOTRA 등 타 사업 포함) ③ 해외진출 예정자(정부지원 해외진출사업을 통해 출국이 예정된 자) <참여 제한요건> - 34세 이하인 자(단, 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까지 가능)

|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취업활성화 도모
K-Move 스쿨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350만 원(운영기관 지급) ※ 1인당 최대 트랙 I (300시간 이상) 800만원, 트랙 II (800시간 이상) 최대 1,350만원, 新정해진대학(600시간 이상) 최대 1,000만 원 한도 지원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담 및 지원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급 ※ 취업 기간에 따라 3회 분할지급(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후)
해외 K-Move 센터	해외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지원 ※ 일본(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미국(LA, 뉴욕, 달라스, 실리콘밸리),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독일(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영국(런던), 헝가리(부다페스트), 중국(베이징, 상하이, 홍콩),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인도(뉴델리), 싱가포르(싱가포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호주(시드니, 멜버른), 뉴질랜드(오클랜드), 멕시코(멕시코시티), 중동(두바이) 등 28개소

사업명	지원내용			
해외일경험지원사업 (WELL)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을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로그램 출국전 사전교육 + 현지 일경험 + 사후관리로 구성			
	구분	사전교육	현지 일경험	사후관리
	시간·기간	25시간	2~4개월	현지 일경험 종료 후 6·12·18개월
	주요내용	출국 전 직무·소양교육	일경험 수행	수료자 근황 파악 및 취업 지원 등
	• 지원내용 준비금 + 수료금 + 월 체재비 지급			
	구분	준비금	수료금	체재비
	지원 금액	국가별 지원금의 70%	국가별 지원금의 30%	월 150만 원
	지원 시기	현지 일경험 개시 후	현지 일경험 수료 후	현지 일경험 기간 중 (2~4개월)
	※ 국가별 지원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대만, 홍콩, 베트남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국내재취업지원	•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 국내 복귀(예정)자의 국내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세미나, 전문가 컨설팅, 실전 모의면접' 등 전문적·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잡페어) 국내 구인기업과 구직자와의 만남의 장 제공으로 국내 복귀자의 국내 재취업 지원			

방법

사업명	신청방법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K-Move 스쿨	① 신청방법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로 온라인 신청 ※ 월드잡 접속(회원가입, 로그인) → 마이페이지(이력서 작성, 저장 및 공개 설정) → 지원 내용 선택(채용·모집 → 해외연수 메뉴 클릭 후 희망 연수과정 선택) ② 선발방법 : 연수과정 운영기관에서 직접 선발
해외취업알선	① 알선 : 구직등록/구인요청(구직자, 사업주) → 구인요청 사실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 구직자 모집(한국산업인력공단) → 알선(한국산업인력공단) → 서류심사, 면접, 합격결정(사업주) → 근로계약체결(사업주-구직자) → 출국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상담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담예약 가능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① 신청방법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로 온라인 신청 ② 신청절차 : 취업성공(취업인정기준 부합) → 1차 지원금 신청(취업 1개월 후) → 2차 지원금 신청(취업 6개월 후) → 3차 지원금 신청(취업 12개월 후)
해외 K-Move 센터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 K-Move센터 정보 확인
해외일경험지원 사업(WELL)	월드잡플러스에서 지원 ▶ 서류·면접 심사 ▶ 참여청년 확정
국내재취업지원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정보 확인('26년 상반기 내 공지 예정)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

자주 하는 질문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의 사업내용과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 스쿨)은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 등이 연수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선(先) 발굴 후 해외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과정 수료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회원가입 후 연수생 모집 중인 과정을 검색하여 희망하는 연수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수기관의 정원 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연수생 선발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정보와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해외진출(취업, 인턴 등)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취업을 위한 각 국의 구인정보, 비자, 유망직종, 취업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취업상담 및 알선, 해외취업아카데미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대상 중 취약계층*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수생 숙박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취약계층 청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은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월 최대 20만 원/인, 연수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 시 지급, 자세한 내용은 공단 문의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 가구소득이 기존 8분위에서 3분위로 변경됩니다.

'26년도 1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됩니다.

○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현지 일경험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청년 주도의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월드잡플러스 공고 게시 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를 제공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대상**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해당 청년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 내용**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비수도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① 기업에는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② 청년에게는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시 최대 720만 원 지원(일반 480만 원, 우대 600만 원, 특별 720만 원)
- | 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 2026년 사업 운영기관(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업종을 기준으로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누어 지원하였으나,
- 2026년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유형으로 개편하여 비수도권 청년 이탈 방지 및 인력난 완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우대지원을 시행합니다.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4

임신·보육 지원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하시죠?**

.....

- ◆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 ◆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 ◆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 ◆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 내용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후 비용 지원(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상한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필수 검사항목 : (여)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남)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방법 온라인(e보건소, www.e-health.go.kr)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방문하여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기관 확인하기 Click)

|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소급지원불가: 먼저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에 검사 실시
- * 단, 검사 당일 신청 시 예외 적용 가능

💬 자주 하는 질문

검사의뢰서를 꼭 지참하여야 하나요?

➔ 네. 검사의뢰서는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가 지원사업의 대상자임을 인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검사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내용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일부 비급여항목을 지원

- 지원 시술 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최대금액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 원

※ 지원 금액 내 비급여항목 지원한도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20만 원, 배아 동결비 30만 원

* 지자체별 지원 내용 상이하나, 위 최소 공통 지원 기준 이상으로 지원 중

| 방법 • (방문)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정부24 또는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앙 및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기관 안내

구분	운영기관	주소	전화	누리집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중구 을지로 245, 본관 2층	02-2276-2276	22762276.nmc.or.kr
인천	(의)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72, 아인병원 5층	032-466-3268	www.id-incheon.co.kr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67, 7층	053-261-3375	www.healthymom.or.kr
전남	의료법인 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1길 8, 3층	061-901-1234	www.hwc1234.co.kr
경기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1, 3층	031-255-3374	www.happyfamily3375.or.kr
경북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367	happymoa.kr
서울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센터) 서울 강남구 연주로 211, 2동 3층 (송파센터) 서울 송파구 송파로 66, 가든파인브 영관 8층	(강남) 02-2019-4581 (송파) 02-6956-6248	www.mindcare-for-family.kr
경기 북부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031-961-8500	happyfamily.dumc.or.kr
경북 서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응급수납 2층	054-429-8540	www.healthymoa.kr
서울 서남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금천구센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9 금화빌딩 10층	(금천) 02-895-1002	www.fmc.or.kr
전북	예수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6, 권익수행정동 1층	063-230-8950	www.jbpcc.kr
경남	창원한마음병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지하1층	055-225-0840	www.gncare.kr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가 추가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지역 미정).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 대상**
-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 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www.e-health.go.kr) 신청
- |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동결·보존 진행
 ※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신부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해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 | 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 | 방법** 정부24(맘편한 임신)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임신·출산 모바일앱은 어디서 설치할 수 있나요?

➔ 구글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
- |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분)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 | 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 대상**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 | 내용** 인플루엔자 3가 백신(IV), 매년 1회 지원
 -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임신부 매년 9~10월경)
- | 방법**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 ※ 위탁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영양플러스

-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5세까지)
- |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 | 내용** 임신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에 대해 지원(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 당 100만 원)
 -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요양비(출산비) 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 |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 |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청

○ 출산비용 지원

- |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20만 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 대상**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 | 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 | 대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및 출생아동
- | 내용** • (상담) 위기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7개소) 설치, 통합 상담전화(1308) 개통,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
•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 방법**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 방문 또는 1308 통합 상담전화
- | 문의**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 1308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

구분	지역	기관명	연락처
중앙상담지원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713~8718 ncrc1308@ncrc.or.kr
지역상담기관	서울특별시	애란원	02-363-1421 aeranwon1308@naver.com
	부산광역시	마리아모성원	051-250-5477 busan1308@naver.com
	대구광역시	가톨릭푸름터	053-763-1308 1308gglade@kakao.com
	인천광역시	인천자모원	032-772-2071 injamo2071@naver.com
	광주광역시	엔젤하우스	062-655-1308 angelhouse1984@hanmail.net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자모원	042-721-6934 djamo2@naver.com
	울산광역시	미혼의집 물푸레	052-244-1308~9 ulsanmam@hanmail.net
	경기도(남부)	사단법인 여성행복누리	1533-7722 happyaurm@hanmail.net
	경기도(북부)	천사의 집	031-858-2004 angelmomcare@naver.com
	강원특별자치도	마리아의 집	033-263-6273 wigimom1308@hanmail.net
	충청북도	새생명지원센터	043-211-3053 cjnewlife1@naver.com
	충청남도	구세군 아룸드리	070-4151-7616, 7617 arumdri-1308@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기쁨의 하우스	070-5165-7576, 8604 jeonbuk1308@daum.net
	전라남도	성모의 집	061-277-1308 sungmo8004@hanmail.net
	경상북도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054-715-1326 gb1308@hanmail.net
	경상남도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055-231-0582 lifemam1308@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 청수	064-773-2010 momjeju2010@naver.com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 내용**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 당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으로 신규 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경우,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됨에 유의(재신청 전까지 기존 바우처 잔액 사용 가능)
- | 방법**
- (방문)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은행),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가능)
 - (팩스) 공단 지사
 - (온라인) 공단·전담 금융기관(홈페이지, 앱, 전화), 정부24(gov.kr) 홈페이지('임신'만 가능)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온라인 임신출산정보' 등록 필요
 (서면으로 신청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외)
- |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현대카드(☎1577-6000)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현대카드는 '26.7.1.부터 신청·발급 가능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 대상** '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
- | 내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 '24년 1.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자주 하는 질문

신청기한은 없나요?

- ➔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24년 출생아부터는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2년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4명	15일	25일	40일

|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문의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무료 공익보험)

| 대상 (주계약) 태아

(특 약) 17~45세(22주 이내 임신부)

※ 다태아의 경우 각각 가입하되 특약은 다태아 중 1명만 가입 가능

| 내용 • 보장내용

(주계약) 태아의 희귀질환 진단보험금 100만 원(최초 1회에 한함)

(특 약) 임신중 질환별(임신중독증 10만 원, 임신고혈압 5만 원, 임신성당뇨 3만 원) 진단보험금(최초 1회에 한함)

※ '희귀질환'이라 함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을 말합니다.

- 보험료: 우체국에서 전액 부담

- 납입기간: 전기납(연납) 국가(우체국)에서 부담

| 방법 • 방문신청: 전국 우체국

• 온라인신청: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잇다보험앱(아이폰, 안드로이드)

| 문의 • 전화문의: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

• 관련 웹사이트: 우체국보험 홈페이지(www.epostlife.go.kr)

🔊 알려드립니다

우체국보험 모바일앱은 어디서 설치할 수 있나요?

➔ 구글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보험



Android



IOS

💬 자주 하는 질문

다태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다태아는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다태아 해당 여부를 고지하면 됩니다.

단,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의 경우 '임신질환특약'은 1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의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 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 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 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140만 원

|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25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50개월 상한) →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인정(상한 없음)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단위: 개월)

구 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08 ~ '25	-	12	30 (+18)	48 (+18)	50 (+2)
'26.1.1 이후	12	24 (+12)	42 (+18)	60 (+18)	78 (+18)

|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대상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단태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30일 기준 22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므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유산·사산휴가 기간(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 대규모기업 근로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3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30일 기준 22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자주 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도 종료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응하는 금액)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응하는 금액 전부를 지원(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 |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내용**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중 최초 2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168,420원)
 - ※ 최초 2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 내용** 150만 원 지급
 -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 첨부서류: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1,684,4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이므로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육아휴직 급여 지원

- |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통상임금의 100~80% 지급 (1~3개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450만 원) 지급 * 사용기간에 따라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지원예시

월 25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250만 원(250만 원×100%, 최대 2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은 '25년부터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지급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 원)×(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 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상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 지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1호~3호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① 총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총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

| 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해당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월 최대 140만 원 지원(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 ① 총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총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140만 원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30인 이상	1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 원

*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 지원금)

|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 내용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1개월 최대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 원
	30인 이상	4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20만 원

|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 대상**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 [단축 후]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1일 1시간 이상 단축)
- | 내용**
- 지원액: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연간 최대 360만원 지급 한도)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30명 한도(10인 미만일 경우, 3명)
 ※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임금 감소액 보전금(월 20만원)도 지원 가능
-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구분	설치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 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 소요비용의 80%)
	공동			6억 원	
	공통		교재교구비 (교체비)	5천만 원 (3천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 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공동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 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 원	
			교재교구비 (교체비)	7천만 원 (3천만 원)	
			시설임차비	3억 원	소요비용의 80% (임차보증금 제외)

※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임

※ 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신청 가능함(기지원일 또는 인가일 기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월 평균 근무시간	지원내용(1인당 월 지급액)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주 40시간 이상	60만 원	138만 원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5만 원	121만 원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40만 원	86만 원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0만 원	52만 원

※ 전체 보육현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비율만큼 감액

※ 원장의 경우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교사 겸직 시 현원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

구분	지원내용				
보육현원	39명 이하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 이상
지원금액	월 200만 원	월 280만 원	월 360만 원	월 440만 원	월 520만 원

• 상생형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영유아의 질병·부상, 보육교사의 부재 등 돌봄공백 상황에 긴급돌봄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업무구분	기본보육시간 외 돌봄	야간, 휴일, 원아부모의 요청 시 등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09:00~16:00) 외 돌봄
인건비	신규채용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과 동일
	기존인력활용	1시간당 10,000원 (단, 보육교직원 1인당 월 22시간 한도)
운영비	긴급돌봄 총 시간	
	월 지원금액	
	110시간 이상	50만 원
	88시간 이상 110시간 미만	40만 원
	66시간 이상 88시간 미만	30만 원
	44시간 이상 66시간 미만	20만 원
	44시간 미만	10만 원

| 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escac/>)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02-2670-0411~29)
- 대전 (☎042-870-9111~7)
- 부산 (☎051-320-8182~8)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0~2세 보육료 지원

- |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0~2세 아동
※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 | 내용** 나이에 따라 월 42만 6,000원~58만 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세에 누리과정(3세반)으로 상위반 편성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2세 유아가 상위반 편성하여 누리과정(3~5세반) 교육을 받을 경우 누리과정은 지원기간이 36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36개월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후 보호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 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 3~5세 누리과정 지원

|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3~5세 유아

- 5세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4세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3세 : 2022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 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10만 원	28만 원	28만 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 누리과정운영비(어린이집)	5만 원	7만 원	7만 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6년 기준)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 자주 하는 질문

유치원 입학 후 유아학비 신청을 늦게 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소급지원 가능한가요?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학일 이후 신청을 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받는 중에 중간에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신청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일정 기간 비용이 학부모 부담으로 부담 처리됨. 이 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한가요?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더라도 유치원으로 교육기관을 옮겼다면 이는 유아학비를 복지로 사이트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학비 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학비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24~35개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아동수당

- | 대상** 만 9세 미만(0~107개월) 모든 아동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 내용** 만 9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108개월간 월 10~13만 원 지급(매월 25일)
※ 17년생 아동은 연령 도래와 관계없이 매월 계속 지급
-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 가능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 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 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 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 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연령) 8세 → 9세 미만
- (금액) 매월 10만 원 → 매월 10만 원 ~ 13만 원
- * 매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 원(지역화폐 +1만 원), 인구감소 특별 12만 원(지역화폐 +1만 원)

◦ 부모급여

| 대상 0~1세 아동

|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26년 시설 이용시 0세(바우처 584천 원 + 현금 416천 원), 1세(0세반인 경우 바우처 584천 원 / 1세반인 경우 바우처 515천 원 + 현금 없음)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단,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방법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3인 기준 348만 3,373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구분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5%	348만 3,373원	422만 1,580원	491만 1,867원	556만 1,369원

|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급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가족상담전화(☎1577-4206 → 1번)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1월부터 청소년부모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시간제 서비스 연간 1,080시간 지원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시간제(0~12세, 시간당 12,79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2,790원)	
		A형(2018.1.1. 이후 출생)		B형(2017.1.1. 이후 출생)		0 ~ 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 (85%)	1,918원 (15%)	10,232원 (80%)	2,558원 (20%)	10,872원 (85%)	1,918원 (15%)
나형	120% 이하	7,674원 (60%)	5,116원 (40%)	6,396원 (50%)	6,394원 (50%)	7,674원 (60%)	5,116원 (40%)
다형	150% 이하	3,838원 (30%)	8,952원 (70%)	3,198원 (25%)	9,592원 (75%)	3,838원 (30%)	8,952원 (70%)
라형	250% 이하	1,920원 (15%)	10,870원 (85%)	1,280원 (10%)	11,510원 (90%)	1,920원 (15%)	10,870원 (85%)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	12,790원 (100%)	-	12,790원 (100%)

| 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누리집: 복지포털(www.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idolbom.go.kr)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부지원 기준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960시간 → 1,080시간)
- 6~12세 아동 대상 정부지원비율 상향
- 인구감소지역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대상 • 보육료를 지원받는 0~5세 아동(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 가능)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내용 어린이집의 기본·연장보육 외에 야간연장, 24시간, 휴일 등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5:30~07:30 포함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일요일,공휴일 07:30~19:30

| 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시간제보육 지원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독립반: 6~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까지

| 내용 가정양육 시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시간제보육료 5,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2,000원

| 방법 1) 아이사랑포털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 포털을 통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이 어려울 경우,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가능

2) 아이사랑포털에서 온라인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독립반만 해당)에서 유선예약

※ 단,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000원)

※ 기존 아이행복(사랑)카드 계속 사용 가능

| 문의 •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 하는 질문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독립반은 평일(월~금) 9:00~18:00까지, 통합반은 평일(월~금) 9:00~16:00까지 이용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월 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독립반)의 당일 예약 가능시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 (변경) 서비스 이용 당일 14시*까지

* 단, 당일예약은 이용시작 1시간 전까지만 신청가능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 **대상**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아동
- | **내용** 보육료 월 10만 원 지급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최대 월 10만 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입양아동 지원

- | **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 | **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 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72만 1,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월 63만 4,000원
	의료비	연 최대 260만 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 지원
입양촉하금		1회 200만 원
입양비용		1회 100만 원

- |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육아종합지원센터

- | 대상 영유아, 영유아 보호자
- | 내용 공통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제공, 시간제보육 사업 운영 지원,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 | 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 |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02-1661-5666, central.childcare.go.kr)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 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 | 내용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 | 방법 인근 시군구 가족센터 방문 또는 문의
- |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영양플러스

-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5세까지)
- |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 |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 |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은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 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대상** 선천성 난청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 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보청기: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로서,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구분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 원 한도)
보청기 지원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 원 한도)

- |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출생시 체중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 원	5백만 원	10백만 원	20백만 원	7백만 원

- |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 | 내용**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소득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80% → 100%, '26.7월~)
-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 | 내용** 기저귀(월 9만 원) 및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 |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주 하는 질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20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7월부터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 100%, '26.7월~)

◦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6세 미만 영유아

| 내용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4회) 비용 전액 지급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 개월	(3차) 9~12 개월	(4차) 18~24 개월	(5차) 30~36 개월	(6차) 42~48 개월	(7차) 54~60 개월	(8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	○	○	○	○	○	○	○
구강 검진	-	-	-	○ (18~29)	○ (30~41)	○ (42~53)	○ (54~65)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주거, 생계),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 추가로 우편 발송) → 검진기관 방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대상 12세 이하 어린이(2013.1.1. 이후 출생자)

※ BCG(피내용), Hib, PCV 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지원.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8개월 0일까지 지원
 ※ 인플루엔자 백신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사업 내용 참고

| 내용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총 17개 감염병) 접종비용 전액 지원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횟수	접종 권장시기
B형간염	HepB	3	1차(출생 시), 2차(생후 1개월), 3차(생후 6개월)
결핵	BCG(피내용)	1	생후 4주 이내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DTaP*	5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5~18개월), 5차(4~6세)
	Tdap/Td	1	6차(11~12세)
폴리오	IP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18개월), 4차(4~6세)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폐렴구균	PC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PPSV	-	침습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이 높은 2세 이상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V1	2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RV5	3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2	1차(생후 12~15개월), 2차(4~6세)
수두	VAR	1	1차(생후 12~15개월)
A형간염	HepA	2	1~2차(생후 12~23개월)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	5	1~2차(생후 12~23개월), 3차(생후 24~35개월), 4차(6세), 5차(12세)
	LJEV(약독화 생백신)	2	1차(생후 12~23개월), 2차(생후 24~35개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1~2차(12세)
인플루엔자	IIV	1**	매년 1회 ※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9월경)

* DTaP, IPV, Hib 백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단독백신 또는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생후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경우 최소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방법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하여 접종

※ 위탁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가을(2026-2027절기)부터 14세 청소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신청절차 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시 접종 가능

◦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 |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아동
 - 본인부담 5% :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 |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어린이 불소 도포

- | 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 | 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제품 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제공
- | 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 →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 늘봄학교

- | 대상** 희망하는 초등학교 학생
- | 내용**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기존 초등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
- | 방법** 자녀 재학 학교 늘봄지원실을 통해 신청
- | 문의**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교육청,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 다함께 돌봄 사업

- |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
- | 내용**
 - 정기·일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운영(필수 운영시간 포함)
 - 학기중: 13:00~20:00(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09:00~18:00(필수 운영시간)
 -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오전(07:00~09:00), 야간(20:00~22:00) 일일 4시간 연장 운영
 - ※ 운영 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 누리집(www.dadol.or.kr)에서 확인 가능
- | 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www.gov.kr) 등으로 서비스 신청
 - 돌봄서비스 신청(보호자) → 상담, 개인별 플랜(센터) →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센터) → 서비스 제공(센터) → 사후관리 및 확인(해당 지자체)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지원단(☎02-6454-8500)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야간연장돌봄 사업이 시작됩니다.

-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밤시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6세~12세 아동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국 360개소(22시, 24시)).

돌봄시설 찾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 사업소개 → 아동성장돌봄 → 야간연장돌봄사업 → 돌봄시설찾기

◦ 지역아동센터 지원

- | 대상**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센터 이용 아동의 50% 이상 우선 돌봄아동(저소득,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다자녀 가정, 기타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아동) 배정

- | 내용**
- 운영시간: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운영(필수 운영시간 포함)
 - 학기중: 13:00~20:00(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12:00~17:00(필수 운영시간)
 - 운영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보호	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교육	학교생활 준비, 숙제 및 독서지도 등
문화	문화체험, 견학, 캠프, 놀이활동 지원 등
정서지원	사례관리, 상담, 보호자교육 등
지역사회 연계	인적·물적자원 연계, 지역복지 활동

- |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지원단(☎02-6454-8500)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 대상**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 내용** 학습지원, 캠프, 상담, 다양한 전문체험활동 프로그램(예술, 과학, 진로개발, 봉사, 리더십개발, 동아리활동 등) 운영
 ※ 주 5일, 1일 4시간 이상(석식 포함) 상시 운영

- | 방법**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www.youth.go.kr/yaca/index.do) 접속 → 해당 지역 운영기관 검색 후 문의
 -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청

- | 문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92~5)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5

청소년·청년 지원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 ◆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보호 및 자립지원)
- ◆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청소년 보호 및 상담)
- ◆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청소년 역량 강화)
- ◆ 교육비가 부담될 때(교육비 지원)
- ◆ 교육비가 부담될 때(보건 및 복지 지원)
- ◆ 교육비가 부담될 때(장학금 등 지원)
- ◆ 교육비가 부담될 때(학자금대출 지원)
- ◆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받고 싶을 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보호 및 자립지원)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 | 대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 | 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양육환경·아동발달 상황을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
 -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 | 방법**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시군구 드림스타트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 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 내용**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 | 방법**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 후 신청
-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 경찰청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182)

○ 가정위탁아동 지원

|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보호·양육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즉각분리·응급조치된 학대피해 영유아(만 6세 이하)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포함)

| 내용 •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만 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5만 원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6만 원
디딤씨앗통장	저축시 정부지원금 2배 추가적립(최대 월 10만 원 지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필요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상해보험료	연 6만 8,500원	
전문아동보호비	전문가정위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 아동 보호 시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아동용품구입비	위탁가정 책정 시 1회 100만 원 지원 권고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8,500원 내외

| 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 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 내용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습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상담

자주 하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 ➔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 | 대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 | 내용** 선별검사 비용 지원,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 방법**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에서 경계선지능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또는 진단결과(심리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으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알려드립니다

선별검사(종합심리검사)

- 검사개요 : 선별검사(Full Battery)는 지능검사, HTP, 문장완성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성숙도 검사를 포함하여 진행 가능
- 검사기관 및 검사자 : 지역사회 내 병원 또는 임상심리사가 검사 실시 필요
- 검사대상 : 선별체크리스트를 통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는 아동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아동
- | 내용** 아동이 통장에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아동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50만 원(이 중 5만 원까지 1:2로 매칭하여 최대 10만 원 지원)
- | 방법**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https://ncrc.or.kr>)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내용** 월 5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 방법** 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및 복지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 |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구분	지원내용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 | 방법**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지원절차) 사후관리를 통한 발굴 및 유관기관의 의뢰 → 초기상담 및 접수 →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 → 지원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https://jaripon.ncrc.or.kr>)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주거, 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운영

- | 대상**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세~18세)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
- | 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캠프(11박12일) 등 제공
 -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대안교육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 | 방법**
 - 청소년안전망 또는 디딤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개별 신청 가능
 - ※ 청소년안전망 시스템 누리집(<https://gov.youthsafety.go.kr/login.do>)
 - 중앙디딤센터(<https://www.nyhc.or.kr/IndexServlet>)
 - 대구디딤센터(<https://www.youthfly.or.kr/html/main.html>)
 - ※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900, www.nyhc.or.kr)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053-665-6900, www.youthfly.or.kr)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 | 대상**
 -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9~24세 청소년
 - ※ 우선지원대상 : 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비행, 인터넷 중독, 폭력(성·학교·가정) 피해, 학업중단 청소년 등
- | 내용**
 -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위기상황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청소년의 문제 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 | 방법**
 - 청소년상담전화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상담
- | 문의**
 -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1388 포털(www.1388.go.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대상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지원 가능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진로지원	전문직업훈련·일경험 제공 및 취업연계 등
건강지원	무료 급식 및 건강검진 등 생활지원

| 방법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 방문 및 청소년 1388(www.1388.go.kr)

- | 문의**
- 청소년 1388(www.1388.go.kr)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검진은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내용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본인부담 없음)

구분	검사항목 및 방법												
기본	건강 상담 (문진 등)	요검사	혈액검사*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구강 검진	흉부 방사선 촬영	
		요단백 요잠혈	혈색소**	혈당	총콜레 스테롤	AST	ALT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 간염항체			
선택	상담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HIV)				클라미디아, 임질 (성매개질환)			
확진	상담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	
		혈압측정		공복혈당				요단백, 요잠혈		C형간염 정밀검사		매독 정밀검사	

* 혈색소는 여성에 한해 실시

** 체질량지수가 백분위수 도표 95 이상 또는 BMI 2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시

*** B형, C형 간염검사는 최초 수검 시에만 실시

| 방법 청소년1388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문의 • 지역별 꿈드림센터

※ 청소년1388(www.1388.go.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꿈드림센터 확인

• 청소년상담1388(☎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 대상**
- 다른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고립·은둔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 대금	월 15만 원(수업료)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30만 원 이하(검정고시)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30만 원 이하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 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 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하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

|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 |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상담1388(☎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청소년성문화센터

- | 대상 아동·청소년, 부모 및 교사 등
- | 내용
 -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 | 방법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예약 신청
- | 문의
 -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www.mogef.go.kr)
 - 시도 청소년성문화센터

○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 | 대상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 | 내용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상담, 보호, 치료, 회복, 자립, 자활 등 피해발생 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 지원
- | 방법 전화, 방문 신청
- |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9332, www.stop.or.kr)
 - 여성긴급전화(☎1366)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 (예방 및 해소 지원)

| 대상 19세 미만 청소년

| 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치료기관 연계 등 지원

구분	지원내용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 개인상담, 집단상담, 추가심리검사 • 가족치유캠프(초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외 청소년(가족)은 식비 일부만 부담
과의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일반청소년 : 최대 40만 원 •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돌봄대상 : 최대 60만 원 ※ 추가심리검사 결과 과의존 이외 우울증, ADHD 등 공존질환이 발견된 청소년

| 방법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진단평가 후 과의존 단계별 지원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전화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 (서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1899-1822)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1~5)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http://nyit.or.kr>)

○ 위(Wee)프로젝트 사업 (위(Wee)클래스·위(Wee)센터·위(Wee)스쿨 등)

| 대상 • 위기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

| 내용 • 종합적인 다중 안전망 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게 ‘심리평가-상담-치유’ 서비스 제공
• 위기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체적인 상담 지원 내용 등은 위(Wee)프로젝트 각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구분	지원내용
위(Wee)클래스 (학교)	학교에 설치된 상담실로, 개인상담(학생·보호자), 집단상담, 교육 및 연수(학생·보호자·교사), 심리검사 실시 및 교사 대상 자문 등 제공
위(Wee)센터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생상담 지원시설로, 상담희망 학생 또는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유 원스톱서비스지원, 심층심리검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유관기관 연계 등 서비스 제공
가정형 위(Wee)센터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 생활환경 제공 및 보호, 상담 및 교육활동 등을 통해 가정·학교로의 복귀 지원
병원형 위(Wee)센터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사·상담·치료 등 지원
위(Wee)스쿨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치유 및 교육 제공

| 상담절차 • 위(Wee)클래스 : 상담의뢰(방문신청/교사신청) → 접수면접 → 심리검사 → 상담실행 → 종결보고 → 추수상담
• 위(Wee)센터 : 의뢰접수(학교 → 교육(지원)청) → 접수면접 → 사례회의 → 개인상담 → 심리평가/연계 → 사례평가/종결 → 추수관리
• 가정형/병원형 위(Wee)센터, 위(Wee)스쿨 : 위(Wee)센터 및 학교장을 통해 접수 의뢰

| 문의 • 위(Wee)프로젝트 누리집(www.wee.go.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044-415-2157)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 | 대상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및 가족
- | 내용 위기청소년이 가정, 학교 및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 연계·협력)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 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 |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문자(1388),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청소년상담1388), 라인(@cyber1388), 채팅 및 게시판 상담(www.1388.go.kr)

○ 청소년상담 1388

- | 대상 9세~24세 청소년
- | 내용 일상 고민에서부터 위기 상황에 이르기까지 365일, 24시간 상담채널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상담 서비스 제공
- | 방법 전화, 모바일(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인), 채팅 및 게시판 상담
- | 문의
 - 청소년 전화 상담: ☎1388 또는 지역번호+1388로 전화
 - 문자상담: 1388번으로 문자상담
 - 카카오톡·페이스북상담·인스타그램: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상담
 - 라인: '@cyber1388' 검색 후 상담
 - 채팅 및 게시판 상담: www.1388.go.kr에 접속해서 채팅방 참여

○ 청소년쉼터

- | 대상**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 내용**
- (입소 중) 의식주 등 생활보호,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연계,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정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퇴소 후) ① LH임대주택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원
※ 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 인 무주택자
 - ② 자립지원수당 지원
※ 만 18세 이후 퇴소자(21.1월 이후 퇴소)로서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받았을 것)
- | 방법** 청소년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문자) 발신번호에 1388 + 고민 또는 문의내용 작성 후 전송
 - 카카오톡·페이스북(청소년상담1388 채널), 청소년1388 누리집(1388.go.kr) 가정밖청소년지원 배너 클릭하여 내용 확인 및 채팅 및 게시판 상담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LH임대주택 및 자립지원수당 신청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유스타트 상담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쉼터에는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나요?

→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장 4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입소기간	24시간~7일 이내	3개월 이내 (최장 24개월)	3년 이내 (최장 4년)

청소년쉼터는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요?

→ 2026년 1월 기준 전국 13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전화’에 문의 또는 청소년1388 누리집,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가까운 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1388 누리집(1388.go.kr) → 내주변시설 클릭하여 주변시설 현황 확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www.kyci.or.kr) → 지역센터 → 청소년쉼터에서 지역별 쉼터 정보 확인

○ 청소년자립지원관

- | 대상**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후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 내용** 개인별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일상생활, 학업, 취업 및 주거 등 자립 목적의 사례관리를 통해 퇴소 후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도 및 지원
- | 방법**
 - 입소중인(입소했었던)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전화 신청
- |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문자) 발신번호에 1388+고민 또는 문의내용 작성 후 전송
 - 카카오톡·페이스북(청소년상담1388 채널), 청소년1388 누리집(1388.go.kr) 가정밖청소년지원 배너 클릭하여 내용 확인 및 채팅 및 게시판 상담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얼마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년 이내, 필요시 사례심의를 통해 6개월 이내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요?

→ 현재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인천 2개소, 대전 1개소, 경기 3개소, 강원 1개소, 충남 1개소, 제주 1개소 운영 중

※ 청소년자립지원관 정보는 청소년1388 누리집(1388.go.kr) → 내주변시설 클릭하여 주변시설 현황 확인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www.kyci.or.kr) → 지역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확인 가능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 대상 지역 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학교단체 등 유관기관

 내용	업무영역	주요 업무	주요 업무 개요	사업 예시(참고용)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	교육훈련 등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 맞춤형 직무교육 • 정책사업 직무교육 • 현장 학습활동 지원 등
		청소년활동 기관운영 지원	현장의 청소년활동 운영에 필요한 정보·프로그램·예산 등을 지원하는 업무	• 현장 기관 컨설팅 운영 • 수련시설 평가 지원(설명회,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등)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정책개발 및 제도화 지원	국가 및 지방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제도화를 지원하는 업무		• 정책방안 개발 • 정책수립지원 •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활용 등
	국가 정책사업 실행 지원	국가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 고유 국가정책사업 운영 •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자원봉사 활동, 비교과활동, 수련활동 인증제·신고제, 포상제 활성화 • 청소년활동 안전 지원 • 청소년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참정권 등
	시·도 정책사업 실행지원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 시·도 청소년정책사업 지원 • 청소년 축제, 국내·외 청소년 교류 등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 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조사·분석·수집 관리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청소년 정보 수집·관리체계 구축 •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활동 인지도 제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업무		• 청소년활동 홍보 • 청소년활동 인지도 개선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전문화	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무		• 센터 역량강화 • 전략기획(중장기 및 연간사업기획 등) • 센터 성과관리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중앙-시도-시군구의 정책네트워크와 현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		• 현장네트워크 구축(학교, 교과 연계 포함) • 네트워크 협력사업 운영 (프로그램, 예산 등 지원) • 청소년지도자 대회, 신년인사회, 사업설명회 등

| 방법 17개 시도 및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문의

| 문의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도	소재지	문의처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02-849-9223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051-852-3461~2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053-659-6210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032-833-8057~9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062-234-0755~6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042-488-0924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052-277-0606~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마은로	044-864-7935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31-232-9383~5
강원	강원도 원주시(분소: 강릉시)	033-731-3704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43-220-6821~2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041-562-9003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063-232-0479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061-280-9002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054-850-1004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055-711-135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64-751-5041~3

○ 청소년활동 지원

| 대상 대한민국 청소년 및 법인·시설·단체

| 내용 우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 방법 우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선정

| 문의 우수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97)

» 알려드립니다

국립수련시설에서 특별한 청소년 활동을 누리보세요.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누리집 '국립수련시설 이용신청'을 통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등 수련시설에서 진행되는 특성화캠프, 가족캠프 등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대상 고립·은둔 청소년

* 학령기(9~18세) 중점 지원

|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조기발견, 방문상담, 회복·치유 활동, 사후관리까지 전담인력을 통해 일대일(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기관 :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지역 : 4개 시·도(경남, 광주, 전남, 충북), 10개 시·군·구(서울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송파구/대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경기 성남시, 수원시/ 경북 포항시)

| 방법 • 사업 수행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문의 • 청소년 전화(☎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 + 1388)

• 사업 수행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대상 9~24세 이주배경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청소년, 북한민 청소년 등)

| 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사업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지원

•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인력 양성 등 연수·개발

| 방법 • 레인보우스쿨 신청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 문의(전화 또는 방문)

• 상담신청 : (기관) 의뢰서발송, (대상자 직접 신청) 재단 누리집 → 상담신청

| 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733-7587, www.rainbowyouth.or.kr)

» 알려드립니다

레인보우스쿨은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요?

→ '26년 기준 전국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 문의하시면 가까운 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가 부담될 때(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급여종류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502,000원	-	-
중학생	699,000원	-	-
고등학생	860,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연 1회 (학교로 실비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 (oneclick.neis.go.kr),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kosaf.go.kr)으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자주 하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 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고교학비 지원

-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제외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 |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 | 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등 포함)를 지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신청한 달부터 지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 | 문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 | 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교육비가 부담될 때 (보건 및 복지 지원)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 학교 우유급식

| 대상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
- 특수교육대상자
-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 내용 학생들에게 학기중·방학중 우유 지원(연간 250일 내외, 530원/개 이내)

| 방법 소속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 배부 → 학생이 우유급식 참여 신청서 제출

| 문의 소속 학교

○ 아동 급식 지원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 내용 단체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식품권 제공, 급식카드 발급 등으로 급식지원

|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자)우편 등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

| 내용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연 16만 8,000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 바우처 포인트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사용 가능하며,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다음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국민행복몰, 지마켓, 옥션,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쿠팡, 홈플러스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삼성카드	국민행복몰, 삼성카드 쇼핑몰, 베팡몰, T딜, 미즈톡톡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롯데카드	국민행복몰, 롯데카드 뽐샵, 엘포인트 몰, 베팡몰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롯데마트, VIC마켓, 세븐일레븐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신한카드 올댓쇼핑, 베팡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KB국민카드	국민행복몰, KBPAY몰, 쿠팡	GS25편의점, CU편의점, 세븐일레븐편의점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 문의 • 바우처 콜센터(☎1566-3232)

• 국민행복카드발급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자주 하는 질문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생리용품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는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 현대(26.7.1부터 신청가능) 카드입니다.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 상담전화(TM)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미동의시 금융기관(BC카드) 및 카드사를 방문하시거나 카드사별 전용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신청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란에 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

만 18세 미만 청소년 명의의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추가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카드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리용품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서비스 신청 후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되면, 국민행복카드사별 구매처에서 원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은 바우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카드사에 따라 생리용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가 다르므로 편의에 따라 카드사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부터 생리용품 지원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카드사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쳐 카드 발급
- 2026년부터 언제 신청하든지 연간 지원금(16만 8천 원) 전액을 지급합니다.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 대상**
- 12세 남성청소년(2014.1.1.~2014.12.31. 출생자)(2026. 5. 시행 예정)
 - 12~17세 여성 청소년(2008.1.1.~2014.12.31. 출생자)
 -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1.1.~2007.12.31. 출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내용**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 HPV 4가(가다실)
※ HPV 9가 백신 미지원
 - 지원내용 : HPV 예방접종 총 2~3회*
* 첫 접종 연령에 따라 접종횟수가 다름(14세 이하 1차 접종 시 2회, 15세 이상 1차 접종 시 3회 필요)
※ 12세 여성청소년(2013~2014년생)은 접종 시 건강상담 함께 제공
- | 방법**
-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하여 접종
- ※ 위탁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알려드립니다

○ HPV 예방접종 실시기준

첫 접종시기	접종 횟수	백신	차수	다음 접종 간격
12~14세	2회	HPV2 HPV4	1차	6~12개월
			2차	-
15~26세	3회	HPV4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상반기 12세 남성청소년도 HPV 백신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 2026.5.6.부터 2014년생 대상 실시
- ※ 신청절차 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시 접종 가능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 **대상**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 **내용**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 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 | **방법**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 지정
- | **문의** 각 시도 교육청



교육비가 부담될 때(장학금 등 지원)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사업

| 대상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 혹은 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 내용 매월 학업장려금(15~45만 원)을 장학금 카드로 지급하며, 멘토링 및 맞춤형 컨설팅, 심리상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월 15만 원	월 25만 원	월 35만 원	월 45만 원
교육 프로 그램	상담 (멘토링)	• 복꿈 성장 멘토링(교사 등과 1:1 상담(멘토링))			• 사회 환원 활동 참여
		• 복꿈 나눔 멘토링(선후배 간 상담(멘토링))			
		• 특별활동 지원(문화체험, 대학탐방 등)			
	교육 지원	• 진로 역량 개발 컨설팅 •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			

| 방법 소속 학교의 추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며,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

| 문의 • 소속 학교

•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 | 대상**
-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자 중 해외대학 입학에 희망하는 저소득층(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성적 우수 학생
 - 2027년 2월 또는 2028년 2월 졸업예정자
※ 선발예정인원 30명 내외(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5명 이내 선발 포함)
 - 학생 온라인 신청자
 -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학기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II 과목 중 당해연도 선발 공고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성적을 충족하는 과목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고3) / 12단위(고2) 이상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유학준비생 (국내장학생)	• 지원대상: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서류, 인적성 검사, 면접)된 학생 • 지원내역: 학업장려비 지원(고2: 월 50만 원, 고3: 월 70만 원) • 지원기간: 선발 익월부터 고교 졸업 시(2월 말)까지 지원 • 지급절차: 월별 학업보고서 제출 → 학업 보고서 심사 및 승인 → 학생계좌로 개별 지급
유학생 (해외장학생)	• 지원대상: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등 진학 가능 대학에 최종 합격한 경우 유학생 전환 • 지원내역: 연간 최대 7만 USD(학비+체재비), 항공료 별도 ※ 세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 지원기간: 입학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www.kosaf.go.kr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유형)

| 대상 •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현재 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

※ 일부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

세부요건	세부내용
지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경력	심사일 기준 2년 이상 재직(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 우선지원 대상

- 계속장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아래 항목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구분	연령	출신고교	재직기관	재직기간
배점	30점	25점	40점	5점

| 내용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 (계속장학생) 수혜 횟수 내에서 졸업까지 계속 지원

※ 매학기 지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지원

※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 후 일정 기간 기업에 재직* 의무,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 학기별 의무재직 이행기간 내 '수혜학기×4개월' 간 재직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 ☎1800-0499, www.kosaf.go.kr

○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 대상

구분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다자녀 국가장학금 (세자녀 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셋 이상) 가구의 대학생(미혼이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 유형으로 지원))

※ 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 12학점 이상 이수, B학점(80/100점) 이상 취득

- 단, 기초·차상위 C학점(70/100점) 이상, 신·편입생, 장애인학생,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미적용

| 내용

- I 유형, 다자녀 : 등록금 필수 경비(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026년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 금액〉

(단위: 만 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I 유형		전액	600			440			360		100
다자녀	첫째, 둘째	전액	610			505			465		135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200

- II 유형: 참여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 알려드립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생은 형제·자매 수에 따른 인적 공제 적용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 | 대상**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내 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신입생 및 3학년 또는 해외 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 및 확정인 신입생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당해 연도 국내 대학(4년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입학예정(확정) 또는 3학년 재학 중인 자
 -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 국내 일반 및 전문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전공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자

- | 내용**
- 학부생 지원 장학금 개요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대상	국내외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국내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지원 내용	• 국내 : 장학금(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성적우수자 250만 원/학기),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250만 원/학기) • 해외 : 연 \$5만 내에서 학비 및 체재비	• 장학금(등록금 전액) •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250만 원/학기) • 전문역량개발비(과기사관 250만 원/학기)
계속 지원 기준	• 성적 : B+수준,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의 87점 이상 • 최소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대학원생 지원 장학금 개요

구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석사우수장학금	박사우수장학금
지원 대상	국내 일반·전문대학원의 자연과학·공학계열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전일제 석사과정생 및 박사과정생	국내 일반·전문대학원의 자연과학·공학계열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전일제 석사과정생	국내 일반·전문대학원의 자연과학·공학계열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전일제 박사과정생
지원 내용	• 석사과정 年 18백만 원(月 1.5백만 원), 최대 4학기 • 박사과정 年 24백만 원(月 2백만 원), 최대 8학기	학기당 2.5백만 원(年 5백만 원), 최대 4학기	학기당 3.75백만 원(年 7.5백만 원), 최대 8학기
계속 지원 기준	• 1년 단위, 정량평가 또는 연구수행역량 평가로 계속 지원 여부 판단 - (정량평가) 연간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심사연도 성적 평균이 백분위 92점 또는 평점 4.0/4.5(3.7/4.3)이상인 자 - (연구수행역량평가) 장학생 선발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군의 서류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 연구수행역량평가는 성적 미충족자, 최소 수업연한 이수 후 심사연도 전체를 연구 학기로 재학한 자, 논문 작성을 위한 초과학기자 등에 한해 실시	학기당 3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87점 또는 평점 3.5/4.5(3.3/4.5) 이상인 자	학기당 3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87점 또는 평점 3.5/4.5(3.3/4.3) 이상인 자

-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www.kosaf.go.kr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석사우수 장학금(이공계))

- | 대상 국내 일반 및 전문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전공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석사과정생
- | 내용 석사과정 장학생 : 연 500만 원
-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박사우수 장학금(이공계))

- | 대상 국내 일반 및 전문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전공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
- | 내용 석사과정 장학생 : 연 750만 원
-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 국가근로장학금

- | 대상**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아래의 성적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 C⁰ 학점(70/100점) 이상
 -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 | 내용** 매월 근로시간당 장학금 지급
 - 시급단가: 교내근로 10,320원, 교외근로 12,790원
 - 최대 근로시간: 1일 8시간, 1월당 80시간(단, 방학 중 1주당 40시간), 1학기당 최대 640시간
-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www.kosaf.go.kr

» 알려드립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 ➔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

지원대상(성적 및 소득 기준 적용)에 예외적인 사항은 없나요?

- ➔ 학생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에는 성적기준의 적용 제위가 가능하며,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의 적용 제위가 가능합니다.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 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학과(부) 1,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전공탐색(I, II)유형'과 3학년 '전공확립(I,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

I 내용		구분	지원내용
I 유형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해당 학기 계속 지원 기준 충족 시)	
	생활비	• 공통지원 : 학기 당 2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II 유형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해당 학기 계속 지원 기준 충족 시)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계속지원기준		• 성적기준	
		- 등록금 : 직전학기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 생활비 : 직전학기 백분위 92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I·II유형 지원 내용은 2025년도 신규장학생 지원 기준			

※ I·II유형 지원 내용은 2025년도 신규장학생 지원 기준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www.kosaf.go.kr

○ 인문100년 장학금

| 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전공탐색(I, II)유형'과 3학년 '전공확립(I,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

I 내용		구분	지원내용
I 유형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해당 학기 계속 지원 기준 충족 시)	
	생활비	• 공통지원 : 학기 당 2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II 유형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해당 학기 계속 지원 기준 충족 시)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계속지원기준		• 성적기준 - 등록금 : 직전학기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 생활비 : 직전학기 백분위 92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I·II 유형 지원 내용은 2025년도 신규장학생 지원 기준			

※ I·II유형 지원 내용은 2025년도 신규장학생 지원 기준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www.kosaf.go.kr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 대상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

※ 기본 자격: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 (1학년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 없으나 대학 자체선발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구분		지원내용
I 유형	등록금	- 장학생 선발 학기부터 1년간 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계속 지원 기준: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학과(부)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충족할 경우,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
	생활비	학기 당 250만 원(해당 학기 계속 지원 기준 충족 시)
II 유형	등록금	- 장학생 선발 학기부터 1년간 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계속 지원 기준: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학과(부)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충족할 경우,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대상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아래의 성적 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성적) C0학점(70/100점) 이상

| 내용 매월 활동 시간당 장학금 지급

• 시간당 단가: 12,790원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1월당 80시간(단, 방학 중 1주당 40시간), 1학기 당 최대 640시간

※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 시 장학금 미지급

※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 | 대상**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중 기부처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전공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 | 내용** 생활비지원: 매학기 신규 장학생 선발
- 기부처별 지원금액, 지원기간, 심사기준 등 상이함
※ 기부처별 선발요건 및 지원은 재단 누리집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소개화면 참고
-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 모바일 챗봇 상담(<https://mo.kosaf.go.kr/apps?location=chatbot>)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 | 대상** 신청자격: AI 핵심분야 진로 희망 대학생 및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은 제외
- | 내용** • 지원금액: (대학생) 학기당 300만 원, 최대 4개 학기 지원(3년 이내 4회)
(대학원생) 학기당 500만 원, 최대 4개 학기 지원(3년 이내 4회)
• 지원기간: 2개 학기(휴학, 편입, 자퇴 등 학적 변동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반환)
• 계속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점수 85점 이상
-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대학에서 추천받은 학생만 신청 가능
- | 문의** • 대표번호(☎1599-2290)

🔊 알려드립니다

선발인원

2026년 대학생 200명, 대학원생 20명 신규 선발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한국장학재단 직접 선발로 선발 방식 변경
(2025년까지 대학별 인원 배정 후 대학에 위탁하여 선발)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 대상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학부* 재학생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 (성적기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대학 내 최소 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 내용

구분	지원내용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단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 해당 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1800-0499, www.kosaf.go.kr)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대상 국내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내용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23(지하철 3호선 원흥역 인근)
- 수용인원: 총 991명(493실, 장애인 5실 별도)
- 기숙사비: 월 15만 원(식사비 별도) / 보증금 15만 원(퇴실 시 전액 환급)
- 주요 편의시설: 식당, 카페, 편의점, 세탁실,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열람실, 체력단련실, 공동취사실

| 방법

- 모집시기
 - 정기모집: 1월(1학기), 7월(2학기 예정)
 - 수시모집: 공실 발생 시 매월 공고 예정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 주거안정장학금

- | **대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만 39세 이하 기초·차상위 대학생
- | **내용**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실비 지원
-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 알려드립니다

원거리 대학 진학 판단 기준은?

학생 소속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

- (광역 교통권 이내) 각 권역별 범위 이내의 지역 간에는 원거리 인정 불가
 - (광역 교통권 이외) 각 권역별 범위 외 지역 간에는 시·군을 기준으로 구분
 - 시 :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군 :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 광역교통권 권역별 범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로 함(단, 인천광역시의 경우 옹진군 전지역 및 강화군 일부 등 도서지역 제외)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광역교통법」 일부개정(25.12.2.)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주권' 추가되었으므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학생은 원거리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가 부담될 때 (학자금대출 지원)

학비 걱정을 덜어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드립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의 학부생,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으로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 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구분	학부	대학원
대상	협약 체결 대학 학부생	협약 체결 대학 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학생
연령	만 35세 이하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만 40세 이하
성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제한없음
소득	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다자녀 가구는 소득 무관	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 내용

구분	지원내용
대출금리	1.7%(변동금리)
대출조건	등록금 대출(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 대학원 등록금 대출은 학과·학제별 총한도 범위 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는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26. 5. 12. 개정법 시행일 이후 적용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자*는 최초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단, 졸업 후 2년 이내) * '26. 7. 1. 시행예정 - 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상환방법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 원)이하인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 알려드립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학부	• 등록금 대출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생활비 대출 : 학자금 지원 8분위 이하 또는 9분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	• 등록금 대출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생활비 대출 : 학자금 지원 6분위 이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30%(7.1. 시행예정)
- 자립준비청년(대출실행시점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은 등록금 대출까지 이자면제
- ※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상

구분	지원대상
대상	국내 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학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연령	만 55세 이하
성적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장애인,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는 적용 제외
소득	소득 무관
신용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내용

구분	지원내용
대출금리	1.7%(고정금리)
대출조건	등록금 대출(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 등록금 대출은 학과·학제별 총한도 범위 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는 생활비대출 미지원
이자면제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생활비대출 이자 면제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최장 20년 내)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 농촌 출신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사업

- |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본인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원)생
 - ※ 2025년 2학기부터 대학원생 지원 예정
 -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성적,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졸업 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순위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3순위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4순위	특별승인자

| 내용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 전액 무이자 대출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자주 하는 질문

농촌학자금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 농촌학자금대출은 나이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이면 됩니다.

농촌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은 없나요?

→ 농촌학자금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 대출로만 이용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 대상**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자
- | 내용**
- 대상 대출 : 장애정도별 최초장애판정 이전에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학자금유예대출, 구상채권)
 - ※ 최초장애판정 후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은 면제 불가
 - 소득 조건 : 채무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 면제 범위 : 장애정도 및 소득조건에 따라 대출 잔액 원금의 30%~90% 면제
 - 면제 방법 : 면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 전액 상환 후 면제
-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 확인 후 신청
-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230, 2250, www.kosaf.go.kr

❓ 자주 하는 질문

모든 장애인이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장애인 중 ① 최초장애판정 이전 학자금대출 실행,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자금대출 채무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역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	생계급여수급자	모집병에 지원하는 현역대상 • 육군 : 기술행정 • 해군 : 일반/기술/동반 • 해병 : 일반/ 기술/동반입대/직계 • 공군 : 일반/기술	가산점 3점 부여 * 공군 일반은 '26년 7월 입영자부터 추첨 선발로 변경 (가산점 미부여)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 상자	20세(고졸) 또는 각급 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2~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병역(입영·재병역) 판정검사 시 질병사유 서류보완 대상	우선 위탁검사 실시
사회복무요원 검직 허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검직 허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학력별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학습병행 자격증 보유(예정) 병역지정업체 종사자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 인원 전부 배정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자	병역처분변경 여부 관계 없이 지급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되어 소집 대기 중인 사람 • 졸업예정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	소집순위(2순위 조정) 에 따라 소집 * 희망시기 최대한 반영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대체복무 및 예비군대체복무대상자 중 희망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소집 (공석 범위 내)

방법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모집병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	매년 1~4월까지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지원 • 병무청 위탁검사 지정병원에서 실시한 위탁 검사 비용은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사회복무요원 검직 허가	복무기관에 서류 제출 (검직허가신청서, 수급자격 증빙서류)	연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매년 6월)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 배정(매년 12월) 후 다음 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청	연 중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관할 지방병무청 유선상담 후 우선소집신청서 제출	연 중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대체역 소집담당 유선상담 후 증빙서류 제출(042-481-2975)	연 중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대상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악성혈액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확진된 사람

※ 대상질환 :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애디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자),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내용 병역판정검사없이 서류심사로 병역 처분

방법 지방병무청에 서류 제출 → 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라 병역감면(신체등급 5·6급) 여부 결정

※ 제출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 대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 내용**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 | 방법** 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받고 싶을 때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을 지원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 대상 일정소득 이하 만 19~34세 청년

- (일반형)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우대형)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중기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 일반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는 우대형 분류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이하는 이자소득 비과세만 부여

| 내용 납입액(월 50만 원 한도)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원(일반형 6%, 우대형 12%) 및 이자소득 비과세

| 방법 비대면 가입 신청

| 문의 금융위원회(www.fsc.go.kr) 및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6

보건의료 지원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 ◆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 ◆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 ◆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 ◆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 ◆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 건강보험제도

- |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중증 소아 환자의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구입금액 일부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 당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는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장애인보조기기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직장에서 신청하지 않음)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내용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암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	5%
	심장질환	최대 30일(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5%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10%
	중증난치질환	5년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1년	5%
	중증외상	최대 30일(입원)	5%
	중증치매	V800 : 5년 V810 : 5년* *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잠복결핵	1년(6개월 연장)	0%

|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인을 받고,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또는 요양기관에 접수 대행 요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건강보험 차상위

|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324만 7,369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기본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주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자주 하는 질문

65세 이상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 참여 지역마다 지원 연령 및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사업 지역의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 |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 |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로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청

○ 재난적의료비 지원

| 대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며,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기준	조건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33,480원, 지역가입자 177,040원) 이하	
재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의료비 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시 지원 (2인 이상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분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금액 - 지원제외항목금액
※ 의료비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지원대상항목)+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50~80%
※ 지원제외항목 : 미용·성형, 특실, 1인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고가 치료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타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지원금 등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범위 내 지급	
	소득구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50%
※ 지원 금액 계산방법 : {본인부담의료비(급여일부분인부담금 지원대상 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 50 ~ 80%		
지원한도	입원, 외래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투약일수 제외),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	
개별심사	의료비 부담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구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1종 수급자	매 1개월간 2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 시 초과금액의 50% 지급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외래 365회 초과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매 1개월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2종 수급자	매 1개월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외래 365회 초과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만 원 초과 시 보장기관이 인정한 금액

※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先)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상한제 적용

|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 문의 시군구청

○ 의료급여 제도

|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 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노숙인, 타법 수급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85p)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1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태아 당 1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신청

-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유산보유자는 국가유산청(☎1600-0064)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대상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 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제왕절개·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

|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청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우선 차감 후 잔액을 정산하여 차기년도 현금으로 환급. 단,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에도 기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생활유지비 생성·지급
-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 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 방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우선 차감되며, 매 연도 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청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 대상**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455일, 기타 질환은 질환별 합산하여 연간 545일
- |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 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청

자주 하는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 ②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연 1회에 한함)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가건강검진제도

|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20~64세 지역세대주 및 세대원(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																																			
암검진	• 위암 :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 • 간암 :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 •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폐암 :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 *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 포함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월령별로 총 8회(구강검진 4회) 검진 실시 <table><tr><th>구분</th><th>(1차) 생후 14~35일</th><th>(2차) 4~6 개월</th><th>(3차) 9~12 개월</th><th>(4차) 18~24 개월</th><th>(5차) 30~36 개월</th><th>(6차) 42~48 개월</th><th>(7차) 54~60 개월</th><th>(8차) 66~71 개월</th></tr><tr><td>건강 검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구강 검진</td><td>-</td><td>-</td><td>-</td><td>○ (18~29)</td><td>○ (30~41)</td><td>○ (42~53)</td><td>○ (54~65)</td><td>-</td></tr></table>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 개월	(3차) 9~12 개월	(4차) 18~24 개월	(5차) 30~36 개월	(6차) 42~48 개월	(7차) 54~60 개월	(8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	○	○	○	○	○	○	○	구강 검진	-	-	-	○ (18~29)	○ (30~41)	○ (42~53)	○ (54~65)	-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 개월	(3차) 9~12 개월	(4차) 18~24 개월	(5차) 30~36 개월	(6차) 42~48 개월	(7차) 54~60 개월	(8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	○	○	○	○	○	○	○																												
구강 검진	-	-	-	○ (18~29)	○ (30~41)	○ (42~53)	○ (54~65)	-																												
학생 건강검진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건강+구강검진) - 초등학교 2·3·5·6학년생 매년 구강검진 실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 내용

구분	목표질환		
일반 건강검진	•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C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성·연령별 검사항목		실시시기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고밀도(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콜레스테롤		
	B형간염		40세
	C형간염		56세
	폐기능검사		56세, 66세(생애2회)
	골밀도검사		54, 60, 66세(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1회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조기정신증	20~34세 (2년마다)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암검진	• 위암 : 위내시경검사(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1단계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시, 2단계 대장내시경검사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사후 결과상담		
영유아 건강검진	성장·발달이상, 비만, 시각·청각이상, 모유수유, 영양결핍(과잉), 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대소변가리기, 개인위생, 사회성 발달, 취학전준비, 전자미디어노출, 치아발육상태, 치아우식증		
학생건강검진 (교육부)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평등가족부)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B형·C형간염), 성매개질환 등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통합건강증진사업

| 대상 지역 주민

| 내용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 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음주폐해예방(절주)
- 영양
- 구강보건
- 한의약 건강증진
- 여성어린이특화
- 방문 건강관리
- 신체활동
- 비만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 금연
- 모바일 헬스케어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 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031-920-2029)
 - 국가암지식정보센터(cancer.go.kr)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779만 3,686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서울 4인 기준 4억 8389만 8935원) 이하
- |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031-920-2029)
 - 국가암지식정보센터(cancer.go.kr)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 |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1개 질환)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101개 질환), 간병비(월 30만 원, 105개 질환) 지원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특수조제분유(만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 원 이내
 - 저단백죽석밥(만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 원 이내
 - 옥수수전분(9개 질환): 연간 168만 원 이내
 -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기준 미적용
 - ※ 간병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죽석밥, 옥수수전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환자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계비 지원 등 동일 성격의 생계급여 수혜 대상 제외)
- | 내용** 당해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원/월)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82만 556 | 134만 3,773 | 171만 4,892 | 207만 8,316 | 241만 8,150 | 273만 7,905 | 304만 4,848 |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만 6,943원 증가(8인 가구: 335만 1,791원)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8)

🔊 알려드립니다

입원명령이란?

→ 주소지 보건소에서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을 의료기관에 격리조치 후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우울증, 중독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 대상 지역 주민

| 내용

-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 정신응급상황 위기개입 및 상담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일반 정신건강 증진사업 제공

|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 자주 하는 질문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정신건강위기 상담,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평일 주간에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위기개입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 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 내용**
 -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 심층 사정평가 실시
 - 중독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중독 재활프로그램 및 가족지원사업 운영
- |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 | 대상**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 | 내용**
 - 알코올 중독문제 선별검사,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살예방센터 운영

- | 대상** 지역 주민
- | 내용**
 - 자살위험자 대상으로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과적 치료연계
 - 만성적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 의뢰 및 연계협력
 - 자살유족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 방법** 해당 지역 자살예방센터 문의 후 신청
- | 문의** 자살예방상담전화(☎109)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적 처치를 받은 자

| 내용

종류	근거	내용	선정 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상자 기준

- ❶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❷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❸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❹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❺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 통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❻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

| 내용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① 가 유형: 본인부담금 0%
 - ② 나 유형: 본인부담금 10%
 - ③ 다 유형: 본인부담금 30%
 - ④ 라 유형: 본인부담금 5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신청은 당해연도 1회만 가능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기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4만 450원 지급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건강 25시 앱을 통해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6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 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람
- | 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감경
- | 방법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 시 신청 필요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7

노령층 지원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

-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 ◆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 ◆ 치매가 걱정될 때
- ◆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 ◆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 ◆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습니다.

○ 기초연금제도

| 대상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내용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	월 최대 34만 9,700원	월 최대 55만 9,520원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 |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만 65세 미만 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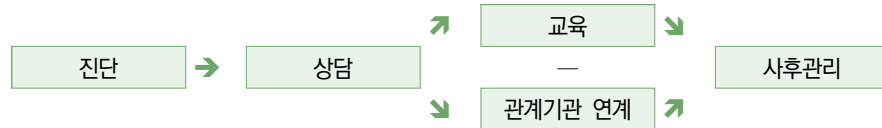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5년) 112만 원 → ('26년) 116만 원

○ 노후준비서비스

|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 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내용
진단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표준지표로 구성된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
상담	진단을 통해 파악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영역별 실천 과제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
교육	노후준비 전문 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주제별 맞춤형 강의
관계기관 연계	타 기관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
사후관리	상담 시 설정한 과제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희망 시 추가 상담 및 정보 제공

| 방법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및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csa.nps.or.kr)

🔊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나, 2022년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이 확대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CSA(노후준비상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제도

| 대상 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가입자

|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68천 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3천 원의 연금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6년 3월 1일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해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방법 수급자 본인이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 모바일앱 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은퇴금융 아카데미

- |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 |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상속, 증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상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강방법 : 유튜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은퇴금융] 채널
- 교육과정 : 노후준비 전략, 재무설계, 세금특강 등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 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의 취업을 지원해드립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대상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60세 이상 참여 허용

|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 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이상, 29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63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하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어르신들에게 여가·문화·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 | 대상 | 어르신
- | 내용 | 동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 지원
- |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이용
- | 문의 |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디지털배움터

- | 대상 | AI·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 | 내용 | A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기초 교육부터 생성형 AI 교육까지 AI·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 무료 제공
- | 방법 | A디지털배움터 누리집(digitalbaeumte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1800-0096) 신청
- | 문의 | •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A디지털배움터(☎1800-0096, digitalbaeumter.kr)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 | 대상 | 60세 이상 국민
- | 내용 | 취약 지역*에 거주 중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 예술 프로그램 제공 및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 취약지역 : 소멸위험지역(130개)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69개))
- | 방법 | 취약지역 내 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등
※ 매년 프로그램 개최 지역과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 | 문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사업팀(☎02-704-2467, 4338)



치매가 걱정될 때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 치매검진 지원

- | 대상**
-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내용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 대상**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 소득기준 등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필요

| 내용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급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 | **대상**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경제적 학대 또는 학대 위험이 있는 자 우선 지원)
- | **내용**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 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
- | **방법** 본인(후견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상담 신청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자주 하는 질문

1. 모든 재산을 맡기나요?

→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을 위탁. 위탁가능 재산은 현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중심

2.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어르신 재산이 공단 소유가 되어 공단이 임의로 처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로서 배분계획에 근거한 재산을 월별 배정, 지출내역에 대한 점검 등 재산관리에 국한되며, 실질적인 재산 집행은 계약에 의해 지정된 지원인이 하고, 사망 시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3.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시범사업에 이용하시면 이용료는 무료
* 다만,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닐 경우 이용료 부과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될 때

어르신들의 안질환 및 치아 치료, 예방접종 등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	구분	지원대상
	노인 안 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내용	구분	지원내용
	노인 안 검진	1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노인 틀니 지원

대상 • 완전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본인부담률〉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5%	15%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틀니, 깨끗하고 튼튼하게 사용하는 법

- ①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 치약은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② 뜨거운 물 소독도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 ③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 ④ 하루 8~12시간 착용이 적당합니다. 장시간 착용 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잠 잘 때는 꼭 빼주세요.
- ⑤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온 보관 시 틀니가 건조해서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세요.

◦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 알려드립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본인부담률〉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10%	20%

- |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 등,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 |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www.ok6595.or.kr

○ 65세 이상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 | 대상** 65세 이상 성인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 내용**
- | 구분 | 지원 백신 | 접종내용 |
|-------|------------------------|---|
| 폐렴구균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 1회 무료접종 |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3가 백신(IV) | 매년 1회 무료접종
※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10월경 시작 |
- | 방법**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하여 접종
※ 위탁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자주 하는 질문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특화지원,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안부확인 서비스	전화, 방문, AI·디지털 안부확인
		생활안전 서비스	생활안전점검·관리
		말벗 서비스	지지·격려·공감
	사회참여 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사회·재난대응, 보건·복지, 기타생활 정보제공
		사회참여 활동	사회관계, 평생교육, 여가문화, 기타사회참여 활동
	생활교육 지원	자조모임 활동	자조모임 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신체영역 활동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프로그램
	특화지원	정신영역 활동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퇴원환자 단기지원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
		가사활동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사례관리 서비스	개별상담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치료지원
연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일상회복 패키지)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생활지원연계, 주거지원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지원연계		

|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 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가능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 내용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덕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7 → 1)

🔊 알려드립니다

QR코드로 전국 지역센터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협력체계 구축사업	홍보사업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 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table><tr><th>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r><tr><td>소득</td><td colspan="3">360만 원 이하</td></tr><tr><td>재산</td><td>6,000만 원 이하</td><td>9,000만 원 이하</td><td>1억 3,500만 원 이하</td></tr><tr><td>경감률</td><td>30%</td><td>20%</td><td>10%</td></tr></table>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만 원 이하	9,000만 원 이하	1억 3,500만 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만 원 이하	9,000만 원 이하		1억 3,500만 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통신요금	기초연금 수급자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 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 (온라인/전화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로 신청, 전용 ARS (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신청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각종 공공요금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한전ON』 (스마트폰앱 또는 인터넷) 〈신청바로가기〉  또는 한국전력(☎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 ☎1577-8866)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8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 ◆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 ◆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 ◆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 ◆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 ◆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 ◆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 ◆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 장애인 등록신청

- |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 **방법**
 - 먼저 병원 진료를 통해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및 해당하는 경우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
 -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

①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②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③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④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⑤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⑦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 대상 등록 장애인

|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지원 대상 : ①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최종증 통합돌봄)
 ② 이동지원 분야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 읍면동 보장결정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아동수당

|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 원	월 11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9만 원	월 3만 원

|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 장애수당

- |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중전 1급, 2급, 3급 중복)

- |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월 6만 원	월 6만 원	월 3만 원

- |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 장애인연금

|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내용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로 소득이 감소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6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8세 ~ 64세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43만 9,700원 •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43만 9,700원 • 부가급여 43만 9,700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42만 9,700원 •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8만 원	8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차상위 초과	37만 9,700원 •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3만 원	5만 원 • 부가급여 5만 원

*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중지되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됨(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 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 |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 |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 |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63만 4,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
- | 내용**

대상	24~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8만 4951원, 지역 23만 3292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 내용**
- 힐링캠프: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 휴양·치유 프로그램 제공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 체험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 자율여행: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 여행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지원

- | 방법**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월 16만 원)을 12개월 동안 제공
 -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 |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 내용**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서비스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 식비: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 | 방법**
 - (평일 주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 (야간·주말·공휴일·당일접수)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 접수
- | 문의**
 -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 대상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 |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317,000원)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최대 월 317,000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 |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내용 어린이집의 기본·연장보육 외에 야간연장, 24시간, 휴일 등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5:30~07:30 포함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 |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인이 더욱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 |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 |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 |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 |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 |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 | 문의** 교육부(☎02-6222-6060)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 대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 내용**
- | 유형 | 지원내용 |
|------------|--|
| 일반교육지원인력 | 대학(원) 교내 생활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등 지원 |
| 전문교육지원인력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 교정사, 화면해설사 등 전문인력 활용 지원 |
| 원격 프로그램 운영 | 자막 제작, 화면해설 제작, 실시간 속기·문자통역 등 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이용 지원 |
| 보조기기 |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 ※ 대학(원)에서 교육지원인력원격 프로그램을 선발·운영하고 경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 |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 문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02-6915-7601)

○ 장애인 정보화교육

| 대상 등록 장애인

유형	지원내용
집합교육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용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방문교육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방법 시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시디지털배움터(디지털배움터.kr), 정보화상담실(☎1588-2670)
• 장애인정보화교육 메일(able@nia.or.kr)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 교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

| 내용 특수교육 교육과정, 멀티미디어북, 디지털·진로·인권교육, AI·디지털 교육자료 등 장애학생 교수·학습 자료 제공

|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 (시각장애 대체자료) 시각장애 교원과 학생을 위한 교과서, 지도서, 참고도서, EBS 방송교재 등 • (교육과정 자료)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등 • (수업 지원자료) 멀티미디어북, 교수·학습 영상 등 • (디지털 교육자료) AI·SW교육, 실감형 콘텐츠(AR, VR), 무인정보 단말기 등 • (진로·인권 자료) 인권 보호, 직무교육 진학지원, 장애공감 등 콘텐츠
열린배움터	aiclass.nise.go.kr	학생을 위한 AI 기반 국어, 수학 콘텐츠(앱) 관리 기능 및 수업 설계를 위한 부가 기능 제공 ※ 학습 리포트, 추천 학습, 퀴즈 제작, 쌍방향 온라인 수업 설계 등

|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디지털교육지원과(☎ 041-537-1485)



일자리가 필요할 때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대상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내용 • 일자리 유형별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215만 6,880원
	시간제			일 4시간 주 5일	107만 8,440원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57만 7,92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35만 1,92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35만 1,920원

- 근무기간: 1년 단위(1월1일~12월31일)로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계속 참여 가능
- ※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 등 수행기관의 면접 등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1~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직업상담·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 →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구분	주요내용	주요프로그램
직업지도	장애인에게 직업 상담 등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 개발을 통해 취업 지원	직업 상담 재활계획 수립
직업평가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 개발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신체능력평가 상황·현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적응력을 향상,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도모	개인/사회 적응훈련 직업준비/수행훈련 직무능력 향상/직업유지 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적응훈련 실시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 알선, 직업배치 제공 → 취업 후 직업 안정을 위해 작업환경에 필요한 자원 제공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 방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지역별 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 필요

|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내용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구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자 기준	-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 - 근로장애인 30명 이상 (중증장애인 60% 이상 유지)	-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중증장애인 80% 이상 유지)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 - 훈련장애인 20명 이상 (발달장애인 80% 이상 유지)
근로·임금 기준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노력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임금) 지급	훈련만 실시

| 방법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문의 •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 1.1% 우선구매 혜택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발굴 및 판로개척

※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해야 함

| 방법 사업주가 생산시설 지정 신청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심사 및 생산시설 지정 통보 → 생산시설별 생산품 납품 등 시설 운영

| 문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증장애인생산품 누리집 굚드레(<http://www.goods.go.kr>)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재가장애인,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려는 일반국민

|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생산시설의 판매활동과 유통대행, 생산품과 서비스·용역 관련 상담·관리, 홍보, 판로 개척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마케팅 지원
-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 방법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누리집,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문의 각 시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대상 만 18세 이상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 단,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를 판단

|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구직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 15만 원(1단계 필수) 지급
2단계 (구직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1단계 수료 장애인	장애인 직업훈련(전용반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기타 훈련과정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최대 24개월 지급 ※ 지원고용 참여 시 일 35,000원
		커리어플러스 프로그램 수료 (기본형, 심화형, 온라인 교육, AI모의면접,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별 수당 5만 원 ~ 10만 원
		[저소득층] 구직활동 계획 이행 시 [저소득층] 구직활동 중 조기취업 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60만 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 120만 원
3단계 (고용안정)	1단계 수료 또는 2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 원 지급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지급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 원 지급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구직역량 강화(2단계), 고용안정(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근로지원인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 내용 지원단가: 시간당 10,32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2,384원)

- 본인 자부담: 시간당 300원

| 방법 근로지원인(근로자) 신청 → 현장조사 및 평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지원인(근로자) 지원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 대상 등록 장애인

| 내용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방법 • 방문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 발급 시 위임장 제출)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ttps://hub.kead.or.kr/ve>)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

※ 민원인 제출 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형훈련센터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hub.kead.or.kr>)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 대상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 내용 지원 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
대하여 최대 1년간 지원
- |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의해 ‘중점
고용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장애인
- |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수당 1일 3만 5,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
-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 면접조사: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6개소), 디지털훈련센터(13개소), 발달장애인훈련센터(19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통학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 원 지급
식비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300시간(3개월), 600시간(6개월) 및 1,200시간(12개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부, 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 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월 최대 30만 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전환 취업하여 3개월 근무 시 최대 100만 원 전환성공수당 지원
-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 |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5~90만 원 지원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 원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무상지원

-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 내용**
 - (용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 비용에 대한 용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이차보전을 최대 5%, 사업주당 용자금 15억 원 한도)
 - 용자금 1억 원 당 장애인 1명을 5년간 고용(의무고용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
 - 용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 방법** 사업주가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심사, 결정 → 투자 확인 후 지급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용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IBK기업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은행대출금리에서 이차차액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하게 됩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장애인근로자 중 중증 15% 등*)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2천만 원 이내, 장애인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2년 간 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 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표준사업장 인원 요건과 동일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 | 내용**
 - 26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 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 생산,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 원 이내 추가 지원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각종 인증취득 및 컨설팅 소요 비용 등 총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000만 원)
- |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 대상**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 | 내용**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월 7만 원 한도)
- | 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결정 → 전용카드 발급(은행) 및 등록(공단) → 사용금액 정산 후 지급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보조공학기기 지원

- |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 장애인인 사업주*
-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고용 사업주로,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신규 고용 전제로 지원

- | 내용**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 한도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
 - 지원조건
 - 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증권 제출
 - 기기 구입일(맞춤형 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 ※ 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 1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구분		지원액
보조공학기기 제품 구입 및 대여가격 (맞춤형 기기 포함)	130만 원 이하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130만 원 초과	130만 원의 90%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 원) × 9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

- | 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 본인부담금 납부 → 지급보증보험 증권 가입 → 사후관리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내용 자립자금을 고정금리 2%의 저금리로 대출

※ '21년 1분기 이전 대출자까지는 최대 3.0% 금리 적용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 대출금이 2천만 원 이하 이면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⑥ 자기개발훈련비
-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①, ②의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대여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하며, 별도 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받은 융자금으로 대신 상환하는 방식 불가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 시·군·구에서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 대출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KB국민은행)의 내부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 상담 필요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 |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학원,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 내용** 입주기업의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지원, 맞춤형 직접지원, 정책정보제공 등 전국 16개 지역센터 운영
- 전국 16개 센터 내 123개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
 - * 입주비용: 보증금 10만 원/평, 입주부담금 관리비(1만 원/평/월) 및 전기료 사용실비
 -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사기, 팩스 등), 인터넷 제공
 -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기업 CEO 및 지역 유관기관 담당자)
 -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전용 주차장, 장애인화장실, 보행통로, 자동문 등)
- |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 |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71, www.debc.or.kr)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및 초기창업자(3년 미만)
- | 내용** 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최초 계약(2~3년) 후 연장 시 최대 5년간 지원
- | 방법**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 희망점포 감정평가 → 점포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지원
- |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자주 하는 질문

창업점포지원 신청 제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 장애인 창업육성

|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등

| 내용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온라인	창업기초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 자세 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재기교육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협동조합교육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이해와 운영 지원
	시각장애인 창업교육	시각장애인 창업절차 및 성공사례 등 맞춤형 교육 지원
오프라인	업종특화교육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창업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비 등 비용 지원
보육실입주지원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 방법 창업넷(<https://start.debc.or.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 신청 → 교육 수강 → 수료증 발급 → 창업지원 사업 신청(사업화, 점포 등)

|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www.debc.or.kr

자주 하는 질문

온라인 창업교육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창업넷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 세부 과목(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교육, 협동조합교육 등) 중 수강하려는 교육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수당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지자체)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 ① 시각장애 : 영상확대시스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 ②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 ③ 청각·언어 장애 : 영상 전화기, 대화용 장치, 음성증폭기 등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324만 7,369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2024.2월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 월액이 3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기기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건강보험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해당품목*),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활동형, 킬링형, 리클라이닝형, 유모차형), 몸통지지보행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수동·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 |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청

🔊 알려드립니다

◦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 | 내용** 검사 실비 지원(최대 10만 원)
- |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 내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전액 지급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내용 46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지원내용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촉각시계,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심장 장애인	육상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청각 장애인	신호장치, 진동시계, 소리증폭기,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롤레이터(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도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목욕의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유도차형 이동보조기기,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수동조작용 팔 지지대(책상 고정형), 전동칫솔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 경보시스템(낙상알리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 장애인	대체입력장치(스위치)
지체·뇌병변·지적·자폐 장애인	기억 지원 보조기기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 |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
- |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언어발달 지원

- |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8만 4951원, 지역 23만 3292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 | 내용
 - 매월 18~24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 |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43만 2,308원, 지역 40만 4,529원)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20세 미만까지 가능
- | 내용**
 - 매월 18~26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시설센터,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발달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 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중 선택 이용
- |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 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9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 내용**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의료기관 연계 등) 제공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지원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17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9개소) 예정
- |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7개소

[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	[서울남부] 서울보라매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경기북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남부] 분당서울대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전남] 순천의료원	[광주] 전남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충남] 홍성의료원	[부산] 동아대병원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

- |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전국 30개소) 방문하여 검진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울] 서울의료원(☎02-2276-7000)
 - [서울] 국립재활원(☎02-901-1400)
 - [서울] 서울직접자병원(☎02-2002-8000)
 - [부산] 부산의료원(☎051-507-3000)
 - [부산] 부산성모병원(☎051-933-7651)
 - [부산] 연제일신병원(☎051-978-2066)
 - [부산] 좋은삼선병원(☎051-310-9333, 9587)
 - [대구] 대구의료원(☎053-560-7397)
 - [인천] 인천의료원(☎032-580-6037~6038)
 - [대전] 대청병원(☎1899-6075/내선 2번)
 -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031-888-0777)
 - [경기] 성남시의료원(☎031-738-7007)
 - [충북] 청주의료원(☎043-279-2690)
 - [충북] 충주의료원(☎043-871-0114)
 - [충남] 천안의료원(☎041-570-7114)
 - [충남] 서산의료원(☎041-689-7166)
 - [전북] 남원의료원(☎063-620-1160)
 - [전남] 순천의료원(☎061-759-9131)
 - [전남] 목포시의료원(☎061-260-6500)
 - [전남] 강진의료원(☎061-430-1194)
 - [전남] 장흥통합의료원(☎061-860-7777)
 - [경북] 안동의료원(☎054-850-6277~8)
 -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00)
 - [경남] 마산의료원(☎055-249-1234~6)
 -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570)
 - [경남] 조은금강병원(☎055-330-0222, 0223)
 - [경남] 밀양병원(☎055-351-3993)
 - [강원] 원주의료원(☎033-760-4550)
 - [제주] 제주중앙병원(☎064-786-7282)
 - [제주] 서귀포의료원(☎064-730-3020)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거주 비장애인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

|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재활 관련 교육 등

|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장애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급여증,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무료 진료 추천서를 제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 대상 등록장애인

| 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척수장애인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	중도실명 시각 장애인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시각장애인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
장애인 보조견 지원	시각 및 청각, 지체 장애인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보급

|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799-1000,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500,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연합회(☎031-691-7782, 보조견)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최소 104만 원 ~ 최대 829만 3,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한시적 지원

- 출산(138만 5,000원), 자립준비(34만 9,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34만 9,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 문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 대상**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 | 내용**
 - 월 132/176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대상** 6세 이상 ~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 | 내용**
 - 월 66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 **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중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가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 **내용**
 -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4시간 개별 1:1 지원) 낮활동지원 및 야간 주거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 (주간 개별 1:1 지원)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개입을 통한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통한 그룹형 1:1 낮 활동 서비스 제공
- | **방법**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 |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 |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 |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 | 문의** LH마이홈(☎1600-1004)

○ 장애인 주택 개조

-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 대상**
 - 우선입소대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제공기관: (성인) 120점 이상, (아동) 11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 |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 | 방법** 읍면동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20만 원, 2인 40만 원, 3인 이상 60만 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무료 법률구조 제도

- |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811만 8,423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 | 내용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 | 대상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자
- | 내용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맞춤형 TV 보급(선정 후 보급)
- |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
 - 시각 청각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 |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알려드립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란?

→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영상, 자막크기확대, 음성의 높낮이, 음성안내 기능 등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으로 하는 경우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 |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 | 문의** 산업통상부 콜센터(☎1577-0900)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대상 교육대상: 아래 4가지 분류별(①~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③ 면허 종류(필수)

-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 면허 소지자
-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 ② 운전면허 조건: F
-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알려드립니다

면허조건이란?

- ➔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 내용 • 교육목적

운전보조기기 사용이나 수어로 된 교육이 필요하여 민간 운전학원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을 제공

• 교육과정별 운영방법

- ① 면허취득과정: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찾아가 교육 제공
- ② 도로연수교육: 교육생의 거주지 등 희망 장소로 찾아가 교육 제공
- ③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교육 진행

| 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6)

자주 하는 질문

배울 수 있는 운전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나요?

-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증 취득교육, 있는 경우 도로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량으로 운전 및 자동차 보조기기 체험이 가능한가요?

- 장애 상태에서의 안전 운전 가능 여부와 자동차 보조기기 사용을 체험하고 싶다면, 국립재활원에 전화 상담 및 예약 후 내원하여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교육 시간, 비용,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은 평일 기준 과정당 8시간, 4일 이내 진행됩니다.
- 비용은 면허취득 수수료를 제외하고 무료입니다.
- 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인근 도로에서 진행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 면허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제1종 보통(수동·자동), 제2종 보통(자동) 면허 교육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및 자동차 보조기기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 교육지원-장애인 운전교육
- 유튜브 : 국립재활원 - [장애인 운전] DoDoDo it Drive
- 네이버블로그 : 국립재활원(하이재활) - 장애인운전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장애인정범위확대
 - 기존 : 지체, 뇌병변, 청각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인정)
 - 변경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경우 즉, 장애인등록증 대신 의사소견서도 인정
- 면허조건확대
 - 기존 : E, F, G, H, I
 - 변경 : A(저신장, 왜소증), D(청각), E, F, G, H, I 즉, A, D 조건추가로대상범위확대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 대상**
- 일반건강관리 : 모든 장애인
 - 주장애·통합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
- | 내용**
-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함
- | 방법**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특성별기관찾기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지역 등 선택 → 검색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비스 확대

- 방문재활 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됩니다(2026.7.1.).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 |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 |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 |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 | 방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것이 확인될 것
 - ※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의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확인 가능
- | 내용** 장애인에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에 한하여 감면하고,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 | 방법**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문의 후 신청
- | 문의** 행정안전부(☎044-205-3859, 3862)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 대상** 등록 장애인*
 -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 방법**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대상** 등록장애인
- | 내용**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 |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주변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 | 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 지원
- | 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 | 방법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복지관

- | 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 | 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 |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체육시설

- | 대상 등록장애인 등
- |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 |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 대상 등록장애인
- |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 |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 | 문의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수어통역센터

- |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 | 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 | 방법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 | 문의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 | 대상 예비 장애예술인(단체), 장애예술인(단체), 비장애예술인(단체)
- | 내용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 사업유형: 장애예술 창·제작 활동, 교류활동, 향유활동, 유통 및 확산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or.kr)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kdac.or.kr)에서 상세 자료 확인 가능
- |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지원신청 접수
- | 문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02-760-9725, 9713, 9753)

💬 자주 하는 질문

어떤 시스템을 어느 시점에 써야 하나요?

➔ 지원신청 및 결과발표 확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가능하며, 교부 및 정산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단체를 위한 충분한 안내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예비 장애예술단체는 어떤 유형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과 장애예술 첫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A단체의 대표입니다. A단체로 지원신청 할 경우 대표인 저는 개인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 지원신청 주체가 단체와 개인으로 다르기 때문에 모두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신청하는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면 불가능합니다.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를 감면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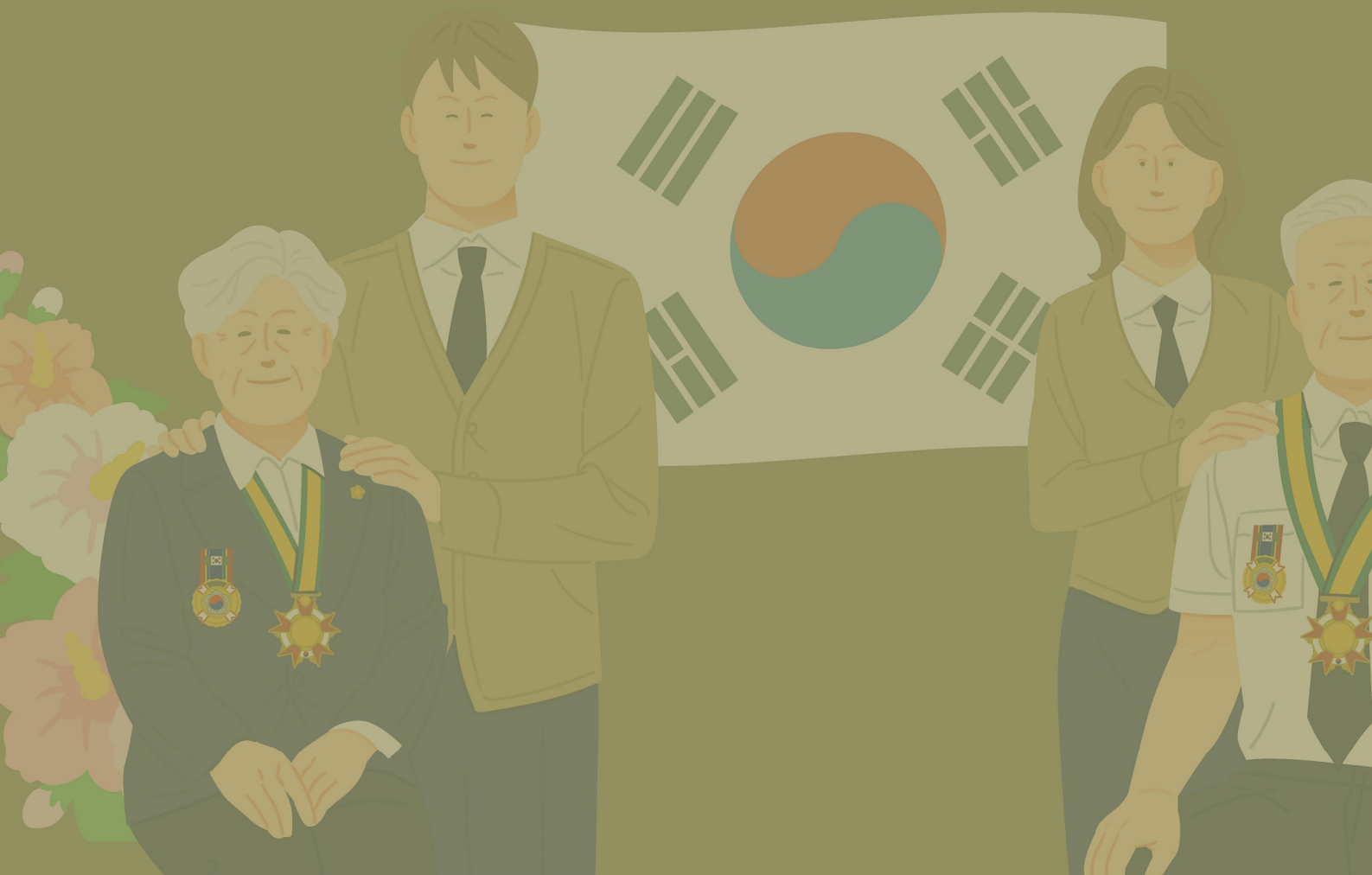
◦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 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① 지문인증방식: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② 통합복지카드방식: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전ON』 (스마트폰앱 또는 인터넷)  〈신청바로가기〉 또는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9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

-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보훈급여금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45만 2,000원~792만 4,000원의 보상금 지급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000원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만 7,000원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324만 7,369원) 이하인 경우
- |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24만 2,000원~31만 1,000원
 - 4인 이상 가족: 30만 원~37만 원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무공영예수당

- | 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 |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 구분 | 태극 | 을지 | 충무 | 화랑 | 인헌 |
|----|-------|------------|-------|------------|-------|
| 금액 | 57만 원 | 56만 5,000원 | 56만 원 | 55만 5,000원 | 55만 원 |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 |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454만 6,317원)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
- |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만 5,000원~47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 대상 생존애국지사

|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1~3등급	4등급	5등급	
월 지급금액	465만 원	348만 원	345만 원	315만 원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영주귀국정착금

|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유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1억 5,3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1억 5,300만 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8,900만 원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1억 2,800만 원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1억 5,300만 원

| 방법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재해보상금

| 대상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 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재해위로금

|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실종	500만 원
	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 원
주택 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25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30만 원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참전명예수당

| 대상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내용 매월 49만 원의 수당 지급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6·25자녀수당

|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내용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가능

구분	대상	금액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29만 6,000원	95만 4,000원	62만 6,000원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고엽제환자 2세 수당

|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230만 8,000원	179만 2,000원	144만 원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2012.7.1.이전 등록		2012.7.1.이후 등록	
1급	2급	상시 간호수당	수시 간호수당
312만 3,000원 ~ 337만 5,000원	107만 9,000원	337만 5,000원	225만 원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4·19혁명공로수당

| 대상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내용 매월 50만 1,000원의 수당 지급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생계지원금

| 대상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324만 7,369원) 이하인 경우

| 내용 매월 15만 원의 지원금 지급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6년 3월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가 어려울 경우 생계지원금 지급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드립니다.

◦ 재가복지지원

- |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 내용**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 기본(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요양지원

- |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 내용**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대상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기능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양로지원

|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내용 • 보훈원 입소 후 사망 또는 퇴소 시까지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양육지원

-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 |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보훈병원 진료

- |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감면진료	•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 | 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 |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인, 6·25자녀수당을 받는 선순위자녀,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부상) 군경의 배우자
※ '23.10.1. 참전, 무공, 재의 7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감면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비급여 제외) •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 약제비 지원 - 참전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1인당 연간 25만 2,000원 한도) - 무공수훈자(1인당 연간 16만 원 한도) ※ 유족은 약국 약제비 미지원

- |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 |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종류	지원내용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보호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 |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보호가족
- | 내용** 우울, 불면 등 심리적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 | 방법** 전국 6개 마음치유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 문의**
 - 중앙보호병원 보호가족 마음치유센터 02-2225-2551~5
 - 부산보호병원 보호가족 마음치유센터 051-601-6762~3
 - 대전보호병원 보호가족 마음치유센터 042-605-0732~3
 - 대구보호병원 보호가족 마음치유센터 053-630-7127~8
 - 광주보호병원 보호가족 마음치유센터 062-602-6615~6
 - 인천보호병원 보호가족 마음치유센터 032-363-9893~4

◦ 국가보호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 |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15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할인 지원 단가 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0시부터 2024.10.31.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 중)
- | 방법** 전국 보호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 | 문의** 보호(지)청 및 보호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호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호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 | 내용** 보철용 차량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충전비 지원: 복지카드로 보철용 친환경차량에 전기 또는 수소 충전 시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매보조금 지원: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2022.1.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100만 원 정액 지원(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 방법**
 - 충전비 지원: 전국 보호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 구매보조금 지원: 관할 보호관서에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 문의** 보호(지)청 및 보호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호부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참조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전국 시내(군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대상 구분 및 상이등급이 기재된 신분확인증 필요)
-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통신요금감면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 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가구 당 1회선)	

◦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 |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2.0~3.5%의 저금리 대출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6,000만 원, (상환기간) 3~20년
- |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 |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 |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 | 내용**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2.5%~4.0% 저금리로 300만~6,000만 원까지 대출(3~20년 상환)
- |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 |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2.7.1.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6.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애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11.30.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취업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부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50만 원, 유가족 75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8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 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2.7.1.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6.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애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11.30.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 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3회 취업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국가유공자 등 포함)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국가유공자 등 포함)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 |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 |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81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8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 |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www.vnet.go.kr)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 |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 |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 |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 |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중·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 | 방법**
 - 중·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 단,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 |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 | 구분 | 학습보조비 |
|------|-------------------------|
| 중학교 | 12만 4,000원 |
| 고등학교 | 14만 4,000원 ~ 18만 6,000원 |
| 대학교 | 23만 6,000원 |
| 특수학교 | 53만 4,000원 ~ 71만 8,000원 |
- |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 |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 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생활수준)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 | 내용**
-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 | 방법**
-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 | 대상**
- 대학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중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대학 장학: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
- | 내용**
- 대학원 및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 | 구분 | 보훈장학금 |
|------|--------------------|
| 대학원 | 학기별 최고 130만 원까지 지급 |
| 특수학교 | 학기별 30만 원 지급 |
| 대학 | 학기별 최고 90만 원까지 지급 |
- |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1학기 2026년 4월 1일~ 4월 30일, 2학기 2026년 9월 1일~ 9월 30일
 - 접수처: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0

법률·금융 복지 지원

법률·금융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

- ◆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업운영자금 지원)
- ◆ 금융 관련 지식이 필요할 때(컨설팅, 교육)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가족, 이웃, 직장 등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법률적으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무료 법률상담

- | 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 | 내용
 - 방문상담 : 전국 134곳 공단 사무소(지부, 출장소, 지소), 10~17시
 - 화상상담 : PC,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 채팅상담 : 132전화, 홈페이지 챗봇을 통한 실시간 채팅 상담
- | 방법 예약 후 상담
 - * 예약방법 : 누리집, 유선(☎132), 공단 홈페이지, 공단 사무실 방문
-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http://www.klac.or.kr>)

○ 마을변호사

- | 대상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무변촌 등 지방 소도시 읍면동 거주 주민 누구나
- | 내용 해당 읍면동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
-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마을변호사 담당 공무원을 통해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 → 마을변호사 → 자료실)에서 담당 마을변호사를 확인한 후 전화·이메일 등으로 상담 신청
 - ※ 마을변호사가 현장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에게 문의
-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대한변호사협회(☎02-2087-7851)
 - 법무부(☎02-2110-3500)

○ 법문화교육센터

- | 대상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 | 내용
 - 사회통합 과정: 국적취득,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 이해
 - 결혼생활 과정: 결혼법, 상속법
 - 경제생활 과정: 근로 및 소비, 주택임대차보호법, 파산·개인회생
 - 준법생활 과정: 기초질서, 교통질서, 생활법률
 - ※ 청소년: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 민주시민(아동의 권리 등)
- | 방법 법문화교육센터 누리집(<https://edu.klac.or.kr>)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
-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054-432-6812, <https://edu.klac.or.kr>)

○ 법률홈닥터

- |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 | 내용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
- | 방법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 | 문의
 - 상담 문의: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참고
 - 제도 운영: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

○ 마을세무사

- | 대상 주민 누구나(생활이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
- | 내용 마을세무사가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의 세무 서비스 제공
- | 방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서 해당지역(시군구 또는 읍면동)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신청
-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법률구조 제도

- |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811만 8,423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974만 2,107원) 이하 농·어업인
- | 내용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 |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국민	유료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무료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종전 1~3급)		
	범죄피해자(신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양육,인지)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재산)		
	소액임차인		
	가족관계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피해자		
	경찰·소방공무원		
	국내거주 외국인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세사기피해자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예술인		
	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전시납북자가족		
	영세담배소매인		
	저소득재해근로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료사고피해자		
	가상자산피해자		
	차상위계층		
	집단피해자 등 공익소송		
	플랫폼종사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채무상속위기 아동청소년(24세 이하)		
	HD현대희망재단의 지원을 받는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150%이하	농업인·어업인	무료	(무료-실비부담가능)
	소상공인		
소득기준 예외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장애인학대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 |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811만 8,423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 내용**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 방법** 개인회생·파산센터로 예약
* 예약방법 : 누리집, 유선(☎132), 공단 홈페이지, 공단 사무실 방문
-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https://resu.klac.or.kr>)
 - 서울(☎02-3482-1708), 부산(☎051-505-1648), 대구(☎053-743-1321), 광주(☎062-224-7806), 대전(☎042-472-9061), 울산(☎052-257-4676), 수원(☎031-213-0773), 인천(☎032-874-3374), 의정부(☎031-928-1320), 창원(☎055-715-1320)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 대상**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
- | 내용** 임대차에 관련한 분쟁* 조정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종료, 임대차 건물 유지 및 수선 의무 등
- |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hldcc.or.kr)에 방문(예약) 상담 후 조정신청 또는 온라인 조정신청
- | 문의** 임대차분쟁조정위는 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에도 존재하므로 이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 필요

○ 대지급금 제도

| 대상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사업명		지원요건	
도산 대지급금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	퇴직 기준일(파산, 화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간이 대지급금	사업주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근로자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도산 대지급금	지원 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항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교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간이 대지급금	지원 범위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퇴직자	총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 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www.comwel.or.kr)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알선

- | 대상** 소득, 신용 등에 맞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알아보고자 하는 서민
- | 내용** 정책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사잇돌, 햇살론 등) 및 민간 금융회사의 중·저금리 상품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안내
- | 방법** 서민금융 잇다 앱·홈페이지(loan.kinfa.or.kr) 및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한 유선상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
-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 알려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알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①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금융기관 자체 신용대출, 사잇돌, 햇살론 등 민간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 ②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대출상담이 가능합니다.
- ③ '서민금융 잇다'를 이용하면 금융상품뿐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고용·복지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잇다 웹〉



〈서민금융잇다 앱〉

○ 미소금융

|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 내용 자영업자: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저금리로 대출 지원

운영·시설개선자금	창업임차보증금	무등록사업자
2,000만 원 이내	7,000만 원 이내	500만 원 이내

※ 자영업자 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생계자금 대출 가능

|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하여 미소금융 상담예약 신청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 대상

-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 내용 연 4.0%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대출과목	대출한도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식
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최대 1,500만 원	연 4% 이내	최장 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학자금	최대 1,000만 원	연 2% (고정)		

|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단, 개인회생인가자는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해 신청(단, 개인회생인가자는 지부방문)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피해자 대출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내용 연 최고 3.0% 저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대출과목	대출한도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식
생활안정자금	5백만 원 이내	최고 3%	5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학자금				

|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소외자 대출

|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 내용 연 4.0%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대출과목	대출한도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식
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최대 1,500만 원	연 4% 이내	최장 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학자금	최대 1,000만 원	연 2% (고정)		

|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해 신청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 |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완제한 분
- | 내용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납입 회차별로 발급 가능 카드 종류 상이)
- | 방법
 - 국민카드: 고객센터(1670-4220) 및 국민은행 영업점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 신한카드: 인터넷뱅킹
 - 농협은행: NH농협은행 영업점(단위농협 영업점 발급 불가)
 - 하나카드: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해 하나카드 발급신청
-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및 각 카드사 고객센터

◦ 새희망홀씨

- | 대상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람
- | 내용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대출(연 금리 10.5% 이내, 최대 3,500만 원까지)
- | 방법 각 은행 지점
-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 햇살론유스

- | 대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미취업자) 또는 사회 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후 1년 이내)
- | 내용
 - 대출한도: 1인당 총 1,200만 원 이내
 - 일반생활자금 1회 300만 원, 연간 600만 원 한도
 - 특정용도자금 1회 및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 금리: 연 4.0%* (보증료 0.1~1.0% 별도)
 - * 사회적배려대상자는 3.5%이며 1.6%p 이자 지원
 - 취급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제주은행
- |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신청
-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햇살론 일반보증

- | 대상**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인 자
- | 내용** 신용평점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대출한도 : 1,50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1년 단위 선택 가능)
 - 적용금리 : 연 12.5% 이내
(대출금리) 연 10% 이내
(보증요율) 연 2.5%*
- * 사회적배려대상자 0.5%p 인하, 복지멤버십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금융교육 이수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중복적용 불가)
- | 방법** 협약 금융회사* 창구 또는 앱 신청
-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롯데), 보험사(삼성생명)
- ※ 협약 금융회사는 변경될 수 있음
-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햇살론 특례보증

- | 대상**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 내용**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햇살론 일반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운 차주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대출한도 : 1,00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1년 선택)
 - 적용금리 : 연 12.5%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 ※ 복지멤버십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금융교육 이수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중복적용 불가)
- ※ (성실상환 시 보증요율 인하) 성실상환 시 최대 3%p 보증요율 인하(기본 12.5% → 최종금리 9.5%, 사회적배려자 9.9% → 최종 7.0%)
- | 방법** (위탁) 협약 금융회사* 창구 또는 앱 신청
-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 (직접) 서민금융진흥원 창구 또는 앱 신청
- ※ 협약 금융회사는 변경될 수 있음
-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햇살론 카드

- |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중 개인신용카드를 미 보유 중이며, 연 가처분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자
 - ※ 개인회생/채무조정/새출발기금 6개월(6회) 이상 성실상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의 경우 성실상환 확인을 위해 예약 후 센터 방문 필요)
 - ※ 햇살론 카드 필수교육(3과목) 이수 필요
- | 내용**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
 - 보증한도: 월 최저 50만 원 ~ 최대 300만 원 한도(최초 200만 원 內, 1년 이상 성실 이용 시 최대 300만 원 內까지 증액 가능)
 - ※ 보증한도에서 20만 원 차감하여 부여
- | 방법**
 - 보증신청방법
 - (원칙)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한 신청
 - (예외)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
 - ※ 예외사항: 성실상환자 및 개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 카드발급: 보증서 발급 후 7개의 전업 카드사*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
 - * 롯데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 ※ 유선신청 및 대면신청 가능 카드사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을 통해 확인
-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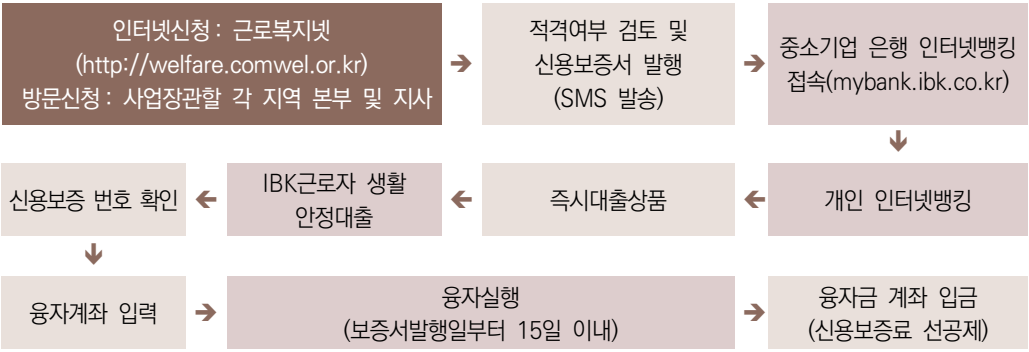
※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드립니다.

| 대상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

구분	내용
재직근로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휴업수·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 수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노임 단가 5일분(2026년 855,135원) 이상 체불되었을 것
퇴직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 내용**
- 융자금액 : 1인당 1천만 원 한도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 원 한도 내
 - 융자상환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융자금리 : 연 1.5%
 - 신용보증 :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1% 선공제)
※ 보증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 등

| 방법 • 융자(신청)절차



| 문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1588-0075)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의 체불청산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의 신청으로 융자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 대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기업이나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구분	내용
재직근로자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근로자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내용

- 융자금액: 사업장 당 1억 5천만 원(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 원 한도)
-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융자금리: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 3.7%, 담보제공 시 연 2.2%

방법	구분		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	융자요건 확인	체불사유, 체불액, 신용등급 등 융자요건 확인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정자 결정	융자금액, 융자요건 확인 후 융자 예정자 결정 통보
	융자대행금융기관	융자실행	융자약정 체결, 융자금 실행(근로자 계좌로 입금)

| 문의

- 고용노동부(☎135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1588-0075)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 | 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전년도 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특별재난지역·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종료아동은 소득요건 없음,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 내일참여과정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적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중위소득 120% 적용)
- | 내용**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부
- * 특별재난지역은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근로복지공단)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근로복지공단)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넷) 접수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의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대요건 강화(기존)100%이하 → (변경)120%이하)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대상

구분	대상 및 조건
① 의료비 ② 혼례비 ③ 장례비 ④ 노부모부양비 ⑤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2 이하(‘26년 268만 원) ※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용자 대상 ⑥ 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2 이하(‘26년 268만 원) * 소득이 감소하여 용자신청 대상이 되는 용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용자 대상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내용

구분	한도	지원내용
①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실제 비용 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②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③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④ 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 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⑤ 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500만 원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⑥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 원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휴직, 소속·노무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용자 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현행	우대 내용
소득요건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2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1/2 이하
용자한도	총 한도 2,000만 원	총 한도 3,000만 원
거치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용자 적격 심사·결정 → 용자예정자 선정 → 신용보증 적격 심사·결정 → 보증서발생 → 용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 문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1588-0075)

»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의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 대상

구분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1.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2. 융자신청일 기준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3.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26년 5,359,036원)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융자 종류	① 노부모부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② 장례비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③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④ 자녀양육비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융자 한도	① 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 원
	②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③ 혼례비 최대 2,000만 원
	④ 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1,000만 원
융자 금리	개인 신용대출금리에서 3%p 이내 보전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추천서 신청 → 공단 융자 대상 심사 및 추천 결정 → 융자신청(기업은행) → 금융기관 소득 및 신용 판단 → 융자 대상 결정 → 융자 실행

| 문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1588-0075)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사업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소상공인 지원(융자)

- |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 | 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
(5년 이내, 2년 거치)
*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 한도, 기간은 대출상품별 상이
- | 방법**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 접수 → 대출심사(소진공) → 대출실행(소진공)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 접수 → (필요시)보증서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 담보 등을 통한 대출심사 및 실행(은행)
※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금융 관련 지식이 필요할 때 (컨설팅, 교육)

서민·취약계층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합리적 소비, 올바른 신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 | 대상**
- 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 ②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금원 및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창업예정자

| 내용 (방문 컨설팅) 지역별·업종별 전문 컨설턴트가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 전수

지원분야	홍보마케팅, 사업성분석, 온라인스토어, 비대면 컨설팅* 등 * (비대면 컨설팅) 세무·노무·법무 이슈를 적시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무사·노무사·변호사와 유선상담 진행 중 * 세무 : 자영업자 세무문제 자문(부가세/세액 공제/감면신청 등 관련) * 노무 : 자영업자 노무문제 자문(근로계약서 작성/채용/해고 임금 등 관련) * 법무 : 자영업자 법률 자문(상가임대차/미수채권 등 관련)
지원업종	전 분야 (단, 음식점, 카페/베이커리, 이·미용, 교육서비스, 의류도소매는 업종종사 경험이 있는 전문 컨설턴트의 토탈케어 실시)
수행방법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단, 상권분석 등을 실시하고 맞춤형 사업 솔루션을 브리핑
비용	신청자 부담 없음

- | 방법**
-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전국 170여 개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
 -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를 통해 신청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미소금융,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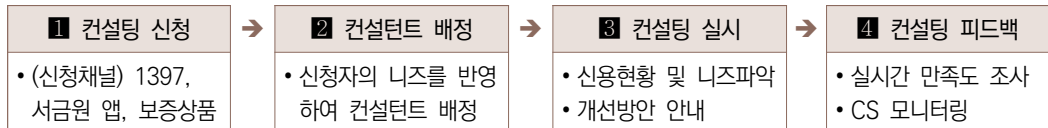
| 내용

- (개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 개선 및 금융 부담 완화 솔루션 제공

※ 당초,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제공되었으나 '25년부터 유관기관 이용자로 확대 예정

- (지원내용) ① 신용정보 제공, ② 신용부채 점검 및 개선방안 안내, ③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지원절차) 금융권 경력을 가진 전문 컨설턴트(25년 기준 60명)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6개월간 유선으로 상담 지원



- (제공내용)

1회차 (신용컨설팅)	2~3회차 (부채점검 및 소비저축)	4~6회차 (장기관리 방법 안내)
• 신용평가 제도 소개 • 신용평점 및 부채현황 안내 • 고객현황 및 니즈 파악 • 신용점수 상승 팁 안내	• 부채현황 점검 • 채무구조 개선방법 안내 • 소비습관 점검 • 저축 방향성 안내	• 재무상황별 개선방안 제시* • 맞춤형 신용·부채관리 안내 • 금융교육, 취업 등 정보제공 • 이행결과 최종점검 및 제언

* 신용점수 상승·하락 요인, 맞춤형 신용·부채 개선방안, 제안내용 이행 점검 및 금융이슈 상담

| 방법

-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전국 170여 개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
- (모바일)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잇다'를 통해 신청
-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를 통해 신청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 대상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금융 취약계층 등

 내용	교육주제	교육내용	교육방식
	재무설계	재무설계 필요성, 재무설계 방법, 연령대별 재무설계 등	방문·온택트·온라인 교육
	부채관리	대출상품 선택방법, 부채 수준 판단 등	
	신용관리	신용관리의 필요성 및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예방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예방 ※ (체험형 교육)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예방 게임북(노다지)	
	서민금융제도 이해	서민금융제도 및 채무자 지원제도	
	생활·복지	주택 및 일자리 지원제도, 생활위기와 생계유지 문제 지원제도	
	창업금융	창업지원 금융서비스 지원제도 등	
	디지털 금융교육	고령층 대상 키오스크, 은행업무,페이결제 등	

| 방법 교육수요기관이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원하는 주제로 교육신청 후 수강

- 온라인교육: 금융교육포털에 접속 후, 무료 수강(PC,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
- 방문교육: 강사가 방문하여 교육 실시
 - * 단, 교육 대상 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 가능
- 온택트교육: 강사가 화상강의시스템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금융 교육
 - 공개교육: 정해진 교육일정, 주제로 교육 신청
 - 기관교육: 희망하는 일정, 주제를 자유롭게 신청
 - * 단, 교육 대상 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 가능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 대상 청소년 및 대학생,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이용자 등

| 내용 신용관리부터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까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용교육을 무료로 제공

- 온라인교육 : 신용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교육 수강
※ 고용복지+센터, 자활센터, 청소년, 법원(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등 기관 연계형 의무 교육과정 운영 중
- 방문교육 :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신용교육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교육(전국)

대상	주제	기타교구
초·중학생	• 올바른 용돈 관리 방법 • 일생이 행복한 돈 관리의 첫 단추 • 신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신용기사단 용돈관리왕
고등학생	• 예비 사회인 신용·금융 교육	
대학생	• 내 학자금은 내 스스로! • 사회초년생 신용 관리·금융 이용법	
일반인	• 합리적 소비와 저축 • 부채관리 방법과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 채무조정제도 • 금융사기 피해 예방 •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방법	
상담실무자	• 채무 상담 사례 및 방법 •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지원 제도	
군장병	• 군인이 알아야 할 신용 관리·금융 이용 요령	

| 방법 • 온라인교육 : 신용교육원 홈페이지(educredit.or.kr)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수강

• 방문교육 : 신용교육원 홈페이지(educredit.or.kr) → 찾아가는 교육 신청 → 신청결과 확인 → 교육 실시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6600)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연체 여부 무관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 내용

- (대출한도) 최대 100만 원 이내
※ 기존 금융권 연체자의 경우 최초 50만 원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대출 50만 원 가능(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용도 증빙 시 최초대출 100만 원 가능)
- (상환방식)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납입이자) 기본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완제자(최소 6개월 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 처리된 경우 재대출 지원 제한
- (완제자 인센티브)
- 6개월 이상 이용 후 정상 완제 시 연 4.5%로 재대출 신청 가능(6개월 미만 이용 시, 일반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 만기 경과 전 완제 시 상환격려금(이자페이백) 지급*
* 납입 이자의 50%를 페이백하여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5~6.3%로 완화(단, 금리 4.5% 적용 계좌는 지원 제외)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 처리된 경우 인센티브 지원 제한

|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 직접 방문 상담
- 방문 전 서민금융진흥원 앱/예약 웹(sloan.kinfa.or.kr) 또는 1397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예약* 필수
* ① 앱/웹 또는 1397 → ② 상담정보 및 예약일 등록 → ③ 접수완료 문자(알림톡) → ④ 센터방문 상담 → ⑤ 승인 및 대출
- 추가·재대출의 경우 서민금융 잇다 앱(APP)으로 신청 가능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론

| 대상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자로서

-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 ③ 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이행자로서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분

| 내용 연 4.0%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대출과목	대출한도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식
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최대 1,500만 원	연 4% 이내	최장 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학자금	최대 1,000만 원	연 2% (고정)		

|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
(단, 개인회생인가자, 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자는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해 신청
(단, 개인회생인가자, 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자는 지부방문)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

기타 위기별. 상황별 지원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이신가요?

.....

-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위기가족 지원)
-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한부모가족 지원)
-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다문화가족 지원)
-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 ◆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회보험료 지원)
- ◆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 ◆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 ◆ 북한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 ◆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 ◆ 1인 가구 지원이 필요할 때
- ◆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가족 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생활을 지원합니다.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 대상 돌봄 등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 내용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과 제공인력 자격요건 등이 유사한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돌봄서비스 제공

| 방법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 상담 및 신청

| 문의

지역	센터명	제공서비스	연락처
대구	남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053-472-1236
	북구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053-324-2235
인천	부평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일상돌봄, 긴급돌봄, 취약지지원사업, 통합돌봄사업(공감돌봄, 이동지원)	032-721-7193
	강화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사간병, 일상돌봄, 긴급돌봄, 취약지지원사업, 공감돌봄 시범사업, 장봐주기 서비스	032-721-7180
	미추홀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일상돌봄, 긴급돌봄, 취약지지원사업	032-715-4974
광주	광주광역시 안심돌봄센터	일상돌봄, 긴급돌봄, 광주다움통합돌봄(일시재가, 동행지원, 안전지원), 비대면(IoT) 돌봄(안심+스마트지킴이, 스마트플러그), 지자체 시범사업(노인의료돌봄, 재가의료급여), 특화사업(안심돌봄서비스, 공공형 안심서비스)	062-716-2400
대전	광역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042-331-8995
세종	세종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긴급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044-865-7033
경기	부천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경기도시노인말벗사업	032-351-8579
	남양주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경기도시노인말벗사업, 재가의료급여사업	031-562-8579
강원	춘천서로돌봄센터	긴급돌봄,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퇴원환자 단기돌봄사업	033-262-2111
	원주서로돌봄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돌봄,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농촌형 고위험군 맞춤돌봄	033-735-1122
충남	충남동부돌봄센터	방문요양, 긴급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인지교구활용서비스	041-555-5593
전북	전북인돌봄센터	365함께 통합돌봄 시범사업, 돌봄종합상담운영,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시안부드러운 살핌서비스 시클로바케어콜(안부전화서비스), 농촌지역 이동복지사업	063-902-0022
	전북인동부돌봄센터	돌봄종합상담운영,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시안부드러운 살핌서비스 시클로바케어콜(안부전화서비스), 농촌지역 이동복지사업	063-938-9830

지역	센터명	제공서비스	연락처
전남	동부종합돌봄센터	일상돌봄, 긴급돌봄	061-746-9960
	서부종합돌봄센터	방문요양, 일상돌봄, 긴급돌봄, 취약지지원사업, 섬마을 복지서비스(어복버스, 어복장터)	061-277-9836
경남	김해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일상돌봄, 긴급돌봄,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055-328-8279
	창원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일상돌봄, 긴급돌봄,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055-291-8279
제주	제주시센터	긴급돌봄, 제주가치돌봄(생활돌봄, 주거편의)	064-746-6555
	서귀포시센터	긴급돌봄, 노인맞춤돌봄, 제주가치돌봄(생활용품)	064-762-8555

◦ 가족센터 운영

| 대상 가정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

구분	지원내용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상담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	가족사랑의 날 행사, 전통문화체험교실, 건강가정캠페인 등

| 방법 지역 가족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 대상** 미혼모부, 한부모 등 모든 가족
- | 내용**
 - 미혼모부·한부모가족상담: 미혼모부·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등
 - 가족서비스상담: 가족갈등 상담, 가족 서비스 종합정보 제공 등
- | 방법**
 - 전화상담(☎1577-4206)
 - 온라인상담(www.kihf.or.kr, www.childsupport.or.kr)
 -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 채널 검색)
- | 문의** 가족상담전화(☎1577-4206)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72만 9,540원)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72만 9,540원) 이하

- |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10만 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10만 원 지급

- |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문의** 가족상담전화(☎1577-4206 → 1번)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1월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9.3만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 대상** 한부모가족
- |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지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 |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시스템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 | 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 내용**
 - 공공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청약 우선순위 부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 저렴한 월세 주거(15개 시도* 운영 중)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방법**
 - 공공임대주택: LH 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지 시도청 여성가족과 등 한부모 담당 부서에 문의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 | 문의**
 - 각종 공공임대주택: LH마이홈(☎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가족상담전화(☎1577-4206 → 1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조손가족 등)
※ 소득 무관 입소
① 위기임산부
②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한부모(출산지원시설)
③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 내용**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 | 방법**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신청
- | 문의** 가족상담전화(☎1577-4206 → 1번)

◦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 | 대상** 19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조손 가족
- | 내용**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 선지급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 |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이행확보지원
- | 문의** • 양육비상담 및 방문상담예약: 양육비이행상담(☎1644-6621)
• 온라인 상담(www.childsupport.or.kr)

🔊 알려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72만 9,540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2인 기준 302만 3,490원) 이하

|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7만 원(2세 이상 자녀) 또는 40만 원(0~1세 자녀)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10만 원) 지원
자립지원 촉진수당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가족상담전화(☎1577-4206 → 1번)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이 국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 |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 |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8만~58.4만 원의 보육료 지원
- |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 | 대상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무주택 다문화가족
- | 내용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 | 방법 LH에 신청
- | 문의 LH마이홈(☎1600-1004)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다문화가족 지원)

-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 내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참조(본 책자 20p)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 |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 긴급복지 지원제도(다문화가족 지원)

- |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긴급복지 지원제도 참조(본 책자 23p)
- |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3년 이내 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
- | 내용**

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의 이해(최대 100시간) 과정 제공

 - ※ 과정 이수자에게 귀화·영주·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부여
 - ※ 전국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운영
- | 방법**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서 신청
- |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www.socinet.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 | 대상**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 수준의 이주배경, 북한배경 학생
- | 내용**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놀이 학습, 한국문화 체험 등의 멘토링 지원
 ※ 활동시간: 학기당 640시간 이내, 1일 8시간, 주당 20시간 이내(방학 중 주당 40시간 이내)
 ※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농어촌 멘토링에 한해 학기 중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 방법**
- 멘토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신청
 - 활동기관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기업/기관 로그인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수요조사 신청
 - 멘티 신청: 전국 유치원, 다문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활동기관에 참여 신청
-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 자주 하는 질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생 멘토의 급여는 국가 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되므로 가정에서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 대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 내용** 언어발달 정도 평가 후 어휘, 대화, 읽기 등 언어발달 촉진교육 제공
- |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 | 대상 다문화가족 등
- | 내용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 |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대상	구분	지원대상
	한국어교육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다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내용	구분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서비스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 대상** 다문화가족, 관련기관
- | 내용**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 |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 다누리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 대상**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 | 내용** 결혼이민여성의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
 - * 일부 센터 특화사업 운영
- | 방법**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 다누리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 | 문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
 - * 다누리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대상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 내용

- 13개 언어* 365일 24시간 다문화가족정책서비스 안내 및 종합생활정보상담 제공
-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라오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 폭력 등 긴급 및 위기상담, 개인·부부·가족 갈등해결 상담, 긴급 피난처 제공, 3자 통화 통역 상담 등

| 방법

- 정보제공, 3자 통화 통역: 전화(☎1577-1366)
- 폭력 등 긴급 및 위기상담: 전화, 면접, 방문, 온라인을 통한 위기상담 → 긴급피난처 제공 → 보호시설 연계 등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www.kihf.or.kr)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지원(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

* 다누리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
- | 내용**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동행지원 등 현장상담 서비스 지원
 -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에게 임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제공
- | 방법** 여성긴급전화, 내방·방문, 사이버상담을 통한 위기상담 →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서비스 제공 → 관련기관 연계조치
-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 대상** 성폭력 피해자(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이용 가능)

구분	지원내용
성폭력 피해 상담소	피해자 상담, 보호시설·의료기관·법률구조기관 연계 등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 의료·법률 지원 연계, 학업·자립 등 지원
의료비 등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정신적 치료 등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 | 방법**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성폭력상담소) 상담 지원 / (전담의료기관) 의료 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 지원 / (통합지원센터) 상담, 의료, 수사 등 통합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보호·사회복귀 지원

-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 성폭력상담소
 -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료 → 인권보호

○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 내용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 원스톱 지원(365일 24시간 운영)

※ 폭력이 초래한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피해 방지 목적

유형	대상	이용시간	지원내용
위기지원형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대응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아동형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모든 연령·성별 지적장애인)	월~금 9시~18시	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외상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
통합형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대응 후 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장기 상담과 치료 지원

| 방법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상담 →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서비스 연계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 해바라기센터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보호

※ 해바라기센터 누리집(www.sunflowercenter.or.kr) → 센터 소개 → 전국 해바라기센터

☞ 알려드립니다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순차적 상담 및 지원

상담 지원(위기·응급상담, 추가·지속상담,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 의료 지원(법의학적 증거물 확보, 피해자 응급조치 및 치료 지원) → 수사·법률 지원(피해자 진술,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법률상담 및 자문, 사건 지원 등) → 심리 지원(심리평가 및 치료, 심리 지원 상담,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 동행 서비스(상담·심리·수사·법률·의료 지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이동 지원) → 사회적 지원(외부기관·외부자원 연계, 돌봄비 지원 등)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퇴소 자립지원 수당

- | 대상**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입·퇴소 당시 연령 및 입소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연령 요건)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입소기간 요건) 퇴소일 기준, 과거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 내용**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 원 퇴소 자립지원 수당 지급
- | 방법(신청절차)** 퇴소(예정) 보호시설에 신청
- | 문의**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미성년 아동·청소년 전용) 운영 지원

- | 대상**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 내용**
- | 구분 | 지원내용 |
|-----------|---------------------------------------|
| 심리·정서적 지원 | 개인상담, 심신단련프로그램, 권리찾기교육, 전문심리치료기관 연계 등 |
| 수사·법적 지원 |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 |
| 의료적 지원 | 치료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 |
| 학교문제 지원 | 전학문제, 지도교사면담 등 |
| 자립 지원 | 취업 알선, 직업훈련 연계, 퇴소 후 거주지 알선 등 |
| 기타 |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등 |
- | 방법**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한 상담 후 이용 신청
-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인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전국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이용 가능)

 내용	구분	지원내용
	가정폭력 상담소	피해신고·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등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와 동반자녀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직업훈련, 피해 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주거 지원	임대주택 공급으로 피해여성과 동반가족에게 주거공간 제공

| 방법 가정폭력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지원 / (의료기관) 의료 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 지원 / (경찰·검찰) 수사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자립 지원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카카오톡 ID(women1366)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

| 내용

-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 방법

-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1366센터·상담소 등)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
- (치료회복프로그램)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일부)에 신청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 |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 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 등과 관련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관련 상담, 민사, 가사 소송대리 및 형사 소송 등 무료 지원
- | 방법**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 | 문의**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 관련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피해상황별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가정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성폭력)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 (스토킹, 교제폭력) 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 | 대상**
 -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피해자
- | 내용**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신변 안전을 위한 긴급임시숙소(원룸, 오피스텔 등)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공간 제공
 - 심신·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상담 등을 통한 시설보호(숙식) 무료법률,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연계
- | 방법**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연계 후 상담, 보호·숙식,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와 법률, 의료 서비스 연계 지원
-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카카오톡 ID(women1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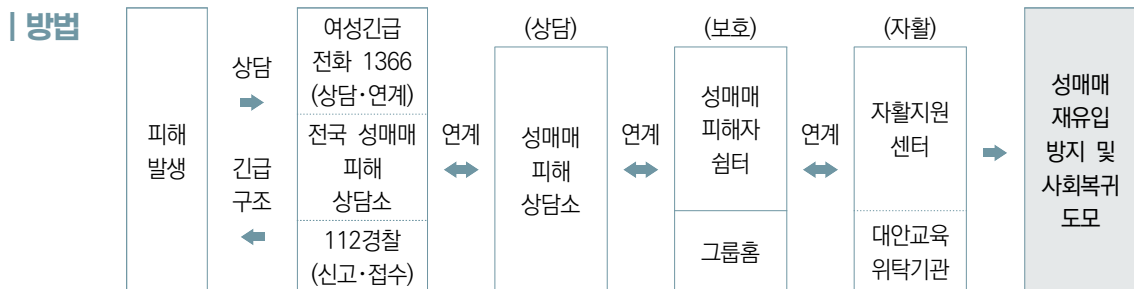
○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 |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
- | 내용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 방법 거주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해당 지자체

○ 성매매 피해자 지원

- | 대상 성매매 피해를 입은 일반성인·청소년·외국인 등

구분	지원내용
성매매피해상담소	긴급구조, 현장방문상담, 의료·법률문제 지원, 쉼터 연계 등
성매매피해자 쉼터 (성인,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	숙식제공, 전문상담, 의료·법률문제 지원, 직업훈련·취업 연계, 진학교육 ※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의 경우 통역서비스·전문상담·자국 대사관 등 연계·귀국지원 등 추가 제공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일정기간 주거지원 등
자활지원센터	인턴십프로그램 연계 등 일자리제공, 직업훈련·진학교육, 취업지원 등
대안교육위탁기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대상 의무교육 및 자활교육, 사회적응훈련 등



-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성매매피해상담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에서 확인)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脂),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음)
	장해급여	• 장해급여: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보상연금: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4급(평균임금 1,012일분)~14급(55일분)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일시금 지급) • 연금: (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할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등 지급

|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comwel.or.kr

🔊 알려드립니다

‘장해’란?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과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산재 신청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 대상**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535만 9,036원) 이하인 자 중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애등급(제1급~제9급) 판정자
 -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산화탄소(CS2)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 | 내용** 1세대당 2,000만 원까지 각 융자 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

구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주택이전	차량구입
융자액	1,000만 원 이내					1,500만 원 이내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 가능

- | 방법**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 | 문의**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의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 | 대상**
- 경기케어센터 : 1~3급 산재장해인
 - 태백케어센터 : 진폐장해인, 진폐의증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 ※ 만 60세 미만은 케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입소 여부 결정

- | 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중증의 산재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 및 복지시설 제공

- | 방법** 케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입소 신청

- | 문의**
- 경기케어센터(☎031-359-0514)
 -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 | 대상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장해인 등
- | 내용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 제공
- |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 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영업 포함) 상태로,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
- | 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00만 원 한도 내 지급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시간, 훈련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 | 대상 산재장해인(제1~12급)을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주

구분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	월 45만~8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재활운동비	월 1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직장복귀지원금) 또는 실제 소요 비용(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기준으로 지급

- | 방법
 -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우편, 방문, 팩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직장복귀지원금)
-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 산재근로자 일상복귀 지원

- | **대상** 산업재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
- | **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재활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 등
- |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 |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 **내용** 재활보조기 249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 지급
 - 재활보조기 124개 품목(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100개, 산재보험 별도 인정 품목 24개)
 - 수리료 125개 품목

» 알려드립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 등으로 관절 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 **방법**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 대체인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 | 대상 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 내용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일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월 최대 60만 원)
- | 방법
 -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우편, 방문, 팩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 | 대상 요양 종결 후 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예상되고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 내용 직장 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 산재근로자 재활상담, 전문재활치료,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장동료 화합프로그램, 사업주 상담 등
- |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문의(개인정보 제공 동의)
-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 |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 보수(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
 - * 근로자에 한해 신규가입자만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 보수(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
- | 내용**
 -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 지원(최대 36개월)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최대 36개월)
 - * 종사자 10인 이상의 사업인 경우 종사자 부담분
- | 방법** (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대상 확정 →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 ※ 플랫폼(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종사자는 지원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원금 이체(이용 사업주/플랫폼종사자 각각 지원신청 필요)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자주 하는 질문

고액자산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할 경우 고액자산가로 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 ①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 ②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모두 지원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 대상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내용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보건복지부)
- | 방법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 시 읍면동장의 확인이 필요하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 면제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 대상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 내용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월 최대 5만 350원)
- | 방법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 농업인 안전보험

- | 대상 만 15~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 내용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 | 방법 보험가입 안내(지역 농축협) → 가입 신청(농업인) → 보험증권 발급
- | 문의 NH농협생명(☎1544-4000)

◦ 어업인 안전보험

- | **대상** 만 15~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 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 | **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 | **방법**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 | **문의**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1588-4119

💬 자주 하는 질문

어선원 보험에 가입 중인데 어업인 안전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나 산재,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려는 어업인은 안전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 | **대상**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
- | **내용** 본인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지원

구분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어선원보험	70%	60%	60%	30%	20%	75%
어선보험	70%	60%	-			75%

※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 **방법**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 | **문의**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1588-4119

🔊 알려드립니다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25.1.1부터 전 톤수로 확대되었습니다.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 승선 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미 신고 시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

- | 대상** 사고·질병발생,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으로 ① ~ ④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 ※ 농업인의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①~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
- | 내용**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지원(30% 자부담)
- | 방법** 신청기간 내 거주지 지역 농협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23)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원대상 확대

자녀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인과 안전 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 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 대상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 내용 영어(어업)활동을 대행하는 대체인력비용 최대 30일 지원

- ※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 환자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한 이내 사용 가능
- 1일 인건비 12만 원 중 9.6만 원(80%) 지원

| 방법 각 시도 담당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각 시도 담당사무소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경남 기술지원과(☎055-254-3524)
• 경북 환동해지역본부(☎054-880-7720)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 농촌주택개량사업

- | 대상**
-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완료시까지 도시주택 처분 필요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 내용**
- 주택의 신축(최대 2.5억 원), 대수선(최대 1.5억 원), 토지구입비용(최대 9천만 원)의 사업비를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 1년 거치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분할상환
 -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80만 원 한도 감면('27.12.31까지)
 - ※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름
- | 방법**
- 해당 시군구에 신청(1차 신청 1~2월, 추가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3월) → NH농협은행과 융자규모, 시기 등 사전 협의 → 주택 건축 및 완료 → 융자금 대출
- | 문의**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해당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 대상**
-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단, 제주도 본도 및 연륙·연도교가 연결된 섬 제외)
- | 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일부 지원
-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합니다.
 - * 3만 원 이하 5,000원, 3만 원 초과 ~ 5만 원 이하 6,000원, 5만 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 정률 지원
 -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 미만 화물차(50%)에 한정
- | 방법**
- 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 제시
- | 문의**
- 해양수산부콜센터(☎110)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 | 대상**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 | 내용**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2.99%) 및 저축장려금(0.9~4.8%)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에 따라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은 비과세 대상
- | 방법**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
- | 문의**
 - NH농협(☎1661-2100)
 - SH수협(☎1588-1515)
 - 산림조합(☎1544-4200)

💬 자주 하는 질문

농림어업인이지만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축가입 대상이더라도 타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저축가입이 가능한가요?

→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각각 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 농촌아이돌봄지원

- | 대상** 농촌지역(읍면)의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 내용**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 | 문의** 관할 지자체 농정과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 학과는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 | 내용** 장학금(매 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 원)
- (최대지원횟수)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는 7회, 비농업계대학은 4회, 전문대학의 경우 3회 지급
 - *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1회 지급
 -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대상은 추가 4회 지급
 - ※ 학업장려금: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 ※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며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 방법**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공고 → 신청 → 대학교추천 → 서류심사 → 보증보험 가입 → 선발
- | 문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누리집(www.rhof.or.kr)

»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의무종사 및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 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 (의무교육) 재단이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 ※ 의무교육 미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는 유지됨
-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찾아가는 돌봄교실

- | 대상 찾아가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 | 내용 운영비 지원
 - 차량을 이용해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고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 |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 | 문의 관할 지자체 농정과

○ 농번기돌봄지원

- | 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 내용
 - (시설비 지원)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지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 | 문의 농여촌희망재단(☎02-6958-9479, www.rhof.or.kr)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 그 가족에게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의사상자 등 지원

| 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내용

-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등 지급
 - ※ 신청기간 제한: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 의상자의 경우 부상 등급별 차등지원
- 그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

| 방법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발생지 시군구에 인정 신청 → 사실조사 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여부 청구·결정(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문의 시군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의사자와 의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의사자: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사망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
- 의상자: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부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의사자: 유족 보상금 2억 5,073만 3,000원('26년 기준)
- 의상자: 부상 등급(1~9급)별로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100% 지급
 - ※ 의사상 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외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공직진출 가산점 등의 예우와 지원 실시
 - ※ 의사자 유족, 의상자(1~6급)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지원
 - ※ 신청기간 제한: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북향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북향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북향민 사회보장 지원

|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향민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특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까지 특례* 적용 * 근로무능력가구일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능력가구일 경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자활사업참여 의무 조건 제시를 유예
	국민연금 특례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 5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 북향민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지원

| 대상 위기가구(중증질환, 가족해체, 가족상실 등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북향민(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내용 최대 연 2회, 위기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150만 원 이내(생애 500만 원 한도) 생계 지원

| 방법 거주지 하나센터 내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청

| 문의 남북하나재단(☎1577-6635)

◦ 북향민 의료비 지원

| 대상 2026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북향민

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질환	입원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 원 이내
	만성·중증· 희귀난치성질환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신청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 원 이내 ※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8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장기이식	생애 1회,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 원 이내 ※ 장기 기증자(북한이탈주민)는 중증질환 지원 기준 적용 최대 800만 원 이내 지원(단, 이식검사로 제외)

| 방법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문의 후 신청(남북하나재단 온라인시스템 신청)

| 문의 남북하나재단(☎1577-6635)

◦ 북향민 정착금 지원

| 대상 북향민

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500만 원 지급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최대 1,540만 원 지급 (단, 2024.11.1 이후 거주지 보호기간 내 가산금 중복 지급 가능)

|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고령,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또는 남북하나재단(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에 신청

|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02-3215-5853)

○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 대상 초, 중, 고등학교 재학 북한배경학생(본인이 북한민이거나, 북한민의 자녀(제3국 출생, 국내출생 포함))

 내용	구분	지원내용
맞춤형 멘토링		북한배경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북한배경학생과 재학교의 교원이 실시하는 1:1 멘토링 활동 (학습지도, 심리상담, 문화체험, 진로직업 교육 등) ▶ 대상 : 초, 중, 고 전체
성장멘토링(VAS)		북한배경학생의 적응과 성장 지원을 위해 전현직 교사가 멘토로 2년 이상 실시하는 장기멘토링 프로그램 ▶ 대상 : 초, 중, 고 전체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북한배경학생의 진로희망분야 전문가 멘토와 실시하는 진로·직업체험 교육활동 프로그램 ▶ 대상 : 중·고 공통
심리상담 및 언어발달 지원		불안, 우울, 무기력, 부모와의 갈등, 학습장애 등 심리상담 및 언어발달 지원이 필요한 북한배경학생 및 가족 ▶ 대상 : 초, 중, 고 전체
찾아가는 진로상담		진로·진학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배경학생을 위해 진로·진학 상담 전문가가 북한배경학생을 찾아가 1:1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지원 ▶ 대상 : 중2~고3
긴급 교육지원 (돌봄지원)		심리, 건강, 가정, 학업 등의 문제로 긴급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기위기 북한배경학생에게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여 적기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 ▶ 대상 : 초, 중, 고 전체

| 방법 학교 담임 또는 담당교사, 북한배경학생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

| 문의 북한배경학생교육지원센터(☎043-530-9481)

○ 남북하나재단 북한민 취업지원사업

| 대상 북한민

- | 내용**
- 1) 지역취업사업 : 북한민 거주지 중심 취업지원을 위한 재단 소속 취업 담당 전문상담사 전국 배치 및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 2) 취업바우처 : 북한민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직업교육 지원
 - 3) 전문직 양성과정 : 전문직 진출을 희망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북한민의 국가 기술·전문 자격시험 준비 비용 지원
 - 4) 스피치 교육 : 커뮤니케이션 능력 증진을 위한 언어·스피치교육 및 대인(직장) 의사소통 교육
 - 5) 일자리 성공 패키지 : 미취업 북한민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경험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6) 북한민 온라인 채용관 운영 : 북한민을 위한 온라인 채용관 운영(채용정보 제공, 취업 클리닉 등)
 - 7) 단기연수 지원제도 : 미취업 북한민에게 취업현장 연수를 통해 기술습득 및 직업 적응과 직업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주에게는 예비 고용 후 검증된 인재채용의 기회 제공
 - 8) 위탁형 직업훈련 : 북한민에게 분야별(과정별) 집중교육으로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자격취득과 함께 취업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취업 지원

|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886)

◦ 남북하나재단 북향민 창업지원사업

| 대상 북향민

| 내용 1) 창업디딤돌센터 운영: 북향민 (예비)창업자 대상 시설 지원(라운지, 회의실, 입주공간 등) 및 창업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2) 신규창업자 지원: 북향민 여성 및 청년층 신규 창업자를 위한 창업실습 및 재정지원
3) 기존 창업자 지원: 창업 후 만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 중인 북향민 창업자 대상
4) 창업교육: 북향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분야별 창업교육 제공
5) 경영컨설팅: 북향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경영컨설팅 제공
6) 판로지원: 북향민 소상공인을 위한 생상품 판로지원

|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827, 5773)

◦ 남북하나재단 북향민 영농지원사업

| 대상 북향민

| 내용 1)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영농희망자 및 기존 영농인 대상 영농교육 및 영농실습 제공
2) 영농·어업종사자 운영비 지원: 초기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운영비 및 소규모 시설개보수 비용 등 지원
3)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수료자 운영비 지원: 영농 초기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운영비 및 소규모 시설개보수 등 지원

|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771)

◉ 북한민 자녀 교육비 지원

| 대상 북한민 및 그 자녀

내용	구분	지원내용
	특례 편·입학	북한민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입학 지원
	학비 지원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 보조

| 방법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통일부 자립지원과 문의)
- 대학등록금 지원(남북하나재단 문의 후 신청)

| 문의

- 통일부 자립지원과(☎02-2100-5925)
- 남북하나재단(☎02-3215-5793)

◉ 북한민 및 그 자녀 장학금 지원

| 대상 북한민 및 그 자녀(중·고생, 검정고시, 대학(원)생)

| 내용

- 연 2회 상·하반기 장학금 지원
 - 대학(원)생: 200만 원
 - 사이버대·방송통신대: 50만 원
 - 중고등학생·검정고시: 100만 원

| 방법

- 모집시기: 상반기(3월), 하반기(9월)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

|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853)

◉ 북한민 및 그 자녀 진로진학지원

| 대상 북한민 및 그 자녀(초, 중·고생, 대학(원)생)

| 내용

- 학습멘토링: 대학(원)생 1:1 학습지도
- 진로진학상담: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 방법

- 모집시기: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공지 참고
-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

|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752)

○ 북향민 자녀 학습지 및 화상영어 지원

- | 대상** • 학습지: 만 4세 ~ 초등학교 6학년 북향민 및 그 자녀
• 화상영어: 만9세 ~ 만 24세 이하 북향민 및 그 자녀
- | 내용** • 학습지: 1:1 방문 지원
• 화상영어: 1:1 비대면 화상영어
- | 방법** • 모집시기: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공지 참고
•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
- |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751)

○ 북향민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 | 대상** 북향민 및 그 자녀
- | 내용**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5개소
• 지역아동센터 7개소
- | 방법** • 모집시기: 12월
•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
- |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809)

○ 북향민 취업 지원

- | 대상** 북향민, 북향민을 고용한 사업주

내용	구분	지원내용
	정착장려금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종료 전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간 장려금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지급(2021.1.1. 신청자부터)
	새출발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종료 후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1년 6개월간 장려금(최대 600만 원) 지급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향민 포함 * 북향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1년 차) 300만 원, (2~3년 차) 700만 원 추가 세액공제(3년간 최대 총 1,700만 원 추가 공제)

- | 방법** (정착장려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 | 문의** (정착장려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8)

○ 북향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 |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만 18세 이상 북향민 중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소득자
- | 내용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저축(최대 4년간) 시,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 |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 |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792)

○ 북향민 주택알선 지원

- | 대상 북향민
- | 내용 하나원에서 북향민의 주택 신청·배정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
*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 | 방법 교육기간 중 주거 희망지역 신청 및 배정
- | 문의 하나원(☎031-670-9300)

○ 북향민 법률상담

- | 대상 북향민
- | 내용
 -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소송구조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기관 연계(안내)
- | 방법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전화 신청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를 통해 신청
 - 카카오톡 친구추가(ID: unilaw114) 후 채팅을 통해 신청
- | 문의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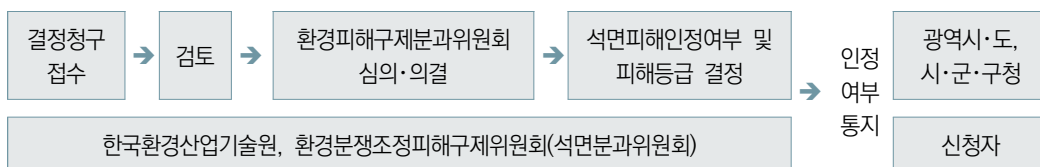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석면피해자,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인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합니다.

◦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 | 대상**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석면피해인정) 및 그 유족(특별유족인정)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으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 내용** • 석면피해구제 신청절차



- 2026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금액

(단위: 원)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요양급여
원발성 악성중피종	1,994,660	56,501,400	3,766,760	석면질병치료비 (단,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원발성 폐암	1,994,660	56,501,400		
미만성흉막비후	1,436,150	28,250,700		
석면폐증	1급	1,436,150		
	2급	957,430		
	3급	478,710		

- | 방법**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

- | 문의**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1555-4582)
•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www.ehtis.or.kr/onestop)

◉ 노숙인 등 복지 지원

- | 대상** 노숙인시설 입소자 및 거리노숙인
- | 내용**
 -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병원연계·주거 사례관리, 응급잠자리 등 지원
 -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지원, 자활·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자립 지원
- | 방법**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13개소)

시도	시설명	주 소	전화번호 / 팩스
서울	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02-777-5217
			02-777-5393~4
	시립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363-9199
			02-363-9198
	시립 영등포 보현 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02-2069-1600
			02-2069-1605
부산	부산소망 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3-9 (초량동)	051-463-7707
			051-463-7723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87번길 8(2층, 3층)	051-463-1127
			051-463-1128
	부산희망 드림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4(좌천동)	051-631-9001
			051-631-9002
대구	대구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38길 22	053-426-5828
			053-423-6243
대전	대전광역시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9번길 75,3층(중동)	042-221-8331
			042-221-8330
경기	성남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	031-751-1970
			031-751-1971
	수원다시서기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갯매산로 86, 2층	031-238-8579
			031-236-4979
	의정부시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통일로 711번길 41-2	031-846-4232
			031-846-1660
광주	광주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177-1(용산동)	062-716-7400
			062-716-7409
제주	희망나눔 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15길 2	064-753-0711
			064-753-0712

○ 출소자 등 자립 지원

| 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등)

| 내용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무보호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내용
생활지원	숙식제공, 긴급지원, 통신비(해피콜) 지원, 기초건강지원, 기타 자립지원* * (기타 자립지원) 지자체 연계, 법률구조, 의탁알선 등
가족지원	주거지원, 주거환경개선, 결혼지원,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 가족친화프로그램(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허그일자리프로그램, 창업지원
상담지원	사전상담, 적응력 예측 검사, 심리상담, 결연보호
교육지원	사회적응교육, 준법교육, 중독예방교육, 청소년교육(학업지원 등), 성행교정교육(감호, 보호수용)

| 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방문 신청

※ 긴급지원, 통신비(해피콜) 지원, 적응력 예측 검사는 공단 누리집(<https://koreha.or.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

|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 재외국민긴급지원비

| 대상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

| 내용 긴급의료비 및 국내송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방법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에 신청서 제출

| 문의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

»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 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지원 범위는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 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으로 제한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구분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신규 등록 시 특별지원금 4,300만 원, 매월 197만 6,000원 지급
간병비	월평균 1인당 372만 2,000원 *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
치료비	건강치료비 월평균 120만 원
기타	정기·수시 연락을 통한 정서적 지원,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법률상담 등 지원

| 방법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원폭피해자 지원

| 대상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

| 내용

- 진료비: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진료보조비: 매월 10만 원(분기별 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 원 지원
- 장제비: 210만 원 일시 지급

| 방법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 진폐근로자 보호

| 대상 8대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진폐 장애 판정 근로자

| 내용 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 자녀 장학금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진폐 건강진단	•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 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 지급
진폐 위로금	• 장애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1,040일분의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로 장애판정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애 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한센인 피해자 지원

- | 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
- | 내용
 - 피해자별 상병 내용에 따라 향후 치료비, 간병 소요경비, 보장구 구입비 등 지급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20만 원 지급
- | 방법 보건소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 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24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 | 내용 전년도(2025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용을 세대 당 연 1회 소득별 차등 지급(60~100만 원 한도)
- | 방법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 결정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인정 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 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1회 300만 원 내)
- | 방법 각 시도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5)

🔊 알려드립니다

외래진료비도 지원하나요?

-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대상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내용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55~100%지원

구분		자부담 보험료		보험금(최대)	비고
주택 (정액형)	일반	소유자	16,600원	8천만원	▶ 가입면적 80㎡ ▶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형
		세입자	5,800원	1천2백만원	
	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소유자	4,700원	8천만원	
		세입자	2,600원	1천2백만원	
	경제취약계층 전부지원	소유자	0원	8천만원	
		세입자		1천2백만원	
주택 (실손비례형)	일반	소유자	12,600원	8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8천만원
온실 (정액형)		소유자	112,000원	1천6백83만원	▶ 07-단동-1하우스 (1,000㎡, 90% 보상 기준)
소상공인 상가·공장 (실손형)	상가	소유자	40,000원	1억원	▶ 상가건물 1억원
		세입자	20,000원	5천만원	▶ 재고자산 5천만원
	공장	소유자	47,200원	1억5천만원	▶ 공장건물 1.5억원
		세입자	15,700원	5천만원	▶ 재고자산 5천만원 5천만원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은 100% 지원

| 방법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7개 민영보험사*,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에 가입 신청

* 7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 문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및 중소기업중앙회(공제사)

- DB손해보험(☎044-205-5990)
- 삼성화재(☎044-205-5992)
- NH농협손해보험(☎044-205-5994)
- 메리츠화재(☎044-205-5996)
- 현대해상(☎044-205-5991)
- KB손해보험(☎044-205-5993)
- 한화손해보험(☎044-205-5995)
- 중소기업중앙회(☎1522-7975)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알려드립니다

-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에만 가능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구분	지원내용				
치료비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실비 지급 ※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 지원				
생계비	최대 6개월까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족 70만 원, 2인 가족 120만 원, 2인 초과 시 1인당 40만 원씩 증액 ※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6개월 연장 지급 가능				
학자금	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장례비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500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				
긴급생활 안정비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인 경우 350만 원 정액 지급				

| 방법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 검찰청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인 경우, 검찰청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일용직근로자 월평균임금 1개월분에 상응하는 350만 원 정액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하였습니다.



1인 가구 지원이 필요할 때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 내용**
 -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 방법** 노인복지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 |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대상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 14개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35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구분	서비스내용	대상	소득기준
영유아 발달지원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만 0~6세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만 7~18세 정서행동문제 우려 아동·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행동 위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언어, 놀이, 상담, 음악·미술치료 등 조기개입서비스 지원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건강상태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수준 또는 유산소 운동 처방·지도를 통한 건강 증진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노인·장애인에게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하는 여행 서비스 제공	등록장애인(또는 상이 등급자), 만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소득기준 없음
시각장애인 안마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 제공	근골격계·신경계·순환 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 해당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아동청소년에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기 위해 리더십 형성 프로그램 및 체험 학습 등 지원	만 7~15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비만아동 건강관리	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한 체질개선 및 질병 예방	만 5~12세 경도 이상 비만 아동	소득기준 없음

구분	서비스내용	대상	소득기준
성인 심리지원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한 사회구성원 역할 촉진	만 35세 이상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한 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 지자체별, 서비스별로 다양하며, 다른 바우처 또는 복지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 방법**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득조사(시군구) →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별 사업이 상이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2

복지|서비스 찾아보기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고 싶은가요?**

⋮

- ◆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
- ◆ 주요기관 연락처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0~2세 보육료 지원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3~5세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에듀콜센터(☎ 1544-0079) : 유아학비	
4·19혁명공로수당	주소지 관할 보건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25자녀수당	주소지 관할 보건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5세 이상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정양육수당 지원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등	
가족상담전화(1577-4206)	가족상담전화(☎ 1577-4206)	
가족센터 운영	가족센터(☎ 1577-9337)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132)	
건강보험 산정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현대카드(☎ 1577-600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차상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고교학비 지원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청소년 전화(☎ 1388)	
고엽제 후유증 수당	주소지 관할 보건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주소지 관할 보건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한국장학재단(☎ 1800-0499)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중앙취업지원센터(☎ 1599-8297)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센터(☎ 1577-9337)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각 시도 교육청	
교통시설 이용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건강검진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290)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KB국민은행(☎ 1599-9999), NH농협은행(☎ 1588-2100),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장학금[Ⅰ, Ⅱ 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 02-6222-6060)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 1588-3570)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 1588-3570)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장려금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기업현장교육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 1800-0499)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전세임대콜센터(☎ 1670-0002), 지방도시공사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한국전력공사(☎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등	
기초연금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긴급 주거지원	LH마이홈(☎ 1600-1004)	
긴급돌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관할 지자체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 지원제도(다문화가족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남북하나재단 북한민 영농지원사업	남북하나재단(☎ 02-3215-5771)	
남북하나재단 북한민 창업지원사업	남북하나재단(☎ 02-3215-5827, 5773)	
남북하나재단 북한민 취업지원사업	남북하나재단(☎ 02-3215-5886)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납북피해자 지원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02-2100-5916)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주택도시기금(☎ 1566-9009)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 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수사기관(☎ 11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농번기돌봄지원	농어촌희망재단(☎ 02-6958-9479)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NH농협은행(☎ 1661-2100), SH수협은행(☎ 1588-1515), 산림조합(☎ 1544-4200)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농업인 안전보험	NH농협생명(☎ 1544-4000)	
농촌 출신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사업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농촌아이돌봄지원	관할 지자체 농정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융자금 대출	
늘봄학교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교육청,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한국장학재단(☎ 1599-229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함께 돌봄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지원단(☎ 02-6454-8500)	
대지급금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대체인력지원사업(사업주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교양)	한국장학재단(☎ 1599-2290)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290)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2-6915-7601)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 7 → 1)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디지털배움터	시디지털배움터(☎ 1800-0096)	
마을번호사	대한번호사협회(☎ 02-2087-7851), 법무부(☎ 02-2110-3500)	
마을세무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 주거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 : 교육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다문화가족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 주거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 : 교육급여	
무공영예수당	주소지 관할 보건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무료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퇴소 자립지원 수당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미소금융	서민금융콜센터(☎ 139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발달재활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방과후 보육료 지원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 1566-9009)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홈닥터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 : 상담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753, 3824) : 제도 운영	
법문화교육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054-432-6812)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중앙보훈병원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02-2225-2551~5) 부산보훈병원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051-601-6762~3) 대전보훈병원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042-605-0732~3) 대구보훈병원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053-630-7127~8) 광주보훈병원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062-602-6615~6) 인천보훈병원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032-363-9893~4)	
보훈병원 진료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사업	소속 학교, 한국장학재단(☎ 1599-2290)	
부모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북한배경학생교육지원센터(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043-530-9481~9490)	
북향민 및 그 자녀 장학금 지원	남북하나재단(☎ 02-3215-5853)	
북향민 및 그 자녀 진로진학지원	남북하나재단(☎ 02-3215-5752)	
북향민 법률상담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114)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북향민 사회보장 지원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생계급여·의료급여 국민연금공단(☎ 1355) : 연금특례	
북향민 의료비 지원	남북하나재단(☎ 1577-6635)	
북향민 자녀 교육비 지원	통일부 자립지원과(☎ 02-2100-5925), 남북하나재단(☎ 02-3215-5793)	
북향민 자녀 학습지 및 화상영어 지원	남북하나재단(☎ 02-3215-5751)	
북향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남북하나재단(☎ 02-3215-5792)	
북향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02-3215-5853)	
북향민 주택알선 지원	하나원(☎ 031-670-9300)	
북향민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남북하나재단(☎ 02-3215-5809)	
북향민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지원	남북하나재단(☎ 1577-6635)	
북향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8)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6년임대/뉴홈 선택형)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민금융콜센터(☎ 1397)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지역 종합재가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 1544-322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근로자 일상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주)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케어센터(☎ 031-359-0514), 태백케어센터(☎ 033-580-520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상병수당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 상병수당운영팀	
새희망홀씨	서민금융콜센터(☎ 1397)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생계지원금	주소지 관할 보건지(방)청 및 보건상담센터(☎ 1577-0606)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민금융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알선	서민금융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02-3471-5116), 서민금융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민금융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서민금융콜센터(☎ 1397)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55-458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 031-920-2029)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6363-9332),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미성년 아동·청소년 전용)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소상공인 지원(융자)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031-920-2029)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수어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1551-0078)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산업통상부 콜센터(☎ 1577-0900)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콜센터(☎ 1661-936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소외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피해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론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신용회복위원회(☎ 1600-6600)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855-3020)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02-777-0182), 경찰청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182)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230, 2250)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동 급식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아동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양로지원	보훈원(☎ 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양육비이행상담(☎ 1644-6621)	
양육지원	보훈원(☎ 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코레일(☎ 1544-7788),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등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어린이 불소 도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Sh수협은행(☎ 1588-4119)	
어업인 안전보험	Sh수협은행(☎ 1588-4119)	
언어발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한국에너지재단(☎ 1877-6568, 02-6913-2173)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3)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문의 콜센터(☎ 02-2038-8953)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3)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4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바우처콜센터(☎ 1566-3232)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영농도우미 지원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02-2080-5423)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영주귀국정착금	수권자 관할 보건지(방)청 및 보건상담센터(☎ 1577-0606)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센터(☎ 1577-9337),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5)	
요양비(출산비) 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요양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지(방)청 및 보건상담센터(☎ 1577-0606)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무료 공익보험)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	
원폭피해자 지원	대한적십자사(☎ 02-3705-3783)	
위(Wee)프로젝트 사업(위(Wee)클래스·위(Wee)센터·위(Wee)스쿨 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044-415-2157)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 130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전화(☎ 1388)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보건(지)청 및 보건상담센터(☎ 1577-0606)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02-1661-5666)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은퇴금융 아카데미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시군구청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료급여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사상자 등 지원	시군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박사우수 장학금(이공계))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석사우수 장학금(이공계))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02-733-7587)	
인문100년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일반월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일반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임산부 철통제·업산제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양아동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043-719-7328)	
자녀장려금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자활근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KB국민은행(☎ 1599-9999), NH농협은행(☎ 1588-2100),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장애아 보육료 지원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장애아동 양육수당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건강보험료 감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근로지원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등록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02-760-9725, 9713, 975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보조기기센터(☎ 1670-55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복지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국세상담센터(☎ 126)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2~1556)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799-1000, 중도시각장애인재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02-880-0500, 음악재활) 한국장애인도우미연합회(☎ 031-691-7782, 보조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상담센터(☎ 126)	
장애인 정보화교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상담실(☎ 1588-2670)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주택 개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LH마이홈(☎ 1600-100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창업육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장애인 체육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활동지원	관할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71)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세상담센터(☎ 126)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각 시도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장애인연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044-205-3859, 3862)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친화 건강검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디지털교육지원과(☎ 041-537-1485)	
재가복지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재난적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재외국민긴급지원비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	
재해보상금	주소지 관할 보건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재해위로금	주소지 관할 보건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고객센터(☎ 1551-1212)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주거 지원(주택 특별보급)	LH마이홈(☎ 1600-1004)	
주거급여(맞춤형급여)	LH마이홈(☎ 1600-1004),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주거안정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LH마이홈(☎ 1600-1004)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32)	
주택연금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주택용 에너지개시백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 유형)	한국장학재단(☎ 1800-0499)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중앙취업지원센터(☎ 1599-8297)	
증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내선번호 3번)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세상담센터(☎ 126)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전화(☎ 138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지원단(☎ 02-6454-850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7개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진폐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참전명예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창업기숙사 사업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찾아가는 돌봄교실	관할 지자체 농정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및 각 카드사 고객센터	
첨단사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청년미래적금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한국농어촌재단(☎ 02-6958-947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02-330-2892~5)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전화 ☎ 1388) (서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899-182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191~5)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063-323-228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시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053-665-6900)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청소년활동 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97)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소자 등 자립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각 시도 담당사무소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사업팀(☎ 02-704-2467, 433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취업연계 장려금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 1800-0499)	
치매검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통신요금감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카드 발급, 이용 등 일반문의) NH농협카드 고객센터(☎ 1644-4000, 잔액조회, 분실신고, 수령등록)	
통합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중앙 콜센터(☎ 1600-3005, 일반, 노인, AI·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중앙 콜센터(☎ 1668-0420,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 1599-2290)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 1599-2290)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및 중소기업중앙회(공제사),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청소년전화(☎ 1388)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	청소년전화(☎ 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전화(☎ 1388)	
학교 우유급식	소속 학교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가족상담전화(☎ 1577-4206)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가족상담전화(☎ 1577-4206)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LH마이홈(☎ 1600-1004, 각종 공공임대주택), 가족상담전화(☎ 1577-4206, 공동생활가정형)	
한센인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해외취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햇살론 일반보증	서민금융콜센터(☎ 1397)	
햇살론 카드	서민금융콜센터(☎ 1397)	
햇살론 특례보증	서민금융콜센터(☎ 1397)	
햇살론유스	서민금융콜센터(☎ 1397)	
행복주택 공급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현장실습 지원금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 1800-0499)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보건이용권 상담센터(☎ 1544-033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희망저축계좌(Ⅰ, Ⅱ)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요기관 연락처

주요기관	연락처
AI디지털배움터	☎ 1800-0096
BC카드	☎ 1899-4651
GH경기주택도시공사	☎ 1588-0466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KB국민은행	☎ 1599-9999
KB국민카드	☎ 1599-7900
LH마이홈	☎ 1600-1004
NH농협생명	☎ 1544-4000
NH농협은행	☎ 1661-3000
NH농협카드	☎ 1644-4000
SH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
Sh수협은행	☎ 1588-4119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가족센터(때밀리넷)	☎ 1577-9337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경기케어센터	☎ 031-359-0514
경찰청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 18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 1599-200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디지털교육지원과	☎ 041-537-1485
교육부 상담센터	☎ 02-6222-6060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국립대구청소년상담센터	☎ 053-665-6900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 031-920-2029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02-901-1552-6
국립중앙청소년상담센터	☎ 031-333-1900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063-323-2285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민연금공단	☎ 1355
국세상담센터	☎ 126
국토교통부	☎ 1599-0001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기후에너지환경부	☎ 1577-8866
남북하나재단	☎ 1577-6635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신고상담)	☎ 1577-1389
다누리콜센터(다문화가족·외국인지원)	☎ 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대한적십자사	☎ 02-3705-378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 1661-2129
롯데카드	☎ 1899-4282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 02-2110-3500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보훈원	☎ 031-250-1521

주요기관	연락처
북한배경학생교육지원센터	☎ 043-530-9481~9490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 1522-0365
산림조합	☎ 1544-4200
산업통상부	☎ 1577-0900
삼성카드	☎ 1566-3336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성평등가족부	☎ 02-2100-6000
스포츠킴작이용권 상담센터	☎ 1551-0078
시간제보육 콜센터	☎ 1661-9361
시청자미디어재단	☎ 1688-4596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 02-750-1233~4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신한카드	☎ 1544-8868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 02-777-0182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 1577-2514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양육비 상담	☎ 1644-6621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 1600-3190
에듀콜센터	☎ 1544-0079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문의 콜센터	☎ 02-2038-895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93
여성긴급전화	☎ 136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우리은행	☎ 1588-5000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 1599-0100
위(Wee)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	☎ 044-415-2157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 1308
육아종합지원센터	☎ 02-1661-5666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02-733-7587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자살예방상담전화	☎ 109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중앙 콜센터	☎ 1668-042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00
장애인보조기기센터	☎ 1670-55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 1577-0199
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주택도시보증	☎ 1566-9009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02-1661-5666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2-3433-0743
중앙취업지원센터	☎ 1599-8297
질병관리청	☎ 133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 02-330-2892~5

주요기관	연락처
청소년전화	☎ 1388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코레일	☎ 1544-7788
태백케어센터	☎ 033-580-5200
평생교육이용권 중앙 콜센터	☎ 1600-3005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600
한국농아인협회	☎ 02-461-2261
한국농어촌재단	☎ 02-6958-947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1670-700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1855-3020
한국에너지재단	☎ 1877-6568, 02-6913-217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6363-9332

주요기관	연락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1588-3570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6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02-760-9725, 9713, 9753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02-921-5053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한국전력공사	☎ 123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9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000
한부모가족의료보험 접수센터	☎ 02-3471-5116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현대카드	☎ 1577-6000
환경보건의용권 상담센터	☎ 1544-0331

펴낸곳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본부
범부처정보관리부

인쇄 2026년 6월 30일

디자인 덕성기획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278-10

※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